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184-10

www.mw.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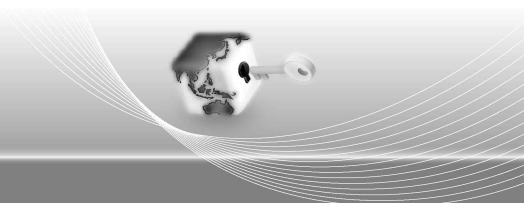
2012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Social Services Investment Guide



함께하는 행복 울타리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목 차



2012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주요 변경 내용

제1장 | 사회서비스 개관 _ 1

I. 사회서비스의 개념	3
II.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8
III.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성과	10

제2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_ 15

I. 사업 개요	17
II. 이용자 선정	21
III. 서비스 이용 및 자격관리	22
IV.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	33
V. 서비스 비용	40
VI. 서비스 제공기관	46
VII. 서비스 실시	62
VIII. 예산 집행 및 정산	67
IX. 행정사항	73

제3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유형 _ 89

I. 지역선택형사업(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1· 9
II. 지역개발형 사업	98
III. 10대 유망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111
IV. 기타 표준화 모델(10개 유형)	111

부 록 _ 131

공통서식	133
일반서식	147

참고자료 _ 213

[참고자료 1]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512
[참고자료 2] 단말기 가입 및 사용 관리	112
[참고자료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132
[참고자료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532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2011년	2012년																	
모집기간 유연화	○(신 설)	○ 모집기간 유연화(22쪽) - 대상사업: 지원기간이 1년인 사업 - 이용자모집을 매분기 실시토록 하여 연중발생 수요에 대응 - 1분기 70%, 2분기 10%, 3분기 10%, 4분기 10%																	
소득조사	(신설)	○ 이용자는 세대 구성, 소득사항 변동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24쪽)																	
사업간 업무연계	(신설)	○ 사업간 업무연계(우선지원)(25쪽) - 대상사업: 아동분야(드림스타트센터), 정신건강 관련(정신보건센터), 노인건강 관련(의료급여 사례관리) - 연계내용: 해당 공공서비스전달체계에서 의뢰된 대상자를 일정 비율 이내에서 우선 선발·서비스 연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30%;">서비스</th> <th style="width: 15%;">비율</th> <th style="width: 45%;">절차</th> </tr> </thead> <tbody> <tr> <td>드림스타트 센터</td> <td>아동분야서비스</td> <td>10%이내</td> <td>공문</td> </tr> <tr> <td rowspan="2">정신보건 센터</td> <td>문제행동아동조기 개입 서비스</td> <td rowspan="2">30%</td> <td rowspan="2">추천서 발급</td> </tr> <tr> <td>정신질환자 토털케어</td> </tr> <tr> <td>의료급여 사례관리</td> <td>맞춤형운동처방 시각장애인안마</td> <td>10%</td> <td>공문</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비율	절차	드림스타트 센터	아동분야서비스	10%이내	공문	정신보건 센터	문제행동아동조기 개입 서비스	30%	추천서 발급	정신질환자 토털케어	의료급여 사례관리	맞춤형운동처방 시각장애인안마	10%	공문
구분	서비스	비율	절차																
드림스타트 센터	아동분야서비스	10%이내	공문																
정신보건 센터	문제행동아동조기 개입 서비스	30%	추천서 발급																
	정신질환자 토털케어																		
의료급여 사례관리	맞춤형운동처방 시각장애인안마	10%	공문																
대기자 관리	○(신 설)	○ 대기자관리(25쪽) - 예산초과, 수요폭증, 선정후 추가지원자는 대기자로 관리하여 향후 지원 대상 선정시 반영																	
이용자 서비스 이용제한	○(신설)	○ 이용자 서비스 이용 제한(27쪽)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이용자 1인당 연 2개 이하 서비스만 이용가능 * 이용자 선정시 사전고지																	
재판정 대상자 추가지정처리 절차	○(신설)	○ 재판정 대상자 추가지정 처리 절차(29쪽) - 재판정 대상사업의 이용기간 만료시 이용자가 재신청 과정을 거쳐야 함																	

구 분	2011년	2012년								
이의신청	○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 관련조항 삭제로 시·군·구청장이 직접 이의 신청을 처리(32쪽)								
이용자 자격 임의해지	○ 2개월간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시 임의해지 할 수 있다.	○ 1개월간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시 임의해지 할 수 있다.(31쪽)								
본인부담금 차등부과	○ 본인부담금 차등부담 비율 - 20%이내(수급자, 차상위 10% 내외)	○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아동비전형성 서비스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과 (최고 30%까지) (41쪽)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소득구간</th> <th>본인부담률</th> </tr> </thead> <tbody> <tr> <td>수급자</td> <td>10%이내</td> </tr> <tr> <td>차상위~50%까지</td> <td>20%</td> </tr> <tr> <td>50%초과 100%까지</td> <td>30%</td> </tr> </tbody> </table>	소득구간	본인부담률	수급자	10%이내	차상위~50%까지	20%	50%초과 100%까지	30%
소득구간	본인부담률									
수급자	10%이내									
차상위~50%까지	20%									
50%초과 100%까지	30%									
용어변경	○ 바우처카드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카드)(33쪽)								
등록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 (신설)	○ 등록제 시행일('12.8.5) (47쪽) ○ 기존사업자에게는 3개월간 유예기간 적용								
제공기관 운영관리	○ 컨소시엄 사업 참여기관 제한 - (신설)	○ 컨소시엄 사업 참여기관수 제한(47쪽) - 시·도개발사업: 20개 기관 이하 - 시·군·구 개발사업: 5개 기관 이하 * 참여기관수에는 주관기관 포함								
제공기관 지정 제외 대상	(신설)	○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 조의2 및 제6조에 의한 학원,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은 제공기관 지정에서 제외(48쪽)								
제공기관 지정 유효기간	○ 2010.2.1~2011.1.31	○ 2012.2.1~2012.8.4(47쪽)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2.8. 5이후 등록제로 전환								
제공기관 재지정	○ (신설)	○ (가)지정 제공기관은 복지부의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재지정으로 간주하여 지정서 교부(50쪽)								
제공기관 지정취소	○ (신설)	○ 지정취소 사유 신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법률 참조)(50쪽)								
제공기관 기관운영계획 수립 보고 및 제공기관 행정사항	○ (신설)	○ 서비스 제공기관 - 기관운영계획수립하여 사업착수시 관할 지자체 장에게 보고(54쪽) - 월별 집행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업무시스템에 입력 보고(일자리)(60쪽) - 사업종료보고서 입력(60쪽)								

구 분	2011년	2012년
사업중도 포기	○ 사업중도 포기 희망시 포기 예정 일로부터 2개월전에 지정권자에 통보	○ 사업중도 포기시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포기 예정일로부터 2개월전까지 지정권자에 통보(55쪽)
제공기관 준수사항	○ (신설)	○ 제공기관 준수사항 추가(해서 안되는 일 포함)(56쪽)
교육시간	○ 연간 15시간	○ 연간 20시간(57쪽)
제공인력 의무	○ 일부추가	○ 사회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신분증명서 또는 서류 제시 기피자에게 서비스 제공금지)(59쪽)
사업참여불가 제공인력	○ (신설)	○ 이용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인 제공인력은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59쪽)
모니터링 실시	○ 분기1회 실시	○ 반기별실시(65쪽)
사업계획(기준정보)변경	○ 매월 사업계획(기준정보) 변경	○ 사업계획(기준정보) 변경주기 정례화(연 3회(4, 7, 10월))(75쪽) - 사업계획수립 내실화 및 사업의 안정적 운영 위해 사업계획(기준정보) 변경시기 조정
현장점검	○ (신설)	○ 복지부(년1회), 지자체(반기별 1회 이상)는 제공기관 현장점검 실시(82쪽) - 점검실시 1개월내 보고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지원	○ (신설)	○ 지역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고 지자체 사업관리 및 품질향상 지원(83쪽) ○ 10개 시도내외 지정, 2.1억원 내외 지원
청소·방역관련 서비스 구조조정	○ 청소·방역관련 서비스 구조조 - '12년부터 청소·방역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원 중단 방침	○ (삭제)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104쪽)	○ 사업명: 아동발달지원서비스 ○ 서비스 대상 - (발달검사)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0~6세 - (중재)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0~6세 중 영유아 발달 검사 결과 2개 이상의 영역	○ 사업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서비스 대상 - (삭제) - (중재)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0~6세 영유아 중 영유아 건강검진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등급을

구 분	2011년	2012년
	<p>에서 발달지연을 보이는 영유아, 기관장이나 교사의 추천에 의해 중재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p> <p>○ 제공인력: 유아특수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교육, 심리, 체육, 아동, 복지 관련 4년제 졸업 혹은 졸업 예정자로서 영유아 및 발달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p> <p>○ 서비스내용: 발달검사, 조기중재</p>	<p>받은 영유아 및 기타 본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 유아교육기관장, 평가 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영유아</p> <p>○ 제공인력: 장애아동재활치료,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서비스와 동일</p> <p>○ 서비스내용: 발달검사 삭제</p>
<p>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105쪽)</p>	<p>○ 사업명: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p> <p>○ 제공기관: 2년 이상의 정서 및 클래식 프로그램 사회공헌 또는 음악치료 수행 기관이거나, 최근 2년간 전문 클래식 공연 실적이 50회 이상인 기관</p> <p>○ 정서프로그램 - 관련학과(심리 및 음악·미술 등 예술치료) 석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1,000시간 이상 보유자</p> <p><신설></p> <p>○ 제공절차: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p>	<p>○ 사업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p> <p>○ 제공기관: 기관의 주요 설립 목적이 클래식 연주·교육 등에 있는 기관으로 2년 이상의 클래식 프로그램 사회공헌 또는 최근 2년간 전문 클래식 공연 실적이 50회 이상인 기관</p> <p>○ 정서프로그램 - 관련학과(심리 및 음악·미술 등 예술치료) 석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500시간 이상 보유자</p> <p>○ 참여 아동 합주(월 1회 이상)</p> <p>○ 제공절차: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 당자 및 클래식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p>
<p>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106쪽)</p>	<p>○ 대상자(기타) 문제행동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거나, 교육 기관장이나 교사의 추천에 의해 조기개입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장애 문제 행동 위험군 아동</p> <p>○ 월 12~16만원(정부 128천원/본인 3~4만원)</p>	<p>○ 기타: 문제행동에 대한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병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교사 추천서가 있거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추천의뢰 된 아동 등 조기개입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장애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p> <p>○ 월 16만원 내외(정부부담 70~90%, 본인부담 10~30%)</p> <p>- (정부지원) 수급자: 90%, 차상위~평균소득50%: 80%, 평균소득 50~100%: 70%</p> <p>- (본인부담) 수급자: 10%</p>

구 분	2011년	2012년
	<신설>	<p>차상위~평균소득50%: 20%</p> <p>평균소득 50~100%: 30%</p> <p>○ 정신보건센터 연계: 정신보건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서비스 연계 대상자를 예산액 30% 이내에서 우선 대상으로 선정</p>
인터넷 과몰입 아동 치유서비스 (112쪽)	<p>○ 사업명: 인터넷·게임중독아동치료 서비스</p> <p>○ 대상자(기타): 인터넷중독 선별검사(여성부)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또는 기관장이나 교사의 추천에 의해 인터넷(게임) 중독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p> <p>○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한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p> <p>○ 서비스내용: 심리검사, 워크숍, 심리상담, 가족기능 강화 캠프, 인터넷 게임 대체활동, 맞춤형 멘토링 등 기본서비스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50분 내외) 제공</p> <p><신설></p> <p><신설></p>	<p>○ 사업명: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p> <p>○ 대상자(기타): 인터넷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p> <p>○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슈퍼바이저급의 인력이 재직하거나 슈퍼바이저가 월 1회 또는 상담건의 10% 이상에 대해 슈퍼비전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기관</p> <p>○ 서비스내용: 기본서비스를 표준 프로세스에 준거하여 제공하되 이용자의 욕구를 판단하여 일부 프로그램의 제공 빈도 조정 가능</p> <p>○ 기본 서비스부모 상담 및 교육 추가 심리 상담 4인 이내 실시</p>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113쪽)	<p>○ 대상자(연령):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p> <p><신설></p> <p>○ (서비스내용) - 유산소 운동: 노인·장애인을 대상</p>	<p>○ 연령: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p> <p>○ (가격) 성장촉진지역, 대중교통의 이용이 제한되는 도서지역은 1만원 내외의 조정 가능, 기존 사업 중 수중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사업은 월 14만원(정부 13만원, 본인 1만원)내에서 조정, 단 여가·정서지원 활동은 정부지원 제외(본인부담 가능)</p> <p>○ (서비스내용) - 수중운동: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p>

구 분	2011년	2012년
	<p>으로 볼과 밴드를 이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평형성 및 교차성 발달 지원</p>	<p>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운동: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p>
<p>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114쪽)</p>	<p>○ 대상자(연령 등): 신체 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만 65세 이상 노인 <신설></p> <p>○ 서비스가격 - 1등급: 장애등급 1~2급 판정 장애인 및 장기요양보험 1~3등급자 - 2등급: 장애등급 3급 이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4~6 등급자 - 3등급: 만 65세 이상 <신설></p>	<p>○ 연령 등: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제공인력 - 상이등급 1~3급: 2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상이등급 4~5급: 5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상이등급 6~7급: 10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서비스가격 - 1등급: 상이등급 1~3급 추가 - 2등급: 상이등급 4~5급 추가 - 3등급: 상이등급 6~7급 당일(1~3등급)의 경우 74천원(정부지원금 62천원, 본인 12천원)/ 1회</p>
<p>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115쪽)</p>	<p>○ 사업명: 장애아동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 대상자(연령 등): 만 19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p>	<p>○ 사업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대상자(연령 등): 만 19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 등</p>
<p>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16쪽)</p>	<p>○ 대상자(연령 등):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서비스 가격 - (월 4회 제공) 월 130천원 내외 (정부 120천원, 본인 10천원(6개월))</p>	<p>○ 대상자(연령 등): 연령 등: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 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서비스 가격 - (월 4회 제공) 월 136천원 내외(정부 124천원, 본인 12천원(10개월))</p>

구 분	2011년	2012년
	- (월2회 제공) 월 68천원 내외(정부 60천원, 본인 8천원)/(6개월)	- (월 2회 제공) 월 68천원 내외(정부 60천원, 본인 8천원)/(10개월)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 (118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재정신과 병원 입원자는 제외) ○ 인력: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례관리자 자격증 보유자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재(정신과 병원 16일 이상 입원자는 제외) ○ 인력: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례관리자 자격증 보유자 <p>*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이상 채용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월 1회 지도 점검 및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보건센터 연계: 정신보건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서비스 연계 대상자를 예산액 30% 이내에서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정신보건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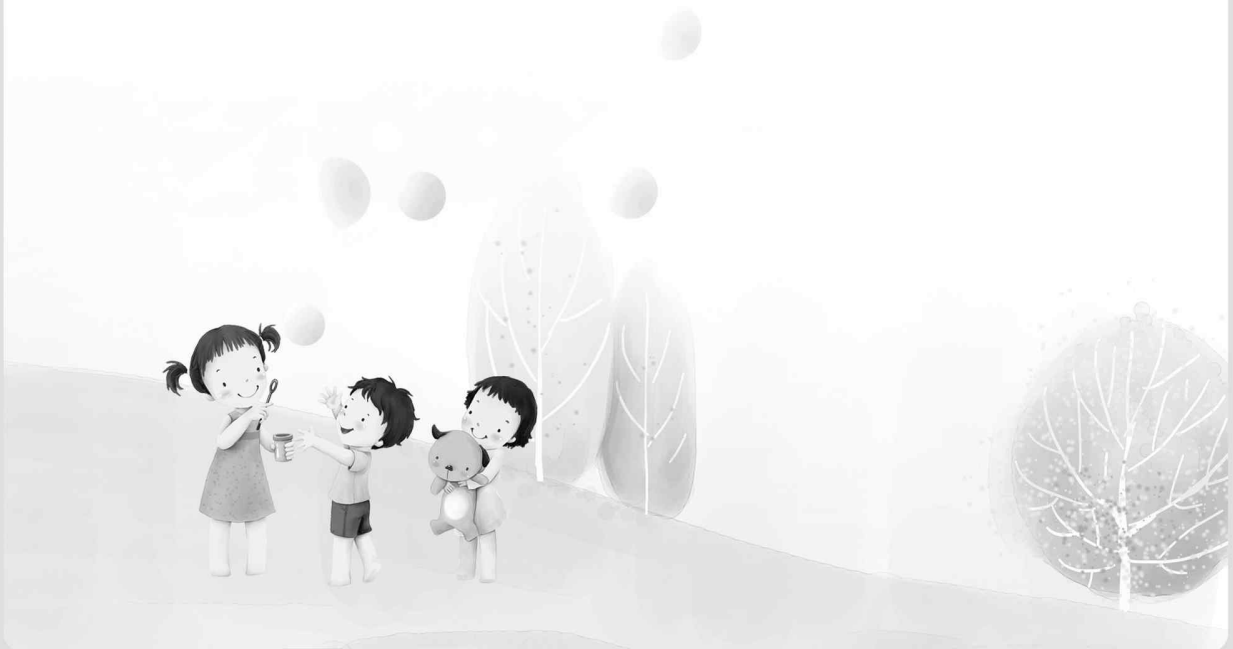
※ 본문중 '12년 변경사항'은 밑줄로 표시함



1장

사회서비스 개관

- I. 사회서비스개념
- II.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 III.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성과



1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개념

-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 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
- 집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가 혹은 지역서비스
 - * 사회적기업육성법 :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사회서비스 종류)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인지·인성 발달지원 서비스, 사회적응지원 및 상담·지도 서비스, 문화·체험·여행 서비스, 재활·보조용구 대여 서비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 사회서비스의 특징 >

- *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 *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 *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 *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 명시적(전자카드) 바우처 적용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시·청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7대 바우처 사업 추진

* 기타 바우처 적용 사업으로는 보육전자바우처('09.9월) 사업이 있음

- 나머지 사업은 주로 공급자 지원형 사회서비스로 볼 수 있음

② 추진 배경

□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OECD국가의 평균 사회서비스 취업비중이 21.7%('03년)이나 우리나라는 13.1%로 현저히 낮아 매우 열악한 수준(한국고용정보원)

- 가족, 특히 여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비공식 돌봄은 한계에 도달하여 돌봄의 시장화 내지 사회화가 불가피

□ 양극화의 심화·확산은 상대적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서비스 수요 가속화

-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계층,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시장에서 서비스 구매력이 크게 부족

- 따라서 구매력 보전 등 공공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빈곤층 전략 예방

□ 취약계층 보호 외에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 필요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사회경제의 양극화,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으로 대표 되는 신빈곤층의 확산으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

- 인적 자산과 사회기반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 빈곤의 세습 방지 및 사회이동 촉진

□ 팬층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의 구현

-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효과(27.6명)는 서비스업 평균(20.5명)은 물론 제조업

평균(12.1명)을 상회하여 자체 고용창출효과가 큰 부문

- 특히 여성 등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 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단위 : 10억원당 명)

구 분	사회복지서비스업	서비스업	전산업	제조업
취업계수	27.6명	20.5명	16.9명	12.1명

* 취업계수 :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취업자수 (자영자+무급가족 포함), 한국은행 ('08년)

- 최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은 아직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한국 14.7%, 미국 26.3%, 일본 17.4%)
- 1인당 GDP가 유사한 시점을 비교해도 보건·사회복지업 일자리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

<1인당 GDP 21천 달러 시기의 보건사회복지분야 고용비율>

국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해당연도	2007	1987	1988	1991	1996	1987
GDP(\$)	21,653	19,910	20,821	22,693	20,990	20,414
고용비율(%)	3.2	4.1	7.7	7.3	10.6	16.0
여성경제 활동참가율(%)	54.8	54.9	66.8	60.6	67.6	81.1
사회지출 중 현물지출 비중(%)	3.8	5.0	5.3	7.6	8.9	1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5월)

⇒ 사회서비스업 중 보건·사회복지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음을 시사

③ 추진 경과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 보고('06. 4월,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급실태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 전략 보고
-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06. 7월) 등 전담 추진조직 구성·운영
- 사회서비스 확충 실행전략 마련(대통령 연두업무보고, '07. 1월)

- 수요자중심의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촉진, 품질제고 등 3대 기본방침 확정
-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07.2~4월)
 - 지불·결제주관 금융기관(국민은행) 선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
 - 바우처 지불정산 전담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설립('07.3월)
-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사업 시행 및 확대('07.5월 ~)
 - 노인돌보미 및 장애인활동보조('07.5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07.7월), 산모 신생아도우미('08.2월), 가사간병도우미('09.9월)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새정부의 능동적 복지 실천을 위한 국정과제로 채택
- 『일자리 창출 대책』 회의(경제수석 주재, '08.7.24)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내실화 방안 수립 마련 논의
-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선진화 전략 발표('08.9.18)
 - 시장형성 및 산업화 기반 마련
 - 공공투자 확충 및 투자 효율화
 -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 역량 강화
-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선진화 방안 마련('09.4월)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품질기준 설정
 - 정보공개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선택권 강화
 - 소비자에 의한 입체적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강화
 - 사회서비스 일자리 인력 풀(pool) 운영
-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 마련('10.5.27, 국가고용전략회의)
 - 간병, 보육, 돌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5대 유망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1.8.4) 및 시행('12.2.5)

- 사회서비스 사업 목적, 계획수립, 이용권 발급, 이용자·제공자 준수사항, 벌칙 등 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규정
- 등록제 도입(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기관 등록하도록 규정) ('12.8.5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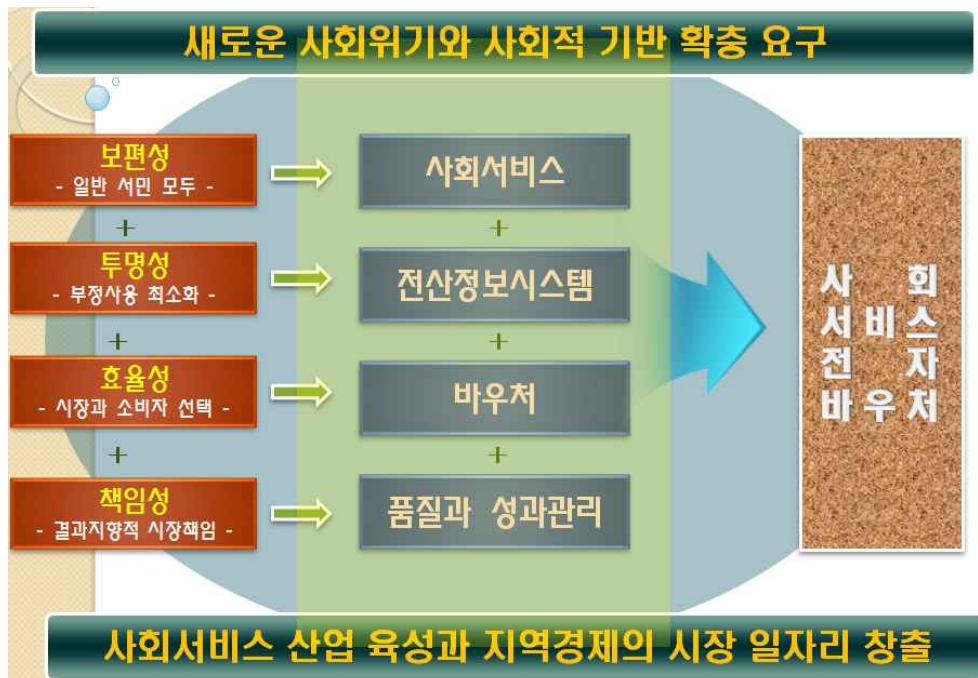
II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1 전자바우처 제도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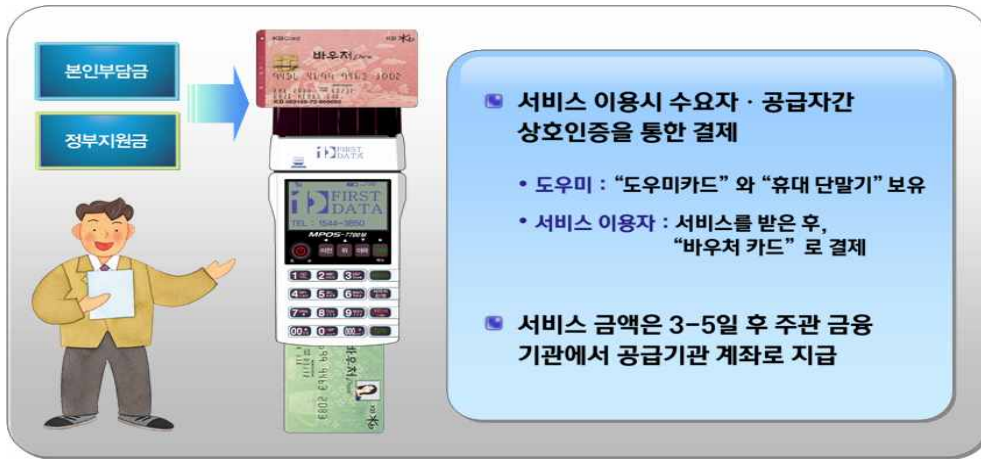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제도
 - ☞ 바우처(이용권) :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형태
 - ☞ “e-바우처”란 서비스를 구매·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신용·체크카드 등 금융카드로 구현한 형태
- 지불결제 자동화 등 업무 효율성 및 정보 집적 관리 등을 통한 과학적 관리 기반 마련

2 도입 배경



③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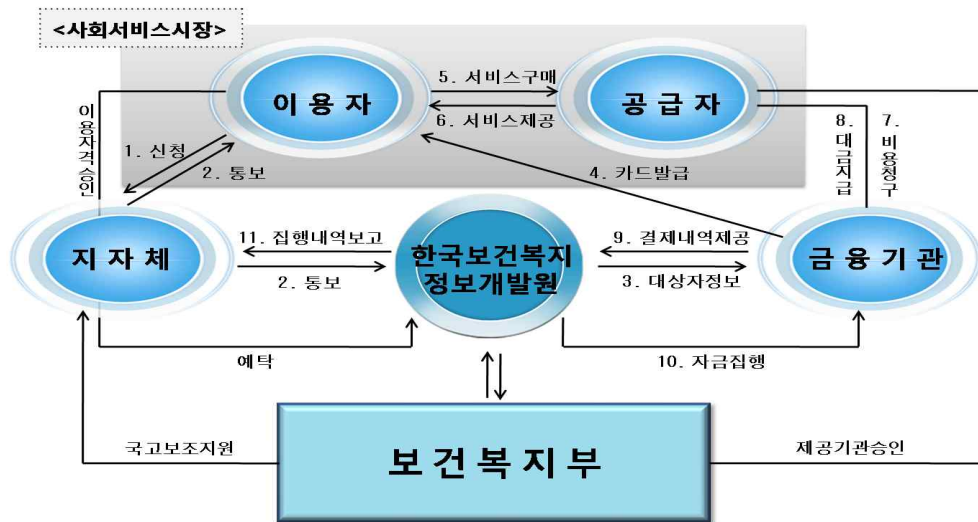
□ 지불·결제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이용자 중심 통합시스템

- 중앙단위의 정보 집적 체계 구축으로 이용자 자격정보, 이용실적 정보, 지불결제 정보를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 관리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담기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설립·운영

④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 흐름도



III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성과



1 사업 목표

- 지역사회 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저소득 무직가구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도모
- 사회서비스의 “폭넓은 선택의 기회 제공”을 통해 보편적 복지 구현

2 정책적 의의 :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수단으로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는 지역·계층별로 다양하게 분출하여 전통적인 중앙집중식 접근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
- 지역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분권적 방식으로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개발 필요

	기존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수요·욕구	기초적 욕구, 절대적 빈곤 (빈곤·질병관련 사회안전망 구축)	상대적 욕구, 상대적 빈곤 (인적자산 및 사회기반 투자)
대응방식	국가 최저기준 설정, 특정된 서비스, 소수의 전문복지기관 중심	보편적이며, 지역·계층별 서비스, 다양한 제공기관 참여
개발·운영	중앙정부 중심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중심

- 지역의 적극적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창출하고, 품질향상과 경쟁을 통해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3 그동안의 주요 성과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중·고령 여성, 청년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39개 사업 17,751명('11. 12. 31일 현재)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서비스 및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전국, 만2~6세), 노인,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만65세이상)

-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사회서비스 신규시장 형성

* 장애아동재활지원바우처 2009년부터 별도사업으로 추진 ('08년 77억 → '09년 293억)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용자수 확대 ('07. 8월 3천 → '11. 10월 169천명)

□ 수요자 중심 복지전달체계(바우처 방식)의 장점 적극 활용

- 복지 수요자 지위 강화 (소극적 복지수급자 → 능동적 서비스 구매자)

• 바우처 방식을 통해 복지수혜자의 서비스 선택권, 소비자 주권 강화

- 지불, 정산업무 전산화로 지지체 행정부담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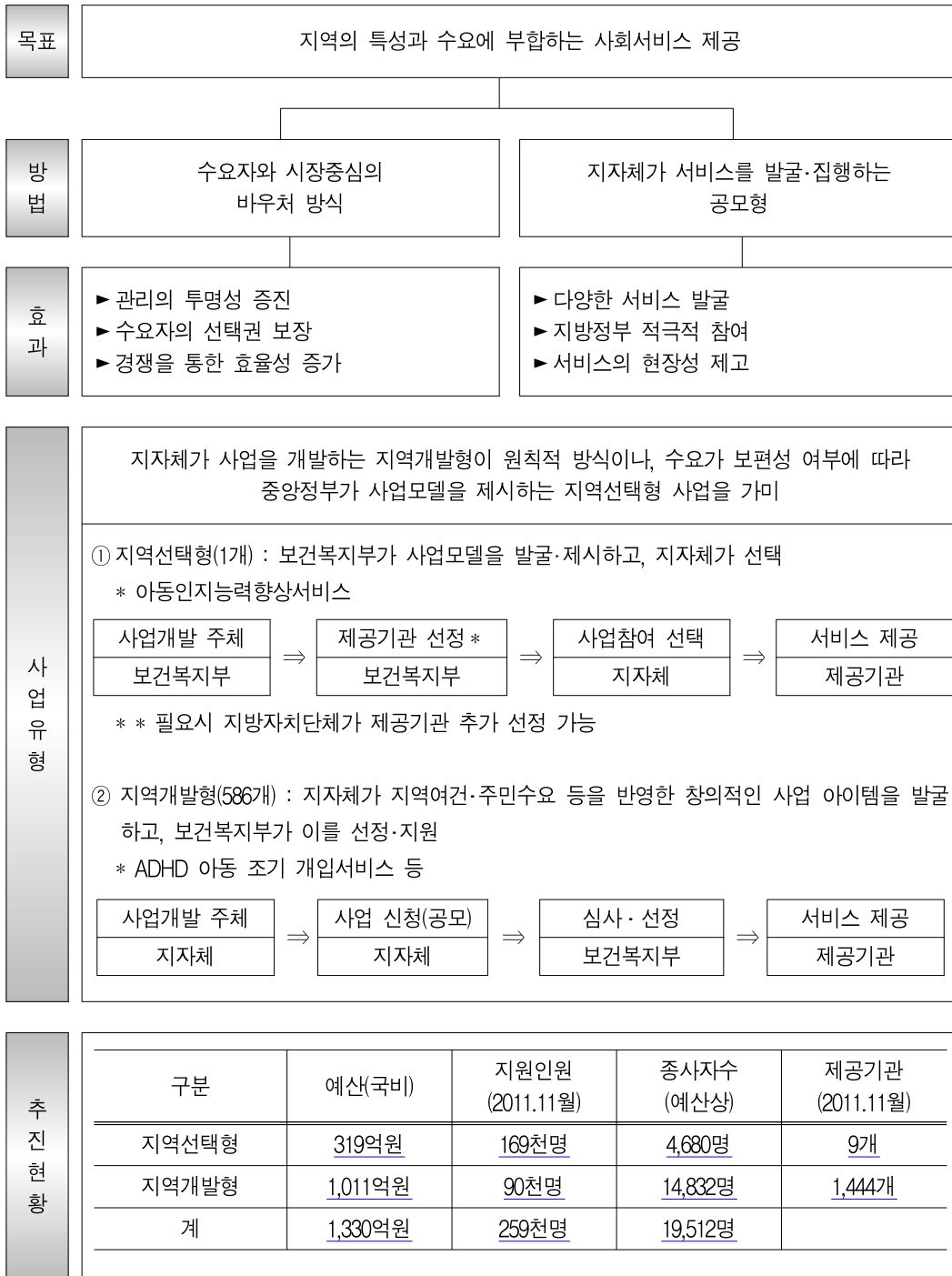
• 중앙정보 집적체제로 사업실적 실시간 파악 및 행정비용 감소

* 지불 소요기간 : 종이바우처 (1~2개월) → 전자바우처 (5일 이내)

- 신규 공급기관 설치 없이 민간자원 활용한 서비스 제공

	공급기관 지원방식	수요자 지원방식
지원방법	민간단체 보조금	바우처
공급기관	단일기관 독점	다수 기관 경쟁
서비스 대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	서민, 중산층
본인부담금	전액 국가지원	일부 본인부담금 부과
서비스 시간	공급기관 재량	이용자 욕구별 표준화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추진 체계



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10대 유망사회서비스 개요

(단위 : 개, 명, 백만원)

연번	서비스 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기간)	평균 바우처 지원액 (월)	예산 ('12년)
1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지원	주2회 재가방문 또는 시설방문 (6개월 지원)	18만원	1,672
2	아동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약기교육 및 정서치유서비스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의 정서적 문제해결	월4회 시설방문 정서순화프로그램 클래식 교육 등 (12개월 지원)	18만원	8,492
3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문제행동(ADHD)아동에 대한 조기 발굴·치유를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주1회 재가방문 또는 시설방문 (12개월 지원)	13만원	14,621
4	인터넷 과몰입 아동 청소년 치유서비스	인터넷·게임 중독위험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치료를 통해 학업 비효율성 및 아동·청소년 범죄 등 사회적 문제 예방	주1회 재가방문 또는 시설방문 (12개월 지원)	18만원	2,324
5	맞춤형운동 처방서비스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운동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주1~5회 재가방문또는 집합서비스(12개월 지원)	11만원 6만원	11,199
6	돌봄여행 서비스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노인·장애인 여행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적 욕구 충족	집합 서비스 (1회 지원)	14만원	2,724
7	장애인보조 기구렌탈 서비스	고가의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를 통해 장애인 가정의 비용절감 및 재활지원	재가방문서비스 (12개월 지원)	8만원	1,166
8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노인·장애인 대상 안마서비스 및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주1회 재가방문 또는 시설방문 (10개월 지원)	9만원	6,215
9	나홀로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맞벌이가정의 나홀로 아동(초등학생)에 대한 양육 서비스를 통해 자녀양육의 부담경감 및 아동보호	주5회(1회 6시간) 재가방문 (12개월 지원)	18만원	524
10	정신건강 토달케어 서비스	정신장애인 및 가족 대상 일상생활 관리 및 건강한 사회생활 지원	주1회 재가방문 또는 시설방문 (12개월 지원)	18만원	2,920



2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I. 사업 개요
- II. 이용자 선정
- III. 서비스 이용 및 자격관리
- IV.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
- V. 서비스 비용
- VI. 서비스 제공기관
- VII. 서비스 실시
- VIII. 예산 집행 및 정산
- IX. 행정사항



1 의의 및 특성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
-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 방식	⇒	새로운 방식
① 공급자 지원		①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② 단일한 제공기관		② 복수의 제공기관
③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③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④ 중앙집중식·하향식		④ 지방분권식·상향식
⑤ 소규모 기관별 지원		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2 사업 목적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3 사업 기간

□ 2012.2.1~2013.1.31(1년)

-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하나,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성과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거나 정책변경, 예산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의 축소 또는 조기 중단 가능

4 총 사업비

- 2012년도 총사업비 : 국비 1,345억원
- 지원조건 : 매칭 (서울 50%, 시·도 70%, 성장촉진지역 80%)
- 지원방식 : 지자체 경상보조

5 사업추진체제

□ 사업추진 및 기능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사업 총괄
	사회서비스정책과	○전자마우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시군구 예탁금 관리 ○마우처 비용지급 및 정산 ○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시·도	사업총괄담당부서(과,계)	○시도 마우처 사업 총괄 ○본청 및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성과평가 자료제출 (보건복지부에 연 1회 보고)
	사업별 담당부서(과,계)	○사업 시행 ○사업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관리 ○사업홍보 ○서비스 이용자 선정(시도개발사업)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p style="text-align: center;"><u>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u> (<u>설치지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사업 기획·개발 ○제공기관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 홍보 등 지원체계 구축 ○사업모니터링 지원 등
시·군·구	사업총괄담당부서(과,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바우처 사업 총괄 ○본청 사업 관리 감독 ○복지부에 성과평가 자료 제출(연말)
	사업별 담당부서(과,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시행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관리 ○사업 홍보 ○서비스 이용자 선정(시군구개발 및 공동개발사업) ○서비스 제공 지도 감독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공급인력 모집, 교육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월별 집행실적 보고(일자리) ○착수보고 및 연말 결과보고 (자체 평가, 서비스 효과, 회계 등)

□ 전담팀(계) 구성 운영

- 시·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전담하여 시행 할 수 있는 전담팀(계)을 구성하고, 시·군·구청장은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 담당부서내 사업전담인력 배치 요망
- 시·도 개발 사업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지침 작성, 제공기관 지정, 홍보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 선정·관리 등은 시·군·구청장이 담당
- 시·군·구 공동개발사업의 경우 주관 지자체가 사업 지침, 제공기관 지정 등을 총괄
 - 다만, 주관 지자체가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간 협의 하에 주관 지자체를 별도 지정하거나 지자체 조합 형태나 별도 사업단 형태의 운용도 가능

- 지역 여건상 전담팀(계) 구성 또는 사업전담인력 배치가 어려운 경우 시·도는 복지정책과(또는 사회복지과, 복지청소년과, 사회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봉사과), 시·군·구는 사회복지과(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 시행 및 예산확보 등 업무를 총괄 수행하되, 필요시 이용자별 담당부서에서 사업 시행도 가능

□ 사업간 연계 조정

- 사업간 연계 및 중복 조정 등을 위해 각 사업 참여 부서별 분기 1회 이상 간담회 개최 원칙(관련 회의자료 별도 보관)

II 이용자 선정



1 선정 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 신청서 작성 제출
↓		
상담 및 욕구조사 (읍·면·동)	읍·면·동 담당자	○ 신청가구의 여건, 이용자 선정 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		
소득 조사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조회
↓		
이용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선정결과 전송 ○ 대기자 관리 - 선정탈락자 및 추가 신청자
↓		
통 지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2 이용자 신청

□ 신청권자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그 밖의 관계인 : 후견인
 -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반드시 보호이용자의 보호 동의 필요)
-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수시), (신청기간 유연화)
 -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가급적 사업시작 시기(1~2월)만이 아니라 매분기 이용자 모집(1분기 70%, 2분기 10%, 3분기 10%, 4분기 10%)을 실시하여 연중 발생하는 수요 및 연계기관(정신보건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의료급여) 의뢰에 대응(지원기간 12개월인 사업)
- 신청접수 읍·면·동사무소에 인터넷, 유선, 직접방문 등으로 신청
- 신청방법 : 인터넷, 유선, 직접방문 등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 보호이용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 확인 등 기타 해당 시군구 청장이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증빙서류 (사회복지통합망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불필요)

3 상담 및 욕구조사

- 이용자 선정을 위해 신청자의 장애 여부 및 정도, 건강상태, 주거 여건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
 -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욕구조사는 가급적 간소화
-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서비스 성격상 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욕구 조사 의뢰 가능
 - * 이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는 욕구판정 조사결과를 즉시 해당 읍·면·동에 통보, 조사 결과를 확인·입력토록 함
 -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복지요구의조사), 동법시행규칙제19조의3(복지요구의조사및보호의결정통보)

4 소득 조사

□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임(아동의 경우 직계 존속 및 형제 자매)
 - * (예시)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임(주민등록표 기준)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또는 부모(특히 아동의 경우)가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
- 서비스 이용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 (예시)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이 따로 사는 부모(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모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 소득 조사

- 소득 요건 적용시 공부상 자료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확인 등 가능한 한 간소한 방식으로 확인
- 서비스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입액 산정
- 가구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4 감경 후 합산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 낮은 건강보험료 × 0.75
-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액과 선정 기준액을 비교, 이용자 적합여부 판정
- 노인대상사업의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이용자를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 가능

- 기타 상기관련 조사 및 정보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3항·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하며, 이용자는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소득 관련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군·구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

5 이용자 선정

□ 선정기준

- 일반기준 : 서비스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원칙
 (예외) 서비스 성격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 및 노인 대상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적용
 ※ 다만, 사업 조정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지자체 특수성 등 관련 자료 제출 등)
 (예외) 지역개발형 사업 중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장애아동 맞춤형 휠체어 렌탈 서비스 ('10.10.1~)는 소득기준 제한없음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 :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¹⁾	1,450	2,629	3,806	4,387	4,702

주1) 통계청 「가계조사」, '10년 4/4분기~'11년 3/4분기 평균값

* 6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315천원씩 증가(315천원=5인-4인(4,702-4,387))

☞ (붙임 3)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직장/지역/혼합보험료 수준)를 참고하여 이용자 선정

- 연령기준 : 사업별 상이
 (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만2~6세아동(2006.1.1~2010.12.31출생)
 - 선정우선순위 : 지역개발형 사업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는 지자체가 정하고 보건복지부 심사하여 확정
- 선정권자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장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한 소득, 욕구 판정 결과 등을 판단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용자 선정
- 이용자 선정결과를 매월 21일 18시까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전송

□ 대기자 관리

- 시군구에서는 예산초과·수요 폭증 등으로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지 못하였거나, 추가 지원한 신청자는 선착순으로 예산의 200% 내에서 대기자로 관리하여 향후 지원대상 선정시 반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연계(사업간 업무연계)

- 아동분야서비스, 노인맞춤형, 문제행동 아동조기개입 서비스는 아래 연계지침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용자 선정 지원 및 사업운영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 —

- **(기본방향)** 주요 공공 전달체계를 통한 대상자 연계·우선 선발로 실 수요자에 서비스 지원 및 창구 일원화로 국민 편의성 증진
- **(연계내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자 선정시 연계대상 사업에서 발굴하여 추천하는 대상자를 일정 비율 내에서 우선 선발하여 지원
- **(연계대상)** 드림스타트(아동),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 의료급여(노인건강)
 - 드림스타트센터 : 아동대상 서비스* 중 실무자간 협의하여 결정
 - * 주요 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지원,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인터넷게임중독치료 등
 - 정신보건센터 :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정신질환자토탈케어 서비스
 - 의료급여 사례관리 : 노인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연계사업 및 비율 등)** 사업별로 상이

대상기관	연계사업	연계비율	대상지역	절차
드림스타트 센터	- 아동대상 서비스 중 지자체 담당자간 협의하여 결정	사업별 예산의 10% 내	드림스타트 센터설치지역	분기별 공문 추천
정신보건 센터	-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30%	서비스 시행지역	정신보건센터 추천서 발급
의료급여	- 맞춤형 운동처방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0%	서비스 시행지역	월별 공문 추천

- **(시행시기)** '12.1월~12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참고

6 선정통지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이용자 선정 결과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서식 12)
 - 서비스 이용자를 선정하면 해당월 21일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이용자준수사항, 바우처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액,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 포함
 - ※ 본인부담금 :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서에 반드시 표시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출력물(이용자 결정통지서)을 신청자에게 통지
 - *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서비스 이용 절차 등
 -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4(보호의결정)

1 서비스 이용

① 서비스 이용 대상

- 지자체장으로부터 이용자로 선정되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자로서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②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이용은 이용대상자 선정시 배부한 이용 안내문 및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해당 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 연락으로 서비스 이용 신청

③ 서비스 이용제한

< 서비스 이용 제한 >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까지 서비스만 이용가능

※ 단, 1가구내 2인이상의 서비스 이용은 가능

2.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된 다음 사업은 중복수혜 불가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장애아동 언어치료 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 단, 기존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 이용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 가능

④ 서비스 추가 이용

-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전액 개인부담으로 추가이용 가능
 - 추가이용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 자율적으로 결정

□ 서비스 가격

- 이용자와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도지사(시·도개발사업의 경우) 또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시·군·구청장은 이를 이용자에게 공지

□ 결제 방법

- 추가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자율로 결정

2 서비스 지원기간

1 서비스 지원기간(서비스 이용자격 유효기간)

□ 서비스 지원기간은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최대 12개월(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10개월)로 함

- 서비스 개시월 : 바우처 신청전송(매월 21일 이전 신청 기준) 익월

* 서비스 지원기간 소멸 시점 : 서비스 승인월부터 소멸시작

- 이용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승인월 부터 지원기간이 소멸되어 이용자 지원기간이 지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 이용자에게 지원기간을 명시하고 소멸시점을 필히 주지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지원기간이 소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예) '12.3.10 신청 전송(바우처 생성 '12.3.31)이 이루어진 이용자의 경우 실제 서비스 이용이 8월부터 이루어진 경우에도 서비스 개시월은 4월임(지원기간 4개월 소멸)

- 이용자 지원기간 : 사업계획(기준정보) 상에 반영된 사업별·이용자별 지원기간을 의미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기존지역에서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재심사·선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개인별 서비스 지원기간은 새로 시작

□ 개인별 서비스 지원기간은 ‘제3장 표준모델’을 참고 하여, 서비스 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반드시 사업사업계획(기준정보)에 반영

② 이용자 서비스 지원기간 연장(재판정)

□ 재판정의 개념

- 지역개발형 사업의 1인당 서비스 제공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장이 신청하고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사업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 하는 제도(1회 추가지원)
- 다만, 지속지원 필요성이 높아 지자체가 신청,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승인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2회까지 재판정 가능

□ 재판정 대상 사업

- 지역개발형 사업 중 매월 생성되며, 이용자 지원기간이 12월인 사업으로써 치료·교육·건강관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업
 - 1.15까지 해당 사업 통보(보건복지부 → 시도 및 시군구)
 - 1.31까지 승인된 사업 통보(보건복지부 → 개발원)
 - * 개발원은 승인된 사업 변경된 사업계획(기준정보)를 1.31까지 시스템에 반영

□ 재판정 대상자 지원기간 연장 절차 및 처리

- 재판정 절차

① 시군구 종료안내 ⇒ ② 이용자 재신청 ⇒ ③ 이용자 자격해지 ⇒ ④ 시군구청장 재판정 및 선정 ⇒ ⑤ 이용자 선정통보

- * 재판정·전송 등 시·군·구의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 판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대상자의 자격은 자동 해지됨

- 재판정 처리

- 지원기간(12개월)이 만료된 이용자가 추가지원을 원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재신청
- 시·군·구청장은 소득, 욕구 등을 조사하여 이용자를 선정함
- 지원 우선순위는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함

- * (우선순위 예시) 취약자(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기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자 등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출력한 재판정 연장 통보서(☞ 서식 14)만 효력 있는 연장 통보서로 인정
- 재판정 시점에서 소득, 욕구서류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자격적합여부를 확인후 지속지원 여부 결정(아동인지 포함)

□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시

- 재판정 대상 사업 : 이용자의 신청을 통해 최대 12개월 연장 지원 가능
- 재판정 대상 이외 사업 : 지원기간이 만료된 기 서비스 이용자 중 신청 절차를 거쳐 익월 생성자 대비 30%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재판정 절차에 준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자동 종료
 - 단, 1등급 이용자(27천원 지원 아동)의 경우 재판정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소득, 연령 등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예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12년 8월에 신청하여 9월부터 바우처 생성한 경우 2013년 6월 까지만 바우처 생성 후 자동 종료(1등급 이용자는 재신청했을 경우 익월부터 다시 10개월 간 바우처 생성 후 종료)

3 전 출·입

-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해당 지역에서는 종료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용자는 전입지에서 서비스 재신청 가능
 - 재신청 가능여부는 예산 여건,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내역 등을 검토하여 잔여 기간 혹은 전체 서비스 제공 여부를 해당 시·군·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시 행복e음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전송하지 않은 신청 정보(바우처 생성전)는 별도의 처리 없이 자동 부적합 완료 처리
 - ※ 전입지 시·군·구 담당자가 전출지 시·군·구에 부적합 처리 요청 불필요

4 자격상실

- 이용자 서비스 지원기간이 종료한 경우 서비스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함
- 서비스 대상자의 지원 기간 중 자격상실 사유
 -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대상자 선정 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에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
 - 바우처 카드 매매·양도 등 부정사용 적발
 - * 바우처카드 부정사용 시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전액 국고환수 조치
 - 제공기관의 바우처 부정결제에 협력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 포기로 간주하여 임의해지 처리한 경우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성추행등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 다른 지역으로 진출할 경우, 기존지역에서 취득한 대상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재심사·선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개인별 판정유효기간은 새로 시작
- 서비스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시·군·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관련 내용 전송
 - * 단, 자격상실처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중지 및 전송처리를 하여야 함
- 이용자 통지
 -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통지 가능

5 이의신청

- 신청인
 -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기한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이의 신청서(별지 12호)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처리절차
 - 시·군·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보내야 함

1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카드) 발급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 개념

- “사회서비스 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함

* 이용자 카드에 바우처를 전자적으로 수록, 관리함으로써 부정사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지불·정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②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의 종류

- 신용카드 : 카드발급 신청 시 신용카드를 신청한 이용자 중 KB 심사결과 적격자에게 발급
 - * 18세 이하는 신용카드를 신청하더라도 바우처 전용카드가 발급
- 체크카드 : 카드발급 신청 시 체크카드를 신청한 사람에게 발급되며, 전담금융기관 계좌와 연결
 - * 18세 이하는 체크카드신용카드를 신청하더라도 바우처 전용카드가 발급
- 바우처 전용카드
 -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형태는 동일하지만 바우처 거래만 가능
 -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아동 등 본인이 스스로 카드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발급
 -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아동 대상 사업은 바우처 전용카드만 발급

③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제출

* 카드발급 신청서류는 읍·면·동 등에서 보관

□ 서비스 대상 결정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개발원을 거쳐 전담금융기관으로 관련 자료 전송(시·군·구 → 개발원 → 금융기관)

□ 전담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및 배송

- 카드 발급시 아래 사항의 유의하여 발급하여야 함

< 바우처 카드 발급 시 유의사항 >

- ① 카드신청자는 보호이용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 ② 이용자가 아동인 경우 부모(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대상 아동의 명의로 발급
- ③ 이용자가 어린이집, 학교 등 기관인 경우 기관 대표자 명의로 카드 발급
- ④ 자택정보와 직장정보는 반드시 신청인(본인) 기준으로 작성하고 연락처를 기재
- ⑤ 기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이용자는 지원받는 서비스 개수와 상관없이 카드는 한 장만 발급
 - * 노인돌보미,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사업과 별도 카드 운영
- ⑥ 서비스 신청시 기존 카드발급이용자의 경우 기 발급된 카드에 바우처가 생성되어짐에 따라 서비스종료 후에도 카드보관 및 관리에 유의
- ⑦ 기존에 카드를 발급받은 이용자의 경우, 신규 서비스 신청 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카드 정보 신규 입력 불필요
 - * 서비스 이용자가 기 발급된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재신청

4] 카드 배송과 사용 등록

□ 카드 배송

- 주요 도시는 인편배송, 나머지 지역은 우편(등기) 배송
- 본인 비거주 등으로 인편 전달되지 않을 경우도 우편(등기) 배송

□ 카드 사용 등록

- 바우처 전용카드는 사용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ARS(☎ 1566-5600) 등록 후 사용 가능

□ 카드 반송

- 카드발급이용자의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진 카드는 KB 각 지점을 거쳐 본사로 이송되어진 후 재분류 작업을 거쳐 재 배송

* 반송카드 재배송 문의 : KB 바우처전용 콜센터(☎ 1599-7900)

【바우처 카드 인편배송 가능지역】

구분	인 편 배 송 가 능 지 역
서울	전 지역
경기권	성남, 인천(옹진군 제외), 고양, 과천, 부천, 의정부, 광명, 안양, 안산, 의왕, 군포, 시흥, 하남, 구리, 수원, 용인, 오산, 평택, 이천, 김포, 남양주, 파주, 화성, 안성, 광주,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용인, 여주, 양평
강원권	원주, 춘천, 속초, 동해, 강릉, 원주, 태백, 삼척
충청권	대전, 청주, 충주, 제천, 천안, 아산
호남권	광주, 순천, 여수, 목포, 익산, 전주, 군산, 광양, 김제, 정읍, 남원, 나주
영남권	대구, 부산, 울산(울주군제외), 창원, 마산, 거제, 김해, 사천, 진주, 통영, 경산, 구미, 양산, 진해, 밀양, 포항, 경주, 안동, 문경, 상주, 영주
제주권	제주,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일부 도서지역 제외)

수 카드 재발급 신청

□ 카드 훼손 또는 분실 시 KB 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용자가 신고 후 재발급 받음

- 방문신청 :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KB 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카드전환(예 : 바우처 전용카드 → 신용카드)이 불가하며, 기존과 동일한 카드만 재발급 가능

- 전화신청 : KB 콜센터(☎ 1599-7900) 상담원에게 신청

* 상담원 연결(ARS) : 1번(개인회원) ⇒ 카드 또는 주민번호 입력 ⇒ 9번

- 방문 및 전화(ARS) 등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은행 본점으로 전화하여 신청

* 국민은행 본점 접수처 : 02) 2073-4973~4974

2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생성

1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생성의 의미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자로 결정·통보 받은 후, 서비스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에 정부지원금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본인부담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업 개시전에 납부하여야 함에 유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은 전월 21일 18시까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전월 말 일에 생성 원칙

2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생성 원칙 : CAP 방식 적용

□ CAP 방식의 개념

- 매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생성 시 이용자별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잔량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생성하는 방식

□ CAP 방식의 적용대상 사업

- 대상자별 지원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매월 바우처가 생성되는 사업

□ CAP 방식의 적용 원칙

- 2개월 연속 미사용으로 2개월분 생성액이 누적되어 있거나, 누적 생성액이 2개월분 정부지원금 이상일 경우 익월 바우처 미생성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용자 중 20,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정부지원금 반액 결제 등 전액 이하 결제가 지속되어 누적 생성금액이 40,000원 이상이 될 경우 생성 중단

- 대상자별 지원기간 내에서만 지원

* 지원기간이 10개월인 이용자가 지원기간 중 미사용 기간이 2개월을 넘는 경우 해당기간 만큼 축소 지원

【CAP 적용 사례 : 2개월 연속 미사용】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생성 바우처	20,000	20,000	20,000	0	20,000	20,000
이용가능 바우처	20,000	2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실제 이용	20,000	0	0	20,000	20,000	20,000
잔여바우처	0	20,000	40,000	20,000	20,000	20,000
생성 여부 (익월 바우처 생성여부)	생성	생성	미생성	생성	생성	생성

□ CAP 방식 적용에 따른 주의사항

- 시·도, 시·군·구 담당자 : CAP방식 도입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생성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제공기관 등에 사전홍보 철저
- 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 이용전후에 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잔량을 확인하여 매월 이용 가능한 본인의 바우처량을 관리해야 함
 -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에서 본인의 바우처 잔량 및 사용 내역 조회 가능
- 제공기관(제공인력) : 서비스 실시 전에 반드시 이용자의 바우처 생성 여부 및 잔량을 확인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생성 여부 및 잔량 확인 없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급 요청은 부당청구로 간주

③ 바우처 예외생성

- 생성주체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바우처 정보 연계처리과정에서 전산오류 발생시 운영
 - 시·군·구 : 서비스 신청정보 오류 확인
 - 시·군·구 담당자의 업무 실수로 인해 서비스 신청정보 또는 등급변경 정보를 기한 내에 미전송하거나 오류전송(적합이용자를 부적합이용자로 전송)한 경우를 행복e음을 통해 확인
 - 시·군·구 : 오류 정보 예외 전송
 - 미전송 또는 기오류 전송된 서비스 신청정보 또는 등급변경 정보를 행복e음 “예외전송” 버튼을 통해 전송

3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 부정사용

1 주요사례

□ 서비스 이용자 부정사용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의 양도, 매매
-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 카드 발급
- 제공기관(제공인력)과 모의하여 바우처 카드를 부정사용을 도와주거나 제공기관(제공인력)의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 부정사용을 묵인하는 행위
- 타인의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을 보유하는 행위

□ 서비스 제공기관 부정행위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월별 정부지원금 전부를 결제하는 행위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을 이용자로부터 수거하여 제공업체 혹은 제공인력이 보유·결제하는 행위
 - * 바우처 카드를 보유만 하고 있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시정조치됨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 이용자가 정당한 사용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모의 혹은 묵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하는 행위
 - *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2 적발시 조치

□ 이용자의 부정행위

- (양도, 매매, 부정발급)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 사용 금액 환수 조치
- 기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등 시정 조치

□ 제공기관 부정행위

-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취소, 해당지역 내 사업 참여 제한(최장 2년) 등 조치가능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의 부당사용이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을 환수 하고 제공기관에 대하여 2년간 제공기관 지정 금지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지정취소를 선택하여 처분가능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정사용자를 중지전송 처리하고, 부당이득 환수금은 개발원 별도계좌에 입금

□ 기타 위반행위

-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실 관계 확인 후 경미한 경우 주의·경고 처분

- 중대한 사안의 경우 사업자 선정절차에 준하여 지정취소 시행

③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

-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홈페이지(www.vclean.or.kr) 및 신고상담전화(02-6006-5002) 운영(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부정사용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클린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 → 신고접수·예비조사(개발원) → 사실확인(현장점검 등) → 부정사용액 환수 및 행정처분(지자체) → 포상금 지급(개발원)

- 개발원은 제공인력(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V 서비스 비용



1 용어정의

□ 서비스가격

-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며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바우처지원금(정부지원금) + 본인부담액)

□ 정부지원금

-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금액 (서비스가격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서비스 가격 - 정부(바우처) 지원금)

2 가격설정

① 일반사항

- 시·군·구청장은 제공인력 수급, 서비스 수요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제공기관의 사업별 서비스 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한 후 사업계획(기준정보) 변경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인력 전문성, 지역 여건 및 서비스 수급 등을 감안하여 제공기관의 사업별 서비스 가격을 조정·승인
- 시군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사업별 서비스 가격을 공고

② 정부지원금

- 동일사업이라도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적용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지원되며,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화는 불가함

③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의 설정

-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가격의 20%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결정 책정하되, 다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는 10% 이내 설정 가능하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하게 부과
- 단, 문체행동아동조기개입 서비스와 아동비전형성 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30%까지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소득구간	본인부담율(본인부담액)
수급자	10%이내
차상위~50%이하	20%
50%초과~100%이하	30%

3 서비스 비용 결제

① 정부지원금

- 결제 대상 : 이용자 본인이 직접 결제
 - 단, 서비스 이용자가 아동,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미약한 경우 그 보호자가 결제 가능
- 결제 방법
 - 기본원칙 : 도우미는 서비스 제공 후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실시간 결제
 - 예외적 결제방법

- (소급결제) 바우처 카드 및 결제단말기(전용, 동글이 등) 분실·고장, 신규 제 공인력의 도우미카드 또는 결제단말기 신청 후 미 수령한 경우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소급결제를 인정

※ 소급결제 시 바우처 생성제한 적용(CAP)으로 인한 익월 바우처 미생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ARS-결제) 통신음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해당 월까지 결제단말기 또는 바우처카드 수령이 불가하여 결제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ARS 결제 방법 >

1588-1688(KB 콜센터)로 전화 ⇒ 『2번』 누름 ⇒ 『1번』 누름 ⇒ 『KB 바우처 가맹점 번호』와 『#』 누름 ⇒ 『카드번호 16자리』 누름 ⇒ 『카드유효기간』 누름(년월) ⇒ 『사업구분 코드』 누름(바우처 서비스코드 4자리 추가 입력) ⇒ 결제 단위 누름(결제금액) ⇒ 승인 번호 안내 ⇒ 영수증 발급 및 보관

< 유선 결제(상담원 통화) 방법 >

1588-1688(KB 콜센터)로 전화 ⇒ 『2번』 누름 ⇒ 『9번』 누름 ⇒ 『KB 바우처 가맹점 번호』와 『#』 누름 ⇒ 상담원과 연결 후 상담원의 요청에 따른 정보전달(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 승인 번호 안내 ⇒ 영수증 발급 및 보관

- ARS 영수증 서식 (예시)

유선결제용(제공기관용)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바우처카드번호	
유효기간	월 년
코드번호	
결제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시	
서비스제공자	○○주식회사 홍길동
주소 : 서울 관악구 봉천 11동 전화 : 02-1544-0000	
서명	

유선결제용(수혜자용)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바우처카드번호	
유효기간	월 년
코드번호	
결제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시	
서비스제공자	○○주식회사 홍길동
주소 : 서울 관악구 봉천 11동 전화 : 02-1544-0000	
서명	

□ 결제 시기

- 해당 월 서비스 총량의 50%를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부터 해당월말까지 결제
 - * (예시) 월 4회 방문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경우, 2회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50%만 결제하고, 3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3회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결제하고, 제공횟수 등을 나누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15일 이후 결제 원칙
 - * 회당결제 시행 사업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서비스 제공 회수로 나누어 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을 결제
- 다만 이용자가 중도에 제공기관을 변경하거나, 전출입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일 기준 7일 이내 결제(그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음에 유의)

□ 월 결제액

- 서비스 제공 비율에 따라 결정
- 해당월 서비스 양의 50% 초과 제공시는 총 지원액의 100%, 50%이하 제공시는 지원액의 50%를 산정
 - * (예시) 월 8회 서비스 제공을 계획한 경우 50%를 초과한 5회이상 서비스 제공시 전액 결제, 기타 1~4회 서비스 제공시 정부지원금의 반액을 결제함
- 단, 아동체험학습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름(서비스 회당 결제 원칙)
 - * 월 지원액 내에서 회당 서비스 가격을 산정하되(지자체 승인) 서비스 개시 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 할 것

<참고. 아동체험학습서비스, 노인장애인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결제>

취소 시기	정부지원금 (바우처 결제)	본인부담금
출발 3일전 취소시(당일여행) 출발 5일전 취소시(숙박여행)	결제 불가	회당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출발 2일전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10% 결제	회당 본인부담금 10% 공제
출발 1일전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20% 결제	회당 본인부담금 20% 공제
출발 당일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30% 결제	회당 본인부담금 30% 공제

* 동 내용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근거하여 산정
 ** 제공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변경 및 취소시 본인부담금 환불 및 이용자 피해보상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을 고려하여 처리 (바우처는 결제 불가)

- 보완 이행계획 제시

- 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월 서비스 양의 100%를 미제공한 후 결제한 경우, 보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결제 유효기간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 원칙

- 다만 해당월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익월까지 결제 가능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 자격 포기로 간주하여 시·군·구청장은 중지 처리 가능

- * 단, 자격상실 처리를 위해서는 시·군·구 담당자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1개월 연속 미사용'으로 중지 및 전송 처리를 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바우처 이용 실적이 없는 이용자 현황을 수시로 점검, 자격 중지 등 조치를 통해 서비스 미이용자의 자격기간 만료로 인한 재신청 불가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

- * 서비스 미이용자 정보는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www.socialservice.or.kr)에서 조회 가능

② 본인부담금

□ 납부시기

- 서비스 개시 전 사전 납부
-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이용계약 체결시 안내

□ 납부방법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현금 납부시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서명(날인, 확인)한 영수증 2매를 발급하여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각1부씩 보관(☞ 서식 6)

□ 본인부담금 미부과시 조치

- 제공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은 본인 부담금액 만큼 정부지원금 인하

- 이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지원금 인하 등 조치

□ 본인부담금 환급

- 환급범위 : 이용 중단 후 1달 이내 환급

<u>구분</u>	<u>서비스제공총량</u>	<u>환급금액</u>
<u>제공기관 귀책시</u>	<u>50%초과제공</u>	<u>본인부담금의 50%</u>
	<u>50%이하제공</u>	<u>본인부담금의 100%</u>
<u>이용자 귀책시</u>	<u>50%이하이용</u>	<u>본인부담금의 50%</u>
	<u>50%초과이용</u>	<u>환급없음</u>

-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환급절차는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행한 ‘업종별 표준약관’ 등 준수

- 단, 이동체험학습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름(서비스 회당 결제를 원칙으로 함)

* 월 지원액 내에서 회당 서비스 가격을 산정하되(지자체가 승인), 서비스 개시 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 할 것

VI 서비스 제공기관



1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개요

- 각 기관별 시설·인력 등을 고려,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지정
- 원칙적으로 참여 희망 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은 간소화 가능

2 제공기관 지정

- ① 지정주체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시·도개발 사업은 해당 시·도지사가, 시·군·구 개발사업 및 시·군·구 공동 개발 사업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제공기관 지정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사업자”로 직접 지정
 - 전국사업자외에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지역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가 지정 가능
 - 각 기관별 시설·인력 등을 고려,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
 - 원칙적으로 참여 희망 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은 간소화 가능

< 등록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제 시행에 따라 기존사업자(2012.2.4. 이전에 지정받은 자)는 시행일('12.8.5)로부터 3개월 이내('12.11.4)에 요건을 갖추어 제공자로 등록, 그 외 신규 사업자는 시행일 전('12.8.4)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 ※ 지자체에서는 등록제 시행전에 등록제 미전환 기관 등을 사전 파악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중단 등에 대비

② 지정 대상기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대학 등 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해당 지역 내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 결격 사유가 없는 기관
- ※ 사회적기업(노동부 소관)도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나, 노동부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금은 바우처 제공인력에게 중복지급 될수 없음

□ 연합체(컨소시엄) 형태 참여

- 참여기관의 특성(전문영역, 소재지 등)이 차별적이어서 연합체(컨소시엄)를 통하여 역할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합체(컨소시엄) 형태 참여 가능
 - * 예 : A기관은 놀이치료, B기관은 상담교육, C기관은 음악치료를 담당하는 경우 전문영역이 다르므로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A, B, C기관 중 전체를 조정하는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주관 기관 명의로 바우처 가맹점 등록)
- 참여기관 중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 수행 및 참여기관 관리 등에 대한 총괄책임 부여
 - 서비스 제공 대금은 주관기관에 지급하며,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에 대한 수입 배분 등을 총괄
 -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구분되도록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에 주관기관 명칭 뒤에 괄호로 참여기관 명칭 기재 또는 구분 코드 추가하여 관리

※ 제공기관 지정시 참여기관을 모두 등록에 표시 및 사후관리 철저(☞ 서식 23)

- 연합체(컨소시엄) 구성은 시·군·구 사업일 경우 기관수를 5개 이하로 하고 시·도 사업일 경우 기관수를 20개 이하로 함

③ 지정 제외 대상기관

□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제6조에 의한 학원,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단, 의료기관과 법인을 달리하는 센터 등은 참여 가능)

□ 정부로부터 운영비 전액을 지원받는 기관

※ 복지관의 경우 운영비의 50%만 지원 받으므로 제공기관으로 지정 가능

□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치하는 제공기관

* 예 : 서비스 제공기관이 00명아원이고, 주된 수요자가 00명아원 학생인 경우

④ 지정 절차

□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

-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전년도 사업 실적 재평가 등을 통해 지정 기간 연장 여부 결정

□ 공모에 의한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 결과 신청기관이 2개소 이하이거나 서비스 공급 가능 기관이 명확한 경우,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모 기간 및 절차 등 간소화 가능

- 신청 기관의 자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로 시·군·구청장이 자체 고지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모 일정 단축 등은 가능하나, 이 경우 참여가능 기관에 대한 사전 홍보 철저

- 서비스 특성상,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청토록하고, 주관기관과 협력기관간의 협약내용을 별첨으로 제출

* 주관기관은 공동참여기관을 대표하고 총괄책임을 지며, 바우처 비용청구 및 협약에 따른 비용 정산의 주체가 됨(참여기관은 바우처 가맹점 등록 불가)

————— < 제공기관 지정시 제출서류 예시 > —————

-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서식 18)
- ② 공동사업의 경우 기관간의 협약 내용, 협력기관의 주요 현황
- ③ 사업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 서식 19 및 서식 20)
- ④ 서비스 내용 요약서 (☞ 서식 21)
- ⑤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의 경우 모법인이 존재하나 사업수행은 별도의 기관 등이 수행하는 경우)
- ⑥ 전년도 사업 참여 실적관련 보고서(전년도 사업참여 기관에 한함)
- ⑦ 기타 사업 신청 자격(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협회 등 총괄기관 외에 회원사, 가맹점, 컨소시엄 기관 등 지역별 실제 수행기관 포함) 등

-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공기관 지정시 별도의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5인이상으로 구성
 - 신청기관의 서비스 공급 능력, 사업 계획의 타당성, 양질의 서비스 공급 능력 등을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모두 선정 원칙
- 심사결과 적격한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일정 지정 조건이 부과된 지정서 교부(☞ 서식 22)
 - 지정된 제공기관은 지정 후 즉시 KB를 방문하여 바우처 가맹점 등록도록 안내
- 최소한의 경쟁체제 확보를 위해 사업당 2개 이상 제공기관 지정 원칙

————— < 제공기관 지정 행정처리 절차 > —————

- ① 제공기관 지정 (시도 및 시군구) ⇒ ② 지정서 교부(시군구) ⇒ ③ 가맹점 등록(제공기관) ⇒ ④ 제공기관 선정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개발원) ⇒ ⑤ 시스템 등록(개발원) ⇒ ⑥ 단말기 신청 (FDKL)

수 지정 기간 : 지정일 ~ 2012년 8월 4일

3 제공기관 재지정

- 2012년 사업조정시 기존 제공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가)지정된 제공기관은 복지부의 사업심사 결과 승인된 사업에 한해 재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정서 교부
 - 제공기관 지정결과 및 탈락 제공기관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개발원으로 통보
 - 재지정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제공기관 지정서(☞서식 22)의 지정기간 등을 변경하여 재교부
-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필요시 신규기관 추가 지정 가능하나, 이 경우 신규 제공기관 지정 절차에 따라 실시

4 제공기관 지정취소

1 지정취소 대상

-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아래의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휴업한 경우
 -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외)
 - 제공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제공기관이 중단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사업중단의사 확인 2개월후 지정 취소)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

2) 지정 취소 절차

□ 중대과실이 인정된 경우 제공기관 선정 절차에 준하여 지정취소 시행

— < 지정취소 시 유의사항 > —

- 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협의체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할 수 있음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지정에 준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②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사업자의 지정취소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제공기관의 소명 의견을 참고해야 함(서면원칙 대면가능)
 - * 지정취소 절차는 지정취소권자의 판단에 따라 간소화 가능

□ 지정취소 사후조치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 후 시·도지사, 개발원,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그 사실을 관할지역 내 제공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함
- 지정취소 및 관할지역내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제공기관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익월부터 해당 사업에서 철수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다른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지정취소 등의 경우 서비스 결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개발원으로 관련 내용 전송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전국사업자의 관할지역 내 사업참여 제한

- 시·군·구청장은 관할지역내 지역선택형 전국사업자의 불이익 처분 대상행위를 적발한 경우, 지정취소권자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할지역내에서 해당기관의 동 사업 참여 제한을 결정할 수 있음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이용자의 잔여 기간은 보장하되, 신규 이용자의 이용만을 금지하는 지역 내 사업참여 부분제한 조치 가능

- 사업 참여 제한 기한은 원칙적으로 지정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이나, 하반기 적발 또는 위반행위가 과중할 경우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조치도 가능

< 지역내 사업 참여 제한 관련 행정절차 >

- ① 현장점검, 이용자전화 실태조사(전수 혹은 표본조사)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 ② 지역사업자 지정취소절차에 준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협의체에서 심의(대면 또는 서면)하되 해당 사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것(대면 또는 서면)
- ③ 관할지역 내 해당업체의 사업 참여 제한으로 심의한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에 제한승인 요청
지역내 사업참여 제한 또는 부분제한 여부, 사업 참여 제한 기간 명시
* 사건경위 보고서, 심의결과보고서, 해당 업체의 확인서 및 의견서 등 첨부
- ④ 보건복지부의 승인 및 관할지역내 사업참여 제한 지자체 통보
- ⑤ 보건복지부 승인 후 해당 시·군·구청장은 사업참여제한 대상 제공기관(본사 및 해당 지점·지부 등)에 대해 관련사항을 문서로 통보
* 이용자불편 최소화를 위해 1개월 내외의 경과기간 설정 후 서비스 제공 중단 조치

-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공기관의 고의 및 중과실,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제공기관이 부정사용액의 환수책임을 져야함

5 사업착수 준비

① 바우처 가맹점 가입

-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KB 영업점에서 바우처 가맹점 가입 필수

- 가맹점 미가입 시 바우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함에 유의

- * 기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및 노인돌보미 등 기존 바우처 사업 제공기관은 가맹점 재등록 불필요

□ 바우처카드 가맹점 가입절차

구분	주요내용
가맹점 가입 신청	○ KB 영업점(해당지역 담당 카드마케팅팀에 전화로 연락하여 처리) * KB 부재지역은 KB 바우처 콜센터로 전화(1599-7900)
가입 대상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업체
가입관련 유의사항	○ 가맹점 신청전에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의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 필수 ○ 가맹점번호가 부여되어야 단말기 공급 및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 가능
가맹점 등록확인	○ 신청점 또는 콜센터(1599-7900)를 통한 확인 * 가맹점번호(8자리) 시·군·구에 통보

□ 바우처카드 가맹점 가입 접수서류

기본 서류	법인 추가 서류	위임관계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 가입신청서(은행비치) ○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제공기관 지정 지자체에서 교부)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지급 결제계좌 사본 ○ 대표자 신분증(개인사업자에 한함) ○ 바우처 가맹점 및 신용판매대금 자동청구 (EDC) 신청동의서(은행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위임장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단말기 가입 및 사용'에 대하여는 [참고자료 2] 참조

②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가입 및 이용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www.socialservice.or.kr)

- 바우처 사업 수행과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수단
- 바우처 생성 및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계약대상자관리) 서비스 이용자와의 계약 내용을 입력·관리하고 이용자별 바우처 생성 여부 확인 가능
 - (매출정보확인) “정산내역”에서 매출정보 및 정산내역을 확인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가입(최초 로그인 시 ID생성 방법)

- 아이디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비밀번호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 뒤에서 5자리 입력

□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에서 제공기관 정보를 개발원으로 미통보한 경우

□ 제공인력 정보 입력

- 제공기관은 매월 일자리 현황 및 고용실태, 자격정보, **교육시간** 등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www.socialservice.or.kr)에 입력

* 매월 3~20일까지 전월 제공인력 정보를 입력

③ 제공기관 운영계획 수립(☞ 서식 31)

□ 서비스 제공기관은 기 제출한 사업제안을 참고하여 기관운영계획을 수립 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사업 착수시 제출

- 주요 내용 : 서비스 공급인력 확보 및 현황, 교육 실시계획, 사업착수 전 준비 사항처리 내용, 시설 장비 등 확보, 연간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내용, 모니터링 계획, 성과평가 계획 등을 포함

* 바우처 기맹점 가입, 단말기구매,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서비스 이용자 확보 및 계약,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등록, 협력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현황 등 포함

④ 사업비관리

□ 관리운영비 조달 등

- 제공기관은 바우처 결제 및 추가 구매 등을 통하여 관리운영비 등 조달

- 제공인력 급여(4대 사회보험가입, 퇴직금 등 포함), 전용 단말기 구매·유지, 카드 결제 수수료, 단말기 유지비용,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 되는 경비 등

-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바우처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구매하고 카드결제 수수료, 단말기 유지관리 비용 등을 부담

□ 제공기관이 사회복지법인(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인 경우,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관리·운영

- 모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예산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관리·운영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5년간 보존
 - 지정취소 제공기관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 일체를 반납하고, 지자체는 그 서류를 생성년도로부터 5년간 보존

수 기타 기관운영 성실 이행

- 지정 기간 내 사업에 지속 참여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때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포기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지정권자에 통보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지침 준수
 - 동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시 지정조건,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달되는 각종 지침 준수
 - 제공기관 지정시 동 지침의무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보며, 지침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가능
- 민원관리 기준 마련 등 성실한 민원 응대
 - 내부적인 민원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절히 운영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공지
 - 서비스 이용자 및 고객 등 제기된 민원은 지체 없이 접수 및 처리
- 서비스 제공 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
 - 지정 기관(지사·지부·가맹점 등 포함), 참여기관(컨소시엄),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해태, 부정행위 등에 대해 책임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한 사전·사후조치
 - * 배상보험·상해보험 가입유도, 교육훈련 및 주기적 모니터링 강화 등
- 정부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이행
 - 서비스 제공과 예산의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또는 이를 가공하여 생성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정부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하게 이행

숙 제공기관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연령, 성별, 경력 포함), 시설장비 보유현황, 연도별 서비스 이용인원,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대, 기타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할 수 없음
-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 결제시 발생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 할 수 없음
- 제공기관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실제 제공한 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허위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행위
 - 이용자 유치를 위하여 금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19조제7항제1호·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

- * 제19조제7항제1호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 제19조제7항제2호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6 제공기관 인력

1 기본방향

- 시·군·구청장은 관내 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추계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 기관별로 기관운영·관리 인력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수요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제공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계획 수립시 저소득 여성(휴·폐업 영세자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 가구 여성, 노인 등), 지방대졸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 확충방안을 포함하여 수립

2 제공인력의 역할 및 교육

-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참여, 건강투자, 학습활동 등 목적 달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활동

3 제공인력 교육

- 제공기관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공기관은 기관 자체 실무교육 포함하여 제공기관 실무자 대상 연 20시간 내의 교육
- 소양교육(신규 인력)
 - 제공기관 대표자(운영관리 인력), 서비스 제공인력 공통(5시간)

구 분	대표자, 기관운영관리자	서비스제공인력
시 간	5시간	5시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및 운영 방향 - 바우처 운영 시스템 기본 교육 - 개인정보보호 - 사회복지이해 및 품질관리 등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방식 : 교재 활용을 통한 강의식 교육(개발원 제공 자료 활용) - 교육강사 : 교육내용별로 해당 전문강사 Pool 구성 	
특이사항	- 지자체별 통합교육, 정보원 통합교육, 복지부 집합교육 참여시간 인정	

□ 직무교육(신규인력)

구 분	대표자	서비스제공인력
시 간	15시간	15시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및 운영 방향 - 개인정보보호 - 고객관리 및 마케팅 교육 - 회계, 노무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상담 기초 - 관계형성 - 제공인력 의무와 책임 등 제공기관 운영계획에 직무교육 실시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지원단의 관련 교육 - 보건복지부 주관 관련 교육 - 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학교 등의 위탁 유료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자체 교육(간담회 포함) - 지역위탁 교육 등 - 교육내용별로 해당 전문강사 pool 구성·운영
특이사항	-	

□ 보수교육(기존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은 직무에 대해 연간 20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

4 제공인력의 의무

- 이용자 및 가족 등의 욕구에 맞는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욕구변화 등으로 서비스제공계획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 변경

- 이용자의 욕구 및 희망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
- 서비스 제공 방문일시, 제공한 서비스 내용, 공급인력이 유의해야 할 특이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
-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 이용자 학대 등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이용자에게 바우처 서비스 외에 추가적 서비스 강요시 관계기관에 신고
- 서비스 제공 중 서비스 이용자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및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
-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특정 이용자에게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 불가
- 사회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 확인(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제시 요청)

*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 제시 기피자에게 서비스 제공 금지

수 사업 참여 불가 제공인력

- 자활근로, 복지관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 불가
 - 장애아동재활치료 등 타 바우처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으로 참여 가능
- 이용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제공인력은 될수 있으나,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숙 제공인력관리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급여 등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인건비 지급 및 노무관리(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준법 준수 의무 등)

- 제공인력에 대한 4대 보험, 퇴직적립금 등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가입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제외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7 제공기관 행정사항

1 사업추진실적 보고

- 제공기관은 매월 사업추진 실적 및 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군·구 및 시·도에 보고

□ 실적보고내용

- 제공기관 일반 현황 변경 사항
- 제공인력 관련 자료
 - 일반사항 : 성명, 주민번호, 참여사업, 주소
 - 근로조건정보 :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
 - 급여정보 : 지급급여, 근로시간
 - 자격 및 교육정보 : 자격증, 발급기관, 교육시간

- 사업종료후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등을 해당 시군구 및 시도에 제출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서식 32)

※ 성과평가 보고서는 추후 공문으로 발송

② 사업관리서류 비치

- 제공기관 운영관리 계획서
-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서 등 계약관련 서류
-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증빙 서류 일체
- 예산집행에 따른 관련 서류 등

VII 서비스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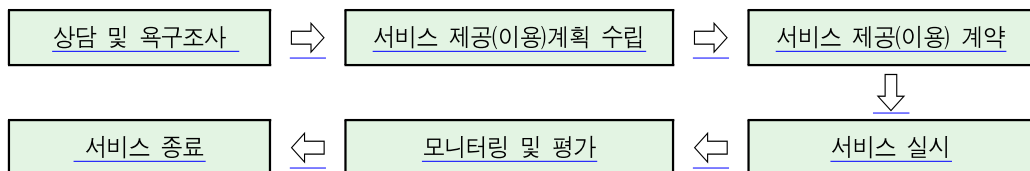


1 기본방향

- 관할 시·군·구청장이 복지부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
- 현물(“바우처 이용권”) 제공
- 관할 시·군·구청장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만 실시하는 서비스로 함(2012년 8월 등록제로 전환 예정)
-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된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받음

2 서비스 실시절차

① 서비스 실시 절차



② 상담

- 초기상담(intake)(서식 7)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자를 면담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파악
- 상담 내용
 - 서비스 제공 일정, 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 등을 파악
 - 이용자의 구체적인 문제, 개인의 욕구, 가구특성 등을 파악

- 필요 시 별도 조사표를 사전에 준비, 조사표에 의한 조사 실시하며, 결과는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수립시 반영

③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서식 8)

□ 상당시 파악된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제공기관이 작성

□ 내용

- 서비스 유형, 서비스 제공 방법, 제공횟수, 제공기간, 제공 일정,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및 납부방법 등

□ 작성시 고려사항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
-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작성
-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최종 결정된 내용으로 서비스 일정표를 포함한 제공계획서 작성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5(보호이용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④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 정의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별 서비스 제공인력과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는 과정

□ 계약 당사자

- 이용자 또는 가족 등의 대리인과 서비스 제공기관

□ 주요 계약 내용

-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 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및 지급방법
-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 계약 효력 정지 및 취소

-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에 대한 성추행 등 쌍방간 부당·부정 시 계약 취소 (바우처 지원 중단)

□ 계약 절차

- 이용자를 “갑”으로 제공기관을 “을”로 계약서 작성
 - * 서비스 제공계약서(예시) : ☞ 서식 15
- 계약시 이용자별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 및 일정표 제공
 -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이용)계획서 : ☞ 서식 8
- 제공기관은 계약 사항을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에 등록

수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율적인 계약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및 일정표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이용) 후 단말기를 이용한 바우처 카드 결제로 서비스 비용을 결제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제공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록지(☞ 서식 16)에 기록
 - 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 후 반드시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 제공 기록지 작성 시 이용자명, 주민번호(생년월일), 제공자명, 서비스 내용, 이용자 확인 등 필수
 - *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자체 양식이 있는 경우 이의 활용 가능
- 서비스 제공(이용) 일정 확인 후 서비스 종료

□ 서비스 변경

-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 이용자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제공기관 이용 가능
- 가급적 월단위로 제공기관을 변경하되, 최소 7일전 통지 후 계약 해지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방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짐
- 제공기관 변경 시 기존 제공기관은 7일 내에 바우처를 결제하여야 하며, 변경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은 바우처 잔량을 반드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나 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용자(보호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 이용자의 제공인력 변경 요청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제공인력을 변경
 - 제공인력이 특정 이용자에게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가능

숙 서비스 모니터링

- 제공기관은 반기별로 이용자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보관 [☞ 서식 27]
 - 제공기관은 그 결과를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
 - * 단, 6개월미만 단기사업은 최소 1회이상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항목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상 일치여부, 서비스 제공 충실도, 바우처 결제의 적절성, 서비스 이용효과, 모니터링 결과, 기타 건의사항 등으로 구성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성과평가를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제공기관을 지도·감독

7 서비스 종료

- 서비스 종료 상담 실시
 - 서비스가 완료되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거나, 초기상담시 사용했던 검사도구 등을 활용하여 변화정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

□ 종료시기

-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종료
- 서비스 제공 계약기간 만료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계약 해지사유가 있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

□ 종료통지

- 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14일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해지 통지
- 이용자가 계약해지 할 때에는 7일 전에 제공기관에게 계약해지통지

□ 종료절차

- 이용자 및 이용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종료일자 및 종료사유 통지(☞ 서식 14)

1 개요

- 바우처 발행과 환금,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불 등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군·구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
- 자금집행 현황과 바우처 정보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정기적으로 사업집행실적 등을 전자 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복지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

【관계자별 예산집행 관련사항】

이해관계자	관 련 내 용	비고
대 상 자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제공기관	바우처 가맹점 계약, 단말기 구입,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수령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예산 편성,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자금(국고보조금+지방비) 예탁	
보건복지부	전체 사업예산 수립 및 배정, 국고보조금 교부 전담금융기관 선정·운영, 개발원에 업무위탁·관리감독	
전담금융기관	이해관계자의 금융업무 편익을 위한 계좌 관리 이해관계자간 입·출금 등 금융업무 대행 바우처 카드 발행 및 거래내역 관리 제공기관 비용청구 접수·지급, 개발원과 정산	전자 바우처 사업에 한해 적용
개발원	바우처 정보, 예탁금관리, 자금집행실적 관리, 사업사업계획 (기준정보) 관리, 모니터링	

* 전자 바우처 카드결제 이외의 결제 방식은 전담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발원에서 직접 심사 후 지급 결정

2 업무위탁 및 비용의 예탁

1 업무 위탁

- 위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5 제6항

- 시·군·구청장은 서비스 실시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업무 수행 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비용 지급

- 개발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매 분기별로 시·군·구로부터 바우처 비용의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 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의 비용을 지급

② 비용의 예탁

□ 시·군·구청장은 바우처 서비스 비용의 지급과 정산을 위해 사업비를 개발원장에게 미리 예탁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5 제6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

- 시·도지사는 예탁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예탁금액을 정하여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 시·군·구청장에게 보조금 교부

□ 시·군·구청장은 지정된 날짜(매분기 시작 월 20일)까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개발원의 지정계좌에 납부

- 예산 확정 후 즉시 예탁(특히 1월의 경우 1월 20일까지 예탁 완료)
- 바우처 생성 시점에 해당 시·군·구의 예탁금액이 부족할 경우 바우처 생성이 불가함에 유의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 특성상 바우처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예탁을 아니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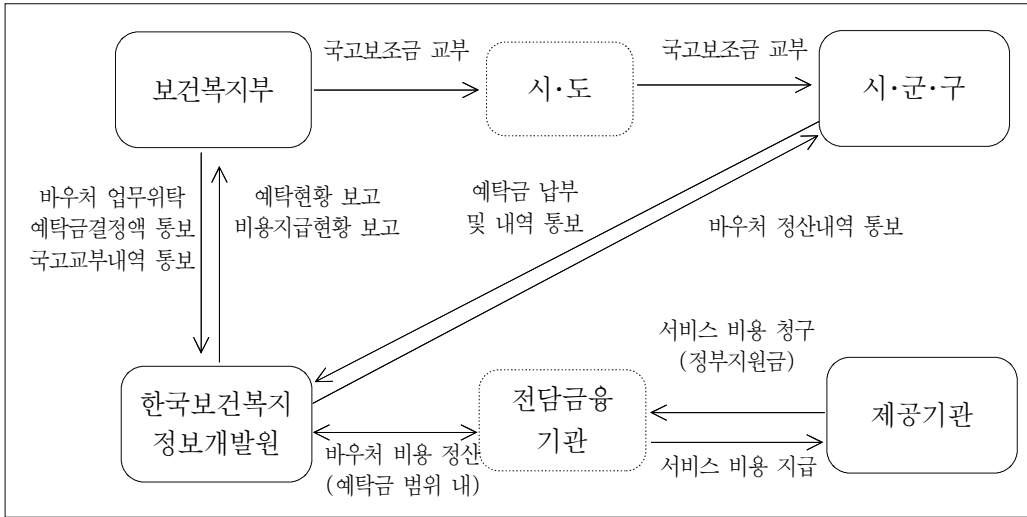
□ 예탁금 납부통보서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정일까지 해당 예탁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국고보조금, 지방비 구분)을 개발원에 통보

□ 시·군·구청장은 예탁금 결정액을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개발원에 통보

□ 시·군·구청장은 예산금액 변동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역을 다음 분기 예탁금 결정액에 반영

【업무처리 흐름도】



③ 본인부담금 징구

- 시·군·구청장은 개발원장에게 사업비를 예탁하는 경우 사업 개시전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징구받도록 하여야 함

3 비용(정부지원금)의 지불 및 정산

① 비용의 청구

- 청구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
- 청구방법 및 결제 원칙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비용을 단말기를 이용한 카드 결제를 통하여 개발원과 연계된 전담 금융기관에 서비스 비용 청구
 - * 단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증서” 등 단말기 이외의 결제수단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제공기관의 서비스 비용 청구

-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수납하고 정부지원금만 청구
- 전출, 사망 등 예외적인 사유로 중도에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청구 원칙

② 비용의 지급

□ 서비스 비용 청구

- 서비스 제공기관은 해당 월 서비스 총량의 50%를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 시점이후부터 해당월말까지 개발원에 월 1회 청구 원칙
(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 지자체에 사전 승인 후 회당결제도 가능)

□ 비용의 지급

- 전담금융기관은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제공기관에 대하여 카드수수료 공제 후 차액을 제공기관 계좌에 입금
- 제공기관의 월 결제액은 서비스 제공 비율에 따라 결정
 - 해당월 서비스 양의 50% 초과 제공시는 총 지원액의 100%, 50%이하 제공시는 지원액의 50%를 산정
- * (예시) 월 8회 서비스 제공을 계획한 경우 50%를 초과한 5회이상 서비스 제공시 전액 결제, 기타 1~4회 서비스 제공시 정부지원금의 반액을 결제함

□ 입금내역은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매출 및 정산 > 정산내역조회 > 이용내역 조회

③ 서비스 비용 지급 예외

□ 지급대상

- 서비스 제공 후, 이용자의 카드 분실, 전용 단말기 분실 및 파손 등의 사유로 단말기를 이용한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서비스 비용 지급
- 제공기관이 예외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비용지급 시 제공기관 현지 실사 등 적정성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지급

□ 업무처리 절차

- 비용 청구 의뢰 : 서비스 제공기관
 - 제공기관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7일까지 개발원으로 서비스 비용 청구 문서를 접수
- 비용 지급 심사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개발원장은 미결제 사유의 적합성 및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현지실사 및 증빙자료 검토 등을 통해 확인 후 제공기관으로 심사결과를 통보
- 서비스 비용 청구 : 제공기관
 - 제공기관은 개발원 심사결과 지급이 승인된 이용자의 서비스 비용을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청구
 -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예외청구 >> 서비스비용청구
- 비용 지급 : 개발원
 - 개발원장은 제공기관이 청구한 지급 승인 이용자의 서비스 비용을 수수료 공제 후 차액을 제공기관 계좌에 입금
 - * 분기별 1회 지급(5월, 8월, 11월, 익년도 2월)

④ 비용의 정산

- 전담금융기관은 집행내역을 개발원에 통보
- 제공기관별, 서비스 이용자별 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월별 정산

수 이자수입 및 회계처리

- 이자수입의 처리 : 연 1회(결산 시)
 - 예탁금 결정액 총액에 대한 시·군·구별 예탁금납부금액의 비율에 예탁금수입 이자 총액을 곱하여 산출
 - 개발원은 이자수입이 각 시·군·구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개설시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요청

□ 회계처리

- 개발원은 매월 시·도 및 시·군·구에 정산내역을 통보
 - 시·도 : 매월 시·도별 및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공문을 통해 통보
 - 시·군·구 : 매월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 공지
 -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바우처정산 > 월별정산 > 시군구별 정산현황
- 개발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도 및 시·군·구에 정산내역을 통보
 - 시·도 : 시·도별 및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공문을 통해 통보
 - 시·군·구 : 시·군·구별 정산서 및 정산항목별 내역을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 통해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도록 게재
 -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바우처정산 > 연말정산 > 예탁금정산조회

숙 비용의 반환청구 등

- 과대 또는 허위 청구로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제공기관의 장은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제공 일수 등을 감안하여 제공기관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일, 납부방법 등을 확정, 제공기관에 통보
 - *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에게 업무처리 위탁 가능
 - 제공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과다 청구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의거 처리

1 성과 평가

1 평가 주체

- 보건복지부

2 평가 방향

- 정량적 지표 위주로 평가하되 사업별 평가 이외에 우수서비스 사례평가 병행
- 복지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하고, 연초에 세부 평가지표 제시

3 결과 활용

- 우수사업(지자체)은 차년도 예산증액,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부진사업은 현장점검 및 컨설팅 통해 성과 개선 유도

【사업별평가 지표(안) 예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지자체 평가	지자체 운영 관리 (10)	① 총사업 대비 지자체 주관 현장점검 실시율
		② 참여 제공기관 인력 교육실적(지자체 주관)
		③ 언론보도 횟수 홍보물 제작·배포 건수
사업 평가	사업실적관리 (30점)	④ 사업별 최종 승인액 기준 예산 집행율 (국고+지방비)
		⑤ 바우처 생성자 대비 실제 이용자 비율
	서비스 품질관리 (30점)	⑥ 서비스 이용자 대상(샘플조사) 만족도 조사
		⑦ 제공인력 연간 보수교육 시간
	고용창출 및 시장형성도 (30점)	⑧ 사업별 예산상 고용인원 대비 실 고용인원 수
		⑨ 일자리 질적 우수성 4대사회보험 가입율
		⑩ 일반대상 서비스 제공실적(바우처이용자 제외)

※ '12년도 세부평가 지표 등은 추후 별도 통지 예정

2 사업계획(기준정보)관리

① 관리주체 : 시·도지사(시도개발) 또는 시·군·구청장(시군구 자체 및 공동개발)

② 기본방향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사업 개시 전 이용자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바우처 생성 정보, 바우처 단가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등이 포함된 사업별 사업계획(기준정보) 및 지침을 개정

- 사업계획(기준정보) 및 제공기관정보 등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에서 시스템을 통해 일괄 관리하므로, 지자체에서는 사업계획(기준정보) 등을 사전에 확정, 보건복지부에 보고

* 사업별 사업계획(기준정보)는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동 사업계획(기준정보)를 가급적 준수하되, 지역 여건,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정보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사전 승인 후 정보변경 가능

- 다만 바우처 및 단말기 관리, 시스템 적용 등 관련 사항은 변경 불가

③ 주요 정보내용

- 이용자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바우처 생성 정보, 바우처 단가(본인 부담금 포함) 등 바우처 생성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 사업별 사업계획(기준정보)는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④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절차

구 분	계속사업	신규사업	비고
사업추진계획 시달 (보건복지부)	기본계획 수립시달	신규사업 공모	
사업평가 및 수요·공급 조사 (시·군·구, 시·도)	기존사업평가 및 수요파악	지역복지육구 파악 및 신규아이템 개발	



< 업무 처리 절차에 따른 사업계획(기준정보) 적용 예시 >

◇ '12.4.14 정부지원금을 5만원 → 8만원으로 변경한 경우, 6월 바우처 생성 시 변경된 정부 지원금 적용

- ① 사업계획(기준정보) 전산 반영(4.30까지) → ② 변경여부·내용 확인(5. 1) → ③ 신규 이용자 입력 및 전송(5.1일 이후) → ④ 변경된 사업계획(기준정보)에 따른 바우처 생성(5.31) → ⑤ 변경된 기준 정보에 의한 서비스 이용(6월 이후)

-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서식 28)
-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 통보

수 사업계획(기준정보) 변경

- 서비스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사업기간내 정보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다만, 예산 조정,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월, 7월, 10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변경 승인 요청 가능)

【기준정보변경 일정(연 3회)】

구 분	1차	2차	3차
(지자체 → 복지부) 기준정보 변경신청	~4.16일	~7.16일	~10.16일
(복지부 → 지자체) 변경검토 통보 및 전산시스템 등 변경사항 확인	4월 말일	7월 말일	10월 말일
변경사항 적용일 *	5월~	8월~	11월~

* 단, 변경된 기준정보 중 바우처생성 및 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정보(월별 정부지원단가, 대상자별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주기 등)의 '승인'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후 반영(예. 4월말 통보 건은 6월초부터 적용)

- 해당 지자체의 책임 하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이용자 변경이나 확대(예 : 노인 → 장애인, 여성 등)
 - 서비스 이용자 선정 기준 및 우선 순위 변경
 - 서비스 내용 변경
 - 바우처 지원액, 지원 주기, 지원 횟수 조정
 - 사업명, 사업 개시·종료 시기, 사업 예산 변경
 - 기타 사업의 본질적 내용 및 바우처 운영관리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경으로 바우처 시스템이나 사업 방식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바우처 방식을 공급자 지원방식으로의 변경은 불가
- 시·도개발 사업은 시·도지사, 시·군·구개발 사업 및 공동개발 사업은 시·군·구청장이 변경 신청함이 원칙
- 변경절차
 - 변경 신청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기준 정보 변경이 필요한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 신청(☞ 서식 24)
 - 시도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직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 16일 이후 신청 시 다음달 적용이 불가함에 유의

- 변경 내용 검토·승인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 내용의 타당성,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 사업 기준 정보 변경 승인 여부·내용 등을 검토

※ 전월 21일까지 해당 시·도지사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에 그 내용을 통보

☞ 필요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전제로 신청 내용 변경승인도 가능

- 사업계획(기준정보) 전산반영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 개발원장은 바우처 통합시스템에 사업 사업계획(기준정보)를 등록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전담금융기관으로 전문 전송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전담금융기관은 각 시스템에 변경된 사업계획(기준정보) 등록

- 기변경 내용 확인·적용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익월 1일 전산 반영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 확인

• 사업계획(기준정보) 변경 내용은 매분기 익월 1일 신청·전송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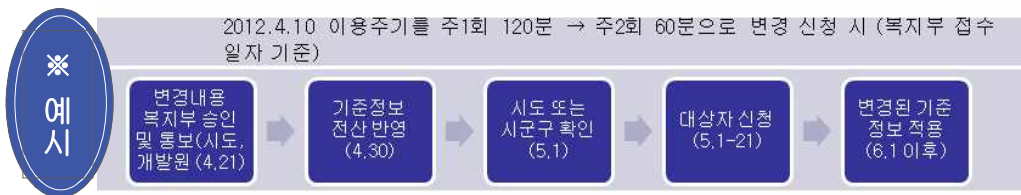
* 다만 바우처 생성 및 결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사업명, 이용자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서비스 내용, 사업비 등)은 개발원 접수일로부터 3일 후 적용

-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개발원에서 일괄 변경하므로 별도 작업 불필요
- ‘이용자 지원 기간’ 변경이 있는 사업은 반드시 기존 서비스 이용자 일괄 해지 후 재신청

* 일괄 해지전 반드시 개발원과 사전 협의 필요

-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서비스제공기관 정보변경 흐름도】



숙 사업계획(기준정보) 작성 요령(☞ 서식 24)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서비스 전체 가격

* 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시장가격, 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 적정 가격 산정

- 정부지원금(천원) : 서비스 이용자별로 바우처 생성 시 매월 정부가 지원할 금액

* 월 단위 정액으로 월 최대 2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고, 한번 설정된 정부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단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업계획(기준정보) 변경 요청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본인부담금(천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서비스 내용, 이용자 소득 수준·욕구 등에 따라 제공기관별 서비스 가격 차등화 가능

□ 이용자별 지원기간 : 이용자 서비스 제공기간 기재

- 사업별로 최대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의 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

• 단 이용자 자격관리 등을 위해 사업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별 지원 기간 변경은 불가(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 사전 협의 후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

* (참고) 이용자 지원기간이 8개월 → 12개월로 변경시 기존이용자 전체를 중지전송 처리 후 신규로 이용자 정보를 입력·재전송해야 함

□ 생성주기

- 이용자별 서비스 개시월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주기를 의미 (1개월 마다, 2개월마다,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회 등)

* (예시) 2개월마다 생성되는 바우처의 경우 최초 바우처 생성이 3월인 경우 이후 5월, 7월, 9월, 11월에 각각 바우처 생성

- 바우처 생성 주기가 매월, 1회인 경우를 제외하고, 격월, 분기 등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사업의 경우 '11년 이용자에 대해서는 자격 해지 등 별도 조치가 없는 한 '12.2월중 일괄 바우처 생성 예정

* (예시) '11년 10월 신규이용자(3개월마다 바우처생성되는 12개월사업)의 경우 10월, 1월, 2월, 5월, 8월에 바우처가 생성됨

- 사업 관리 용이 등을 위해 가급적 격월이나 3개월 등 주기적 생성은 지양(매월 생성되도록 사업 개발·관리)

□ 소득 : 사업별 이용자 선정 소득기준 기재

* (예시)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120%이하 등

□ 연령 : 사업별 이용자 평균 연령 기재

- 서비스 이용자 연령 기재하되, 초등학생, 중학생 등 불명확한 표현은 가급적 지양(8세, 13세 등 명확하게 판별 가능한 기준 설정)

□ 가구특성 : 사업별 대상가구 특성 기재(대상 혼합사업의 경우 주 대상가구로 기재)

* (예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 우선순위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우선순위 기재

* 저소득층 지원 필요성이 높은 노인·장애인 대상 사업,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등 외에는 저소득층 우선지원 배제

□ 제공장소 및 방법

- 서비스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및 서비스 제공 유형 기재

* (예시) 서비스 제공유형 : 집합, 개별 등

- 제공주기 : 서비스가 제공되는 횟수 등 기재
 - * (예시) 3개월마다 1회, 주1회 등
- 서비스 시간(분) : 서비스 1회당 소요되는 시간 기재
- 개발주체 : 서비스 실시주체 기재
 - * (예시) 시도개발(시도전체 시행), 시군구공동개발(2개이상 시군시행), 자체개발
- 제공기관 수(개) : 해당 지자체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수 기재

3 홍보

1 개요

- 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신청 안내 및 서비스 이용 안내에 대한 홍보에 중점
- 특히, 사업 시행 초기부터 제도 내용 및 선정기준·절차를 집중 홍보하여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2 홍보방법

- 보건복지부
 - 공익 캠페인성 광고 : 지하철 LCD, 옥외 전광판, TV 자막광고 등 다중매체 활용
 - 리플렛, 포스터, 기타 홍보 유인물 등 제작, 지자체를 통해 배포
 -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 설명회 개최 / 반상회보 게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사이트 (<http://www.socialservice.or.kr>) 활용
- 시·도, 시·군·구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및 다중장소에 현수막·홍보탑 등 설치, 전광판 광고·버스 광고 활용
 - 홍보 리플렛(읍·면·동 비치 및 수요자 가구 배포)
 - 홍보 포스터(읍·면·동, 보건소 등 관공서 및 공동주택 등 부착)

- 전단지(개별 수요자 가구 발송)
- 기타 소책자, 안내문, 기타 홍보 유인물 자체 제작 배포
- 케이블 TV, 지역유선방송, 지역신문 광고 등 매스컴 활용
- 지방의회·주민단체 등 유관기관·단체 설명회 개최
- 반상회보 배포
- 지자체 홈페이지에 자료 게재
- 시·군·구별 각종 주민 행사, 리·동장회의 등 활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 및 제공인력 모집을 위한 홍보 실시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에 필요한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 명단과 연락처 제공 가능(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협약서 수령)

□ 유관기관 협조

- 학교 등 서비스 이용자 홍보가 가능한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4 교육

① 교육대상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 공무원 및 업무보조인력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자, 실무자

② 교육방법

□ 보건복지부

- 시·도, 시·군·구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시·군·구별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자 교육 실시

* 인력개발원 교육과정 개설 등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집합 교육 실시

- 시·군·구 : 읍·면·동 공무원 및 업무보조 인력에 대한 전달교육 실시

* 각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최대 활용

③ 교육내용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 공무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 전반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자
 - 인력 관리 및 기관 운영
 - 서비스 제공
 - 바우처 단말기 사용 및 비용의 정산

5 예산조정

- 사업 시행 중 개별사업 예산의 10% 내외에서 복지부 사전 승인없이 지자체 판단 하에 자율 조정 가능

* 단, 지역개발형 사업과 지역선택형(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간 예산 조정은 불가

6 현장점검

- 사업추진 실적 현장 점검(정기)
 - 보건복지부(년 1회) 및 지방자치단체장(반기 1회 이상)은 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주요점검 내용
 - 제공기관 운영관리 계획에 따른 실적 점검(제공인력 자격, 교육 등 실적)
 -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실태(서비스 횟수, 내용 등 확인)
 - 보조금 집행관리의 적정성(본인부담금 징수, 부정결제 등 확인)

3] 2012년 지원단 운영 계획(안)

□ (지정규모) 10개 시·도 내외

※ 설치기관 적정성 등을 감안해 ('11년) 5개 → ('12년) 10개 내외 → (중장기) 전체 시·도로 확대

□ (설치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시·도 산하 복지재단, 기타 시·도가 추천하는 기관 중 지원단 선정위원회에서 지원단 기능에 대한 수행 역량을 인정하는 기관

□ (기준 지원액) 기관 당 2.1억원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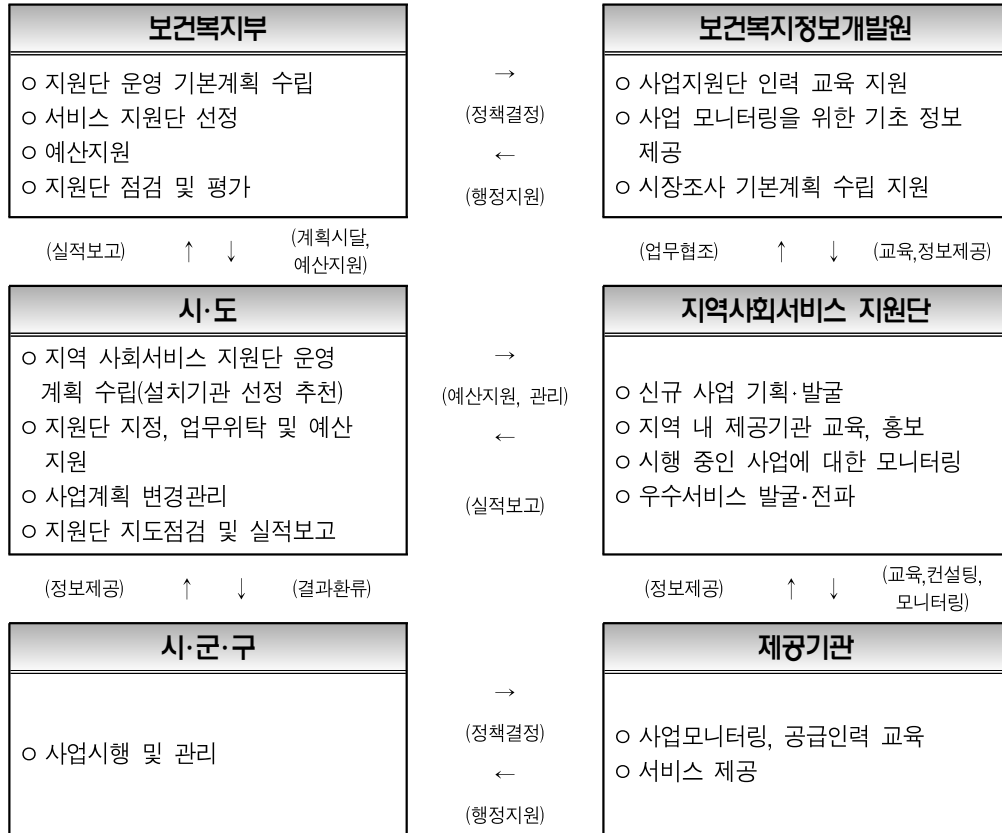
- 국비는 지방 1.5억원(보조율 70%) 내외, 서울 1.05억원(보조율 50%) 내외 지원
- 정부 지원액은 운영비, 인건비(연구인력, 행정인력 등)로 활용
- 효과적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 증액 필요 시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지정기간) 시·도 지정일(보건복지부 선정 후 3일 내) ~ '12.12.31.

□ 보고체계

- (착수보고) 지원단은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 착수 현황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로 보고
- (실적보고) 지원단은 월별 실적을 익월 5일까지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정보 개발원에 보고하고, 시·도는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로 보고

□ 추진체계



8 전산업무시스템지원

1 전산업무흐름도

수행기관	지자체(시군구)	지자체(시도)	복지부(개발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기존사업평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사업계획서 수립 및 보완(기존사업)</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수행기관 공모·가지정 (기존사업은 재판정)</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사업계획 및 제공기관 등록</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기관운영계획 확인 및 보완</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완(기존사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사업계획서 조정(기존사업) 및 우선순위 부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사업계획 승인(기존사업) 및 신규사업 선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기관운영계획 수립보고 (수동으로 제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제공인력 관리 (보수지급 관리)</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제공기관 현황</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사업현황 관리</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월별실적마감</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사업결과 보고</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현황 및 실적관리</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국비·지방비관리</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사업종료 (기존사업 평가 피드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현황 및 실적관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현황 및 실적관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집행부진사업 사업조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집행부진사업 사업조정</div>

② 세부내용

- 실적보고의 전산화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업무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 및 운영실적을 등록 관리하여 수기 보고 없이 전산상으로 실적이 집계,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서 등록
 - 보건복지부에서 최종확정된 사업계획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 승인 필요
 -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에서 보고한 기관운영계획서를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 하여 관리
- 월별 실적 및 현황관리
 - 제공기관은 사업시작 후 매달 10일 이전에 전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해 모든 입력을 마쳐야함
 - 시군구청장 및 시도에서는 관할하는 사업 제공기관의 사업실적 입력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최종 승인 처리 실시(수정이 필요한 경우 승인 취소후 재입력 가능)
 - 월별실적관리 내용 : 제공기관 행정사항 참조

9 개인정보보호

- 관할 시·군·구청장 및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이용자의 정보를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 보호이용자의 복지요구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회복지사업법제53조의2) 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제23조 2항이외에 지정 취소 등 조치 가능)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비밀누설 금지)에 업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 금지토록 규정, 위반시 같은법 제37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제6항](#)

— <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례 예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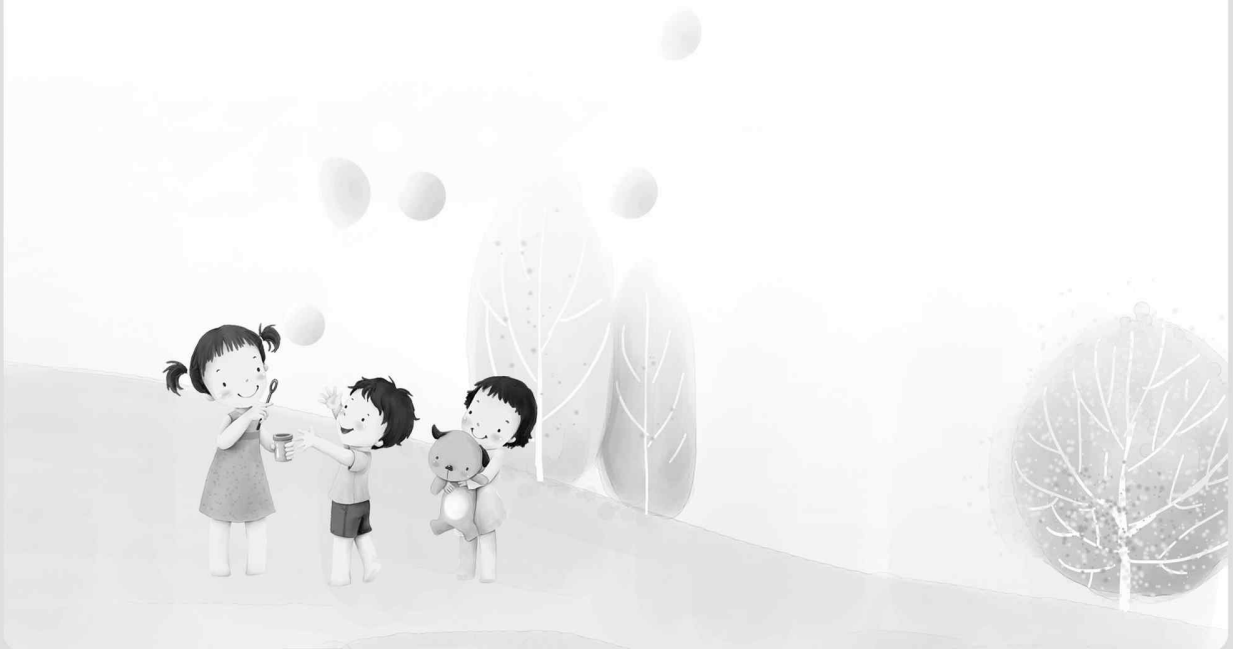
- *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공공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
- *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서, 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3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유형

- I. 지역선택형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II. 지역개발형 사업
- III. 10대 유망사회서비스 표준모델
- IV. 기타 표준모델(10개 유형)



I

지역선택형 사업(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1 사업목적

-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 촉진

2 서비스 대상

- ① 서비스 이용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2~6세 아동
- 2006년 1월 1일~ 2010년 12월 31일 출생

- ② 이용자 분류

- 1등급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2~6세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치료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용자 포함),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 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2등급 : 그 외 아동

3 서비스 내용

- 제공주체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
- 서비스 내용 : 이용자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 1회이상 파견(방문 1회당 20분 내외)
 - ① 책 읽어주기

- 프로그램에 따른 관련책 읽어주되 시간범위내 가급적 전체내용을 읽어줌

* 책을 읽어주는 대신에 목록체크등의 서비스로 갈음하는 것은 불가

** 고가의 책인 경우 대여서비스도 가능

② 도서지급 및 아동 대상 독서 후 느낀 점 이야기등 독후활동 실시

③ 부모대상 독서지도 및 상담실시

- 양서나 독서 지도 관련 각종 정보 제공

- 책을 통한 아이와의 상호관계 방법 지도

□ 바우처 관리·운영

- 서비스 이용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 바우처 지원액 : 개별수요자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 정부지원금 차등화

- 1등급 아동 : 1인당 월 27천원

- 2등급 아동 : 1인당 월 20천원

-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 재판정 유효기간 : 10개월

- 단, 1등급 이용자(27천원 지원 아동)의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

- 서비스 개시월 기준 산정

* (예시) 2011년 8월 신청(9월 서비스 개시) 시 2012년 6월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개인별 판정 유효 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종료 시 바우처 지원 중단

4 서비스 이용자 선정

1 우선순위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수가 시·군·구별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거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함
 - ①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 ② 가정위탁아동
 - ③ 국내입양 아동
 - ④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
 - ⑤ 장애아동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 ⑥ 조손가정 아동
 - ⑦ 다문화가정 아동
 - ⑧ 한부모가정 아동
 - ⑨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⑩ 그 외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부모의 장애 여부, 연령 등 추가 우선순위 부여 가능

2 이용자 선정권자 및 시기

- 선정권자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시·군·구청장이 선정
 - 선정시기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과 선정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연중 신청·선정가능
 - 익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선정결과는 매월 21일 18시 이전까지 개발원으로 전송
- *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한 내 선정결과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익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5 자격관리 등

①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 서비스 개시월 기준 최대 10개월 지원 원칙

- 단, 1등급 이용자(27천원 지원)의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 (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연령 및 소득기준, 1등급 이용자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시 지원 가능)
- 개인별 판정 유효 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종료 시 바우처 지원 중단
- 다만 전액 본인부담을 전제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 지속 이용은 가능

② 전출입

□ 서비스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종료

□ 전입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는 전입지에서 서비스 재신청

- 전입지에서 재신청 가능 여부는 예산 여건,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내역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자체 판단 가능

* (예시) 전입자가 서비스 이용내역 50% 이상인 경우 재신청 불가 등 자체기준 설정

6 바우처 지급 및 이용

① 바우처 지원액(정부지원금)

□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매월 20,000원 또는 27,000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

- 1등급 : 27천원 지원

- 2등급 : 20천원 지원

□ 바우처는 포인트로 구현

- 바우처 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타 기관 사용 및 현금화 절대 불가

□ 바우처의 생성

- 매월 말일에 익월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포인트 생성

②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설정

-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 제공기관,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양

□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 납부시기 :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계약에 의해 결정하되 서비스 개시전에 사전 납부
- 납부방법 : 은행 계좌입금 원칙(현금 납부시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확인한 영수증 2매를 발급하여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각각 보관)

7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①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제공기관의 종류 및 지정권자

-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전국사업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사업자가 있음

* 지역사업자 지정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필요

- 제공기관 지정권자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정한 제공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음

□ 지정시기 및 기간

- 전국사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한 시기에, 지역사업자의 경우 각 지역여건에

따라 수시로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 가능

- 제공기관 지정 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공기관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임

② 서비스 제공기관 준비사항

□ 단말기 등 결제수단 확보

- 제공기관은 단말기 등 보건복지부가 정한 바우처 결제방식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국사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한 시기에 바우처 단말기 확보 등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 바우처 단말기 확보 등 결제방식 확보실적을 익년 제공기관 선정 심사기준으로 활용 가능

□ 서비스 매뉴얼 마련 및 제출

- 제공기관은 연령별 이용자 특성별 서비스 제공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요청할 경우 즉시 서비스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시 지정취소 등 조치 가능

③ 제공기관의 의무

□ 해당 사업을 선택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 오·벽지·제공기관 미관리 지역 또는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을 기피할 경우 별도 수당이나 교통비 지급 등 본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본사 단독 해결이 어려운 경우 아동인지협의체에서 서비스 제공 대책 마련

□ 지정기간 내 사업에 지속 참여

- 사업 중도 포기희망 시 포기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보건복지부 통보

□ 보건복지부 지침 준수 및 제공인력에 대한 지침 교육 의무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결제방식 준수(지정된 단말기 구매 및 유지·관리 등) 포함

□ 바우처 관리 매뉴얼, 관련 서류 구비 및 보관 의무

- 바우처 관리 매뉴얼을 모든 지사(지부)에 비치

* 매뉴얼 포함 내용 : 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 요약 제공, 필수 서류 공통 서식, 바우처 결제방식 안내 등

- 지침상 필요서류(서비스 제공계약서, 서비스제공기록지), 결제 관련 서류(바우처 결제 영수증, 본인부담금 납부내역) 구비 및 보관

- 지사(참여기관), 공급인력의 부정행위, 의무이행 해태 등에 대한 책임
- 배상보험·상해보험 가입, 교육훈련 및 주기적 모니터링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구축
- 서비스 제공인력의 최저임금,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준법 의무, 관련 지침 준수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업무 수행에 성실하게 협조

④ 제공인력의 의무

□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 독서지도사, 교사,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 보유자

□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조건

- 제공기관은 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서비스 공급인력 노무관리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서비스 공급인력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기타, 이장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제2장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참고할 것

II 지역개발형 사업



1 사업 개요

① 사업 내용

□ 사업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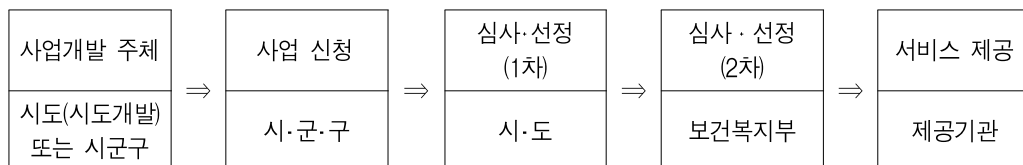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비만아동건강관리, 장애아동렌탈서비스 제외)
(단, 장애인 및 노인 대상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사업수행기관

-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제공기관

□ 사업시행절차

【사업 흐름도】



2 신규사업 개발

① 개발주체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신규사업 개발

② 개발절차

- 지역사회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 파악(1단계)

- 파악시 고려사항

- 주민 수요 및 지자체별 가용 자원, 공급 여력 등 지역여건 등을 고려, 지역 내 이용자 수, 수요량 등 수요 및 서비스 공급 가능 기관 현황
 - * 이용자 참여 저조 가능성 또는 수요 초과시 대책
 -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 및 대책
 - * 공급기관의 덤핑 또는 담합 등에 의한 질 낮은 서비스 제공 가능성 및 대책 등
- 서비스 가격 등을 통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 필요시 간이 설문조사 실시(기존 공급기관, 읍면동 공무원 등 활용)

□ 사업 아이템 발굴 (2단계)

-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

- 활용도구

- 시·도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와 사전 접촉, 적극적인 의견 수렴
- 지역사회서비스혁신협의체 등 신규 인프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민생활 지원 네트워크 등 기 구축된 민관협력 인프라를 적극 활용
-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예시사업, 타 지자체 사업 사례 등 활용
 - * 필요시 주민행정 전산망, 복지행정 정보망, 각종 통계자료, 연구자료, 정책자료 및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참여를 통해 민간의 아이디어 충분히 활용

- 사업계획서 작성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등에 따라 사업계획 작성
 - * 작성 양식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 상세 자료, 기타 첨부 자료
- 사업 계획서는 당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자가 총괄 취합
 - * 단,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 조정 가능
- 시·도 및 시·군·구별 가급적 1개 이상 작성 원칙
 - * 발굴된 사업 아이템이 2개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시·군·구) 또는 사회복지위원회(시·도) 등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부여

□ 사업 선정(3단계)

- 지자체(시·도) 심사: 지자체(시·도)는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예산액을 결정하여 복지부에 제출

【시도 신규사업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개요(안)】

- ① 구성 : 민간위원 및 공무원 포함 5인 이상
- ② 심의기준 : 복지부 제시 선정심의 기준 준용
- ③ 심의사항 : 사업별 지원 우선순위, 예산액

-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계획을 심의 자료로 하여 지역사회서비스 「신규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 우선순위는 최대한 반영하되 필요시 사업 계획 보완 또는 예산 조정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선정’ 가능
- 사업선정 기준
 - 사업아이템의 참신성, 계획의 충실성,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일자리 창출효과, 수요자 효과성, 타사업과의 중복성 등

<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례 예시 >

- ① 사업 수요파악(지자체)
- ② 사업 개발안내 및 신청 접수(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사업 예비검토 등을 거쳐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
- ③ 사업 선정 결과 통보(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 후 1차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 ④ 사업 신청서 제출(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자체 심사결과 선정된 사업 신청서 보건복지부 제출
- ⑤ 사업 선정 결과 통보(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심의위원회 2차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 ⑥ 사업 사업계획(기준정보) 확인(지자체)
사업명, 서비스내용, 제공주기, 이용자 선정기준,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 서비스가격, 정부 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자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주기, 바우처 총 생성횟수 등
*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사항은 사업코드 부여 전 정정 요청(지자체 → 보건복지부)
- ⑦ 사업 제공기관 지정 및 가맹점 등록

제공기관 지정(시도 및 시군구) ⇒ 지정서 교부(시군구) ⇒ 가맹점 등록(제공기관) ⇒ 제공 기관 선정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개발원) ⇒ 시스템 등록(개발원)

지정주체 : 사업 시행 지자체 (시도개발 : 시도, 시군구개발 : 시군구)

지정방법 : 공모에 의해 2개 이상의 기관 지정 원칙

- ⑧ 이용자 선정 및 전송(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서비스 개시 전월 21일(18:00)까지 이용자 전송
- ⑨ 서비스 실시

③ 신규사업 개발시 주요 유의사항

- 사업 목적에의 부합 여부확인(고용 창출 효과, 시장 형성 가능성, 사회투자적 성격 등)
- 후순위 또는 배제되는 사업 분야 해당 여부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아 기 수행 중이거나 지방이양사업
 - 시설 신·증축, 개·보수 등 하드웨어 구축이 주목적인 사업
 - 현행 법령이나 제도와 상충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사업
 -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치하는 사업
 - * (예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맹아원이고, 주된 수요자가 ○○맹아원 학생인 경우와 같이 특정 시설이나 기관의 이용자를 주된 서비스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 정책 실효성이 현저히 낮거나, 자체 시장형성 효과가 미약한 사업
 -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거나 기존 사업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시범적·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 * (기 구조조정 사업) 경로당 소독, 도서대여, 장애인 운전면허, 영어캠프 등 정책실효성이 낮고 기존사업과 유사 중복 우려가 높은 사업
 - * 2011년 말 구조조정 사업
 - 청소·방역 서비스, 집단바우처 사업, 다문화 아동에 대한 단순 학습지원이나 언어발달 서비스, 아동발달검사 서비스 구조조정
 - 체험·멘토링 서비스는 구조조정하거나,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 주도력 향상을 위한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로 재구조화

- 기존 사업 또는 서비스와의 차별성
- 서비스 제공의 절실성·긴급성
- 해당 서비스 공급이 수요 충족에 적절한지 여부 등
 - 특히,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급하여 서비스를 구매토록 할 수 없는 사업은 지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됨에 유의(※ 민간 부문 참여 정도를 평가시 반영)
 - ☞ 【서식 30-1】 붙임 1(지역개발형 사업선정 기준안) 참고

4 신규사업 공모

- 공모기간 및 공모분야
 - (공모기간) 11월~12월 중
 - (공모분야) 구체적 공모분야는 복지부에서 체결하여 통보
- 공모시 제출서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서(☞서식 28), 사업계획 요약서(☞서식 29), 사업계획서(☞서식 30) 상세 자료, 기타 첨부자료

3 10대 유망사회서비스

- 목적
 - 잠재 수요가 크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로서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를 유망사회서비스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
- 내용 : 4대 분야 10대 사업

유 형	서비스명	
아동발달 지원	① 영유아발달지원	② 아동정서발달지원
	③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④ 인터넷 과몰입 아동 청소년 치유
노인 건강생활 지원	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⑥ 장애인·노인 돌봄 여행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⑦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	⑧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건강가정 지원	⑨ 나홀로 아동 가정돌봄	⑩ 정신건강 케어
		- 정신질환자 토달케어 - 자살위험 노인 정신건강 증진

□ 지원방향 : 예산 우선 지원 및 서비스 표준화·매뉴얼 지원

- '11년도 기존사업 지원연장 및 신규 사업 공모 시 10대 유망사회서비스에 중점 지원
-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매뉴얼 통해 서비스의 질 제고

III 10대 유망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구. 아동발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0~6세 ▷ 기타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기타 본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 유아교육기관장,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 : 대학, 비영리법인 등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 2) 제공인력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의 서비스 제공가능 인력기준에 준하는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 2년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조건으로 하는 재활치료 관련 학회·협회 및 단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인정 자격증 목록은 '10년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안내 p.87~91 표 1 참조) -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300시간 이상,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600시간 이상,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1,200시간 이상 * 단 해당 사업 지자체의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11.8)까지 제공인력 변경 기준 적용 유예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제공가능인력 목록(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제공가능인력 목록 별표 참조) 																	
④ 서비스 가격/서비스 제공 기간	중재 서비스 가격 : 월 200천원 (정부 18만원, 본인 2만원) / 48회, 6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 결과 1개 이상의 영역에서 주의(추후검사를 나타내는 영유아, 기타 중재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이 지연되는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기본 서 비 스</td> <td>발달기초영역</td> <td>-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주 2회 (회당 60분)</td> </tr> <tr> <td>언어발달영역</td> <td>-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td> </tr> <tr> <td>초기 인지영역</td> <td>-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td> </tr> <tr> <td>정서·사회성영역</td> <td>-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td> </tr> <tr> <td colspan="2">기타 서비스</td> <td>-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td> <td>- 보고서 : 월 1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서비스 신청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② 2단계 : 조기중재 서비스 및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실시 ③ 3단계 : 매월 해당 아동에 대한 서비스 결과 보고서 발송 및 모니터링 실시 ④ 4단계 : 서비스 종결시 종결 보고서 작성·상담 및 필요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과부 특수교육 등 기타 서비스 연계 의무화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 비 스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주 2회 (회당 60분)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초기 인지영역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기타 서비스		-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 보고서 : 월 1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 비 스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주 2회 (회당 60분)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초기 인지영역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기타 서비스		-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 보고서 : 월 1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															

②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구.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연령 : 만 8세~13세 (지역에 따라 연령 기준 상향 조정 가능) -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우선 지원 (*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의 주요 설립 목적이 클래식 연주·교육 등에 있는 기관으로 2년 이상의 클래식 프로그램 사회공헌 또는 최근 2년간 전문 클래식 공연 실적이 50회 이상인 기관 ② 정서순화 및 클래식 프로그램 연간 교육 매뉴얼 제출이 가능한 기관 ③ 서비스 이용자 수 대비 30% 이상의 제공인력 확보가 가능한 기관 ▷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서프로그램 - 관련학과심리 및 음악·미술 등 예술치료 석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500시간 이상 보유자 ② 클래식프로그램 - 관련 악기 학사 학위 이상 전공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월 20만원 내외 (정부 18만원, 본인 2만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고, 아동·청소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임상사례 제공 ▷ 전문적 정서치료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문제를 예방치유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설계 ▷ 정서치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클래식 음악이론 및 실기수업을 제공하여 제공인력과 참여자의 멘토링 관계 형성을 통하여 음악적 재능 발굴, 스트레스 및 우울증 해소, 학업성취 동기 부여 ▷ 일반 연주회 관람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향상 음악회”를 개최하여 아동·청소년의 자신감 증진 및 성공 경험을 통한 긍정적 자아상 설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본 서비스</td> <td>클래식 이론 및 실기 : 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td> <td>주 1회 (회당 60분)</td> </tr> <tr> <td>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 (소그룹 단위 제공 원칙)</td> <td>주 1회 (회당 60분)</td> </tr> <tr> <td>기타 서비스</td> <td>1. 일반 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2. 향상음악회 참여 (반기별 1회)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3.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 (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4. 참여 아동 합주 (월 1회 이상) 5.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연 1건 이상) 6. 사전·사후 진단 검사 (연 2회)</td> <td></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개인육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정서 및 클래식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클래식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u>통보</u> ⑤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주 1회 (회당 60분)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 (소그룹 단위 제공 원칙)	주 1회 (회당 60분)	기타 서비스	1. 일반 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2. 향상음악회 참여 (반기별 1회)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3.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 (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4. 참여 아동 합주 (월 1회 이상) 5.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연 1건 이상) 6. 사전·사후 진단 검사 (연 2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주 1회 (회당 60분)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 (소그룹 단위 제공 원칙)	주 1회 (회당 60분)										
기타 서비스	1. 일반 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2. 향상음악회 참여 (반기별 1회)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3.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 (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4. 참여 아동 합주 (월 1회 이상) 5.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연 1건 이상) 6. 사전·사후 진단 검사 (연 2회)											

③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 기타 : 문제행동(ADHD)에 대한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소견서, 청소년상담사소견서, 교육기관의 교사 추천서가 있거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추천 의뢰된 아동 등 조기개입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장애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예 : 민간상담센터, 사회복지관, 대학교부설기관 등) ▷ 인력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의 서비스 제공가능 인력기준에 준하는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 2년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조건으로 하는 재활치료 관련 학회·협회 및 단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인정 자격증 목록은 '10년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안내 p.87~91 표1 참조) -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300시간 이상,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600시간 이상,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1,200시간 이상 <p>* 장애아동재활 치료사업의 제공가능 인력기준 : 별표</p>												
④ 서비스 가격/서비스 제공 기간	<p>월 16만원 내외(정부부담70~90%/ 본인부담 10~30%) / 12개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수급자</th> <th>차상위~평균소득50%</th> <th>평균소득 50%초과~100%</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90%</td> <td>80%</td> <td>7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0%</td> <td>20%</td> <td>30%</td> </tr> </tbody> </table>	구분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50%	평균소득 50%초과~100%	정부지원금	90%	80%	70%	본인부담금	10%	20%	30%
구분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50%	평균소득 50%초과~100%										
정부지원금	90%	80%	70%										
본인부담금	10%	20%	30%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5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서비스 (아동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제공)</td> <td> 1. 심리상담 · 문제행동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시 10분 내외로 제공 2.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 놀이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 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td> <td>월4회 이상 (회당 50분내외)</td> </tr> <tr> <td>부가 서비스</td> <td> 1. 심리검사 :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2.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3. 부모훈련 :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td> <td>선택적 제공</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아동의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선정 ②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조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아동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제공)	1. 심리상담 · 문제행동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시 10분 내외로 제공 2.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 놀이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 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월4회 이상 (회당 50분내외)	부가 서비스	1. 심리검사 :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2.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3. 부모훈련 :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선택적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아동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제공)	1. 심리상담 · 문제행동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시 10분 내외로 제공 2.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 놀이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 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월4회 이상 (회당 50분내외)											
부가 서비스	1. 심리검사 :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2.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3. 부모훈련 :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선택적 제공											
⑥ 정신보건센터 연계	정신보건센터에서 연계된 아동에 대하여 예산의 30%범위내에서 우선 선정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 2년 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재활치료 관련 학회·협회 및 단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표 1 참조)

<표 1>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인정 자격증 목록

분야	자격검정기관	자격명칭	자격조건	
언어	한국언어치료 전문가협회	언어치료사	1급	국내외 대학원에서 언어병리학(또는 언어치료학) 석사 취득자로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고 12개월 이상의 임상수련과정 이수 등
			2급	- 국내외 대학교에서 언어병리학(또는 언어치료학)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 자격증 시험 통과 - 2급준 자격증소지자가 임상경력 2년 이상과 고급과정교육 3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로 자격증 시험 통과 등
			2급준	국내외 대학에서 언어치료학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 해당 자격증 시험 통과
미술	대구대 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사	재학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 본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총 14과목을 이수한 자	
	대한임상미술 치료학회	임상미술치료사	관련학사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으로 학회에서 인정하는 이론교육 200시간 이상 이수, 슈퍼비전 20시간 이수, 500시간 이상의 미술치료 임상실습을 마친 후 사례발표, 논문, 시험 통과한자	
		임상미술치료 전문가	학회 정회원, 임상미술치료사(석·박사학위 소지자), 1,000시간 이상의 임상경력자	
	라파미술치료 연구원	미술심리치료사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로 초급 45시간, 중급 78시간, 고급 78시간 수료 후 임상과정(임상사례연구 및 논문)을 통과한 자	
	(사) 한국미술 치료학회	미술치료사	관련학 학사소지자로 740시간 이상의 교육수련(30시간 이상의 임상슈퍼비전 포함) 및 3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한 자, 월례세미나 1회 발표	
		미술치료전문가	미술치료사나 관련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1,000시간 이상의 교육수련(50시간 이상의 임상슈퍼비전 포함) 및 5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 이수해야하며, 미술치료 관련 논문 1편(100%)이상 게재 한 자, 공개 사례발표 1회 발표	
		수련감독미술 치료전문가	미술치료전문가 자격취득 후 3년 경과, 500시간 이상의 미술치료 실시, 100시간이상의 임상슈퍼비전 받아야 하며, 200시간 이상 임상사례 지도감독 해야 함. 공개사례 2회이상 발표한 자로 미술치료관련 논문 2편(200%)이상 게재한 자	
(사)한국미술 심리치료협회*	미술심리치료사	학술대회 및 자격연수 등에 참가하고 본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 등을 거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심리치료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미술심리치료 전문가	미술심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학술대회 및 연례 미술치료행사에서 사례발표 및 논문 1편 게재 등		

분야	자격검정기관	자격명칭	자격조건	
		수련감독미술심리치료전문가	미술심리치료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학술대회 및 연례 미술치료행사에서 사례발표 및 논문 2편 게재 등 * 주 : (사)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의 자격 조건에는 학력 조건이 없는 바, 동 협회의 자격증 소지자라도 전문 학사 이상이어야 함	
	한국사회복지미술치료사협회	사회복지미술치료사	사회복지, 혹은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으로 180시간 연수 및 시험과 임상슈퍼비전을 통한 임상 사례 발표 후 자격 취득	
	(사)한국색채심리치료협회	색채심리치료사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로 색채심리관련 수업을 90시간 이상 이수하고 100시간 이상 임상실습을 거쳐 사례를 제출한 자	
		미술치료사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로 색채심리관련 수업을 135시간 이상 이수하고 100시간 이상 임상실습을 거쳐 사례를 제출한 자	
	(사)한국심성교육개발원	미술치료사	1급	2급 이상의 자격과정을 통과한자로 해당 교육과정(임상실습 30시간을 포함한 150시간) 수료한 후 임상실습과 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한 자
			2급	초대졸 이상 학력을 소지한 자로 해당 교육과정(90시간)을 수료한 후 임상사례과제와 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한 자
	(사)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	임상미술심리사	관련 전공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300시간 이상의 미술치료 연수 및 임상수련을 마치고, 자격 시험에 통과한 자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예술심리치료사, 예술심리치료전문가 등	관련학과 졸업 예정자 이상으로 160시간 이상의 기본연수 이수 후,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해 자격취득 등 (최소 조건임)	
	한국예술치료학회	예술치료사	관련학과 졸업한 전문대 이상 200시간 이수과 300시간 이상 임상실습, 혹은 30시간 이상 임상 슈퍼비전을 받은 자	
	한국예술치료협회	미술치료사	전문학사 이상으로 협회에서 인정하는 12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60시간이상의 임상실습을 마친 자 (최저 조건)	
	(사)한국인간교육원	미술치유상담사	대졸이상으로 300시간 이상 미술치유상담 교육 이수자, 임상 40회기 이상	
	한국임상치유예술학회	명예 예술치료전문가(미술)	박사학위 소지자로 예술치료 분야(전공 미술분야)의 연구,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자격심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명예 예술치료전문가 자격증 수여	
		예술치료전문가(미술)	예술치료 관련 전공 (미술분야)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예술치료분야(미술분야)의 연구 또는 임상에 현저한 실적을 남긴자로서 자격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득한 자로 자격심사위원회 추천을 득한자 등	
		예술치료사 1급 (미술)	예술치료 분야(미술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700시간 이상 임상과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등	
		예술치료사 2급 (미술)	예술치료 분야(미술분야) 및 유관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한국재활심리학회	재활심리사(미술치료)	관련학과 졸업한 학사 이상, 240시간 연수 및 자격취득시험과 자격면접을 통해 자격 취득	
	한국표현미술치료학회	표현미술치료사	전문 학사 이상으로 240시간 이상 연수와 300시간 이상 임상교육 이수 후 취득	

분야	자격검정기관	자격명칭	자격조건	
한국표현예술 심리치료협회	예술심리치료사	전문예술심리 치료사	석사학위 이상, 1급 취득 후 25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 임상감독을 병행한 1350시간 이상의 임상, 사례발표 10시간이상, 60시간이상의 집단임상교육감독 및 30시간 이상의 개별임상감독 이수, 논문 1편 이상 학술지 게재	
		1급	2급 취득 후 110시간이상의 교육이수, 임상감독을 병행한 350시간 이상의 임상, 사례발표 10시간이상 이수, 20시간의 집단임상교육감독 및 20시간의 개별임상감독, 임상 사례논문 제출, 1회 이상의 사례논문 발표	
		2급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로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24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과 300시간의 임상, 10시간 이상의 개별임상교육감독, 사례발표, 특강 등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대한음악치료 학회	음악치료사 1급, 2급	1급	학사이상으로 음악치료사 2급 자격증, 평생교육원 등 음악치료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자 등으로서 45주 1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2급	전문학사 이상 수료자로 30주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사)한국음악 치료학회	음악치료사	음악치료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회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한국음악치료 교육학회	음악치료사	음악치료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회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한세대 일반대학원 음악치료센터	음악치료사	음악치료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자격 시험 검증 절차를 거친 자, 임상실습 1,040시간, 인턴십 1,060시간 수료한 자		
한국음악심리 치료협회	음악치료사	전문가	1급 자격증 소지자로 180시간 교육이수와 임상시간 1500시간, 사례발표 2회 이상	
		1급	석사 이상 소지자로 180시간 교육과 임상시간 1,500시간, 사례발표 1회 이상	
		2급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180시간 교육 이수과 임상시간 500시간 이상	
한국음악치료 임상응용학회	음악치료사	인턴십 1,040시간 이상 수료 후, 음악치료 석사학위 소지자로 학회 자격증 관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자		
한국예술치료 협회	음악치료사	전문학사 이상으로 협회에서 인정하는 12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60시간이상의 임상실습을 마친 자 (최저 조건)		
한국임상치유 예술학회	명예 예술치료 전문가(음악)	박사학위 소지자로 예술치료 분야(전공 음악분야)의 연구,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자격심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명예 예술치료전문가 자격증 수여		
	예술치료전문가 (음악)	예술치료 관련 전공 (음악분야)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예술치료분야(음악분야)의 연구 또는 임상에 현저한 실적을 남긴 자로서 자격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득한 자로 자격심사위원회 추천을 득한자 등		
	예술치료사 1급 (음악)	예술치료 분야(음악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700시간 이상 임상과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등		
	예술치료사 2급 (음악)	예술치료 분야(음악분야) 및 유관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한국음악치료사 협회	음악치료사	전문가	보수과정 수료하고 1200시간 이상의 실 습, 600시간 이상의 세미나 및 연수를 마치고 사례 발표 및 논문을 1편 이상을 학술지에 게재한 자	

분야	자격검정기관	자격명칭	자격조건	
행동 · 놀이 · 심리 운동			2급 (보수)	1급 자격증 소지자, 음악 및 교육학 석사 이상 소지자, 음악 및 교육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실무경험자 중 240시간 이상의 실습, 120시간 이상의 세미나 및 연수를 마치고 사례발표 및 논문을 1편이상 학술지에 게재한 자
			1급	음악치료 및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이론 120시간, 임상실습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수료한 자
	(사)한국정서 행동장애아 교육학회	행동치료사	1급	특수교육과, 행동치료관련 분야 석, 박사 소지자로 240시간 이상의 연수를 수료한 후 자격증 시험 통과
			2급	특수교육과, 행동치료관련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행동치료관련 분야 석, 박사 수료자로 240시간 이상의 연수를 수료한 후 자격증 시험 통과
			3급	전문 학사 및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240시간 이상의 연수를 수료한 후 자격증 시험 통과
	한국놀이치료 학회	놀이치료사 놀이치료전문가 등	놀이치료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이상으로 이수과목 이수 및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한국아동심리 재활학회	놀이치료사 놀이치료전문가 등	놀이치료 관련학과 전문 학사 학위 취득자 이상	
	한국심리운동 학회	심리운동사(1급) 심리운동전문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한국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	놀이치료전문가	본 학회의 회원인 자로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1급 자격을 가진 후 5년 이상의 상담 현장에 종사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한 24학점(연장교육)을 추가로 이수한 자 중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명시된 과목을 이수하고 임상 경력 4년 이상인 자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지도 아래 총 150시간 이상(개인지도 혹은 교육분석 60시간, 집단지도 90시간)의 지도감독을 받은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놀이치료사	1급	본 학회의 회원인 자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현장에 종사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한 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자 중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관한 규정한 의거한 18학점을 이수하고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가의 지도 아래 총 100시간 이상 (개인지도 혹은 교육 분석 40시간, 집단지도 60시간)의 지도감독을 받은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한국 감각운동 교육치료협회	감각운동교육 치료사	1급	2급 감각운동교육치료사 자격을 갖추고 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에서 3회 이상 사례 발표를 하고 임상 workshop(캠프)에 3회 이상의 과정을 이수 후 본 협회에서 하는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해 자격취득을 마친 자
			2급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로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24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 후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심사를 통해 자격취득을 마친 자
(사) 한국운동 재활협회*	운동재활전문 지도사	1급	건강·복지(특수)관련학과 석사 이상이나 현장경력 5년 이상인 자로 300시간의 연수과정(이론, 실기)과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	

분야	자격검정기관	자격명칭	자격조건	
			2급	건강·복지(특수)관련 (전문)학사나 현장경력 3년 이상인 자로 200시간의 연수과정(이론,실기)과 현장학습을 이수한 자
		* 주 : (사)한국운동재활협회의 자격 조건에는 학력이 필수 항목이 아닌 바, 동 협회의 자격증 소지자라도 전문 학사 이상이어야 함		
한국영유아· 아동정신건강 학회	놀이치료전문가	놀이치료 및 상담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60시간 이상 연수와 자격시험 통과 후 500시간 이상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1급	놀이치료 및 상담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60시간 이상 연수와 자격시험 통과 후 150시간 이상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놀이치료사	2급	놀이치료 및 상담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60시간 이상 연수를 수료한 후 자격시험 통과한 자	
한국심리운동 협회	심리운동사	전문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심리운동사 1급을 취득하여 5년 이상의 심리운동 분야 경험과 250시간의 전문가과정일 이수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	
		1급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심리운동사 2급을 취득하여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현장경험과 영역별 심화과정 120시간, 협회연수 및 세미나 3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	
		2급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기본단계 200시간, 협회연수 및 세미나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	

※ 추후 상기 자격 외에도 위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검토하여 추가

-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관련 학과(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전공자로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300시간 이상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600시간 이상
 - 전문 학사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1,200시간 이상
- 언어, 미술, 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분야 외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 등에 준하여 해당 제공기관에서 판단하여 채용
- 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서(해당 기관 서식 활용)와 관련 자격증이나 학위증(자격증 없이 석사 학위 이상인 경우) 등 제출
 - 자격증 제출 시 경력, 학력, 교육시간, 자격증 검정 기관 등의 내용도 함께 제출

4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구. 인터넷게임중독아동치료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목적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② 서비스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아동 ▷ 기타 : 인터넷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한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으로 슈퍼바이저급의 인력이 재직하거나 슈퍼바이저가 월 1회 또는 상담건의 10% 이상에 대해 슈퍼비전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기관 ▷ 인력 : 청소년상담사, 중독상담사 등 상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상담심리 전공자 등 석사 학위보유자 중 인터넷중독 관련 상담과정(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서울시 I Wll 센터)을 이수한 사람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 월 20만원 내외(정부 18만원, 본인 2만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라 기본서비스를 표준 프로세스에 준거하여 제공하되 이용자의 욕구를 판단하여 일부 프로그램의 제공 빈도 조정 가능 ▷ 인터넷 순기능 활용 교육, 서비스 효과성 검사 등 기타서비스 추가 제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기본 서비스</td> <td>1. 심리검사 -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인터넷중독 위험정도를 진단</td> <td>1회</td> </tr> <tr> <td>2. 치료 설계를 위한 워크숍(전일 프로그램) - 부모 동반 워크숍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 설계</td> <td>1회 (1일, 9시간)</td> </tr> <tr> <td>3. 심리상담 - 개인상담, 집단상담(4인 이내) 병행 실시 * 은둔형 청소년 등 시설 내방이 어려운 이용자는 가정 방문 상담시</td> <td>주1회 (회당 50분, 6개월)</td> </tr> <tr> <td>4.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 (부모, 자녀 동반 캠프)</td> <td>1회 (1박2일)</td> </tr> <tr> <td>5. 인터넷·게임 대체활동 - 리더쉽 교육, 학습코칭, 야회활동 등 인터넷 대체활동 교육 - 자기 표현을 위한 공연 참여 및 기획 활동</td> <td>주1회 (3개월)</td> </tr> <tr> <td>6. 자기주도를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 - 동기부여, 생활습관 개선 등 사후관리</td> <td>주1회 (3개월)</td> </tr> <tr> <td>7. 부모 상담 및 교육</td> <td>월 1회</td> </tr> <tr> <td>부가 서비스</td> <td>1. 인터넷 순기능 활용 교육(월1회) 2.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개선효과에 대한 검사 (2회)</td> <td></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 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수준 및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선정 ②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 조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1. 심리검사 -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인터넷중독 위험정도를 진단	1회	2. 치료 설계를 위한 워크숍(전일 프로그램) - 부모 동반 워크숍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 설계	1회 (1일, 9시간)	3. 심리상담 - 개인상담, 집단상담(4인 이내) 병행 실시 * 은둔형 청소년 등 시설 내방이 어려운 이용자는 가정 방문 상담시	주1회 (회당 50분, 6개월)	4.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 (부모, 자녀 동반 캠프)	1회 (1박2일)	5. 인터넷·게임 대체활동 - 리더쉽 교육, 학습코칭, 야회활동 등 인터넷 대체활동 교육 - 자기 표현을 위한 공연 참여 및 기획 활동	주1회 (3개월)	6. 자기주도를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 - 동기부여, 생활습관 개선 등 사후관리	주1회 (3개월)	7.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부가 서비스	1. 인터넷 순기능 활용 교육(월1회) 2.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개선효과에 대한 검사 (2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1. 심리검사 -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인터넷중독 위험정도를 진단	1회																				
	2. 치료 설계를 위한 워크숍(전일 프로그램) - 부모 동반 워크숍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 설계	1회 (1일, 9시간)																				
	3. 심리상담 - 개인상담, 집단상담(4인 이내) 병행 실시 * 은둔형 청소년 등 시설 내방이 어려운 이용자는 가정 방문 상담시	주1회 (회당 50분, 6개월)																				
	4.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 (부모, 자녀 동반 캠프)	1회 (1박2일)																				
	5. 인터넷·게임 대체활동 - 리더쉽 교육, 학습코칭, 야회활동 등 인터넷 대체활동 교육 - 자기 표현을 위한 공연 참여 및 기획 활동	주1회 (3개월)																				
	6. 자기주도를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 - 동기부여, 생활습관 개선 등 사후관리	주1회 (3개월)																				
	7.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부가 서비스	1. 인터넷 순기능 활용 교육(월1회) 2.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개선효과에 대한 검사 (2회)																					

수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연령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p>※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p>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인력 : 운동처방사,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소유자 등 						
④ 서비스 가격/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운동 위주 서비스 : 월 12만원 내외(정부 11만원, 본인 1만원) / 12개월 ▷ 기타 체조, 에어로빅 등 중심 : 월 7만원 내외(정부 6만원, 본인1만원) 12개월 <p>※ 성장촉진지역, 대중교통의 이용이 제한되는 도서지역은 1만원 내외의 조정 가능, 기존 사업 중 수중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사업은 월 14만원(정부 13만원, 본인 1만원) 내에서 조정, 단 여가·정서지원 활동은 정부지원 제외 (본인부담 가능)</p>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7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제공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기본 서비스</td> <td> <p>1. 건강상태 점검 (분기1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담: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p>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주 3회, 1회 9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주 3회 (회당 90분)</td> </tr> </tbody> </table> <p>※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p> <p>2)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② 2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③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④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⑤ 5단계 : 사후관리(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 횟수	기본 서비스	<p>1. 건강상태 점검 (분기1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담: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p>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주 3회, 1회 9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주 3회 (회당 90분)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 횟수					
기본 서비스	<p>1. 건강상태 점검 (분기1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담: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p>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주 3회, 1회 9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주 3회 (회당 90분)					
⑥ 의료급여 사례 관리 연계	▷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와 대상자에게 <u>통보</u>						

숙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 제약 및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 가정 ▷ 연령 등 :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및 법인 ▷ 인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관광 관련 업무 유경험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1~2급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장기요양보험 1~3등급자 2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장애 3급이하 및 상이등급 4~5급, 장기요양보험 4~6등급자 5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상이등급 6~7급, 만 65세 이상 노인 10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차량 1대당 간호(조무)사 1명 의무 탑승(전문돌봄인력과 별도) <p>* 상기 분류는 전문돌봄인력 배정을 위해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장애등급과 상이등급이 상호 유사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p>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제공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박2일 프로그램을 기본형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되, 당일 프로그램은 별도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여 지원, 2박3일 프로그램은 추가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부과(정부지원금 동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50% 감면 ▷ 1등급 : 장애등급 1~2급 판정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보험 1~3등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0천원(정부지원금 155천원, 본인 25천원) / 연 1회 ▷ 2등급 : 장애등급 3급 이하 및 상이등급 4~5급 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4~6등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5천원(정부지원금 145천원, 본인 25천원) / 연 1회 ▷ 3등급 : 만65세 이상 노인 및 상이등급 6~7급 국가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천원(정부지원금 125천원, 본인 25천원) / 연 1회 ▷ 당일(1~3등급) : 74천원 (정부지원금 62천원, 본인 12천원) / 연 1회 * 상기 분류는 전문인력 배치 등 정부지원금 차등에 따른 분류로 등급 내 장애등급과 상이등급간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p>1)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공 ○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이 동반하는 여행서비스 제공 ○ 이용자 욕구해소 및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6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5%;">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서비스</td> <td> <p>1.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별 맞춤 프로그램(고령/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 전문 차량 및 전문 도우미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서비스 제공 기준 · 이용자중 1등급은 총 사업량의 5% 이상, 2등급은 25% 이상으로 필히 구성 ·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 차량은 이용자의 승차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인승 차량 <p>2. 특화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프로그램 : 이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타악 퍼포먼스, 미술, 노래, 연주 등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 보호자와 안심통화 등 </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 1회 (1박2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가 서비스 (대체 서비스)</td> <td> <p>1. 당일 또는 2박3일 돌봄여행서비스 : 1박2일이 아닌 당일/2박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p> </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 1회(당일 또는 2박3일)</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p>1.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별 맞춤 프로그램(고령/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 전문 차량 및 전문 도우미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서비스 제공 기준 · 이용자중 1등급은 총 사업량의 5% 이상, 2등급은 25% 이상으로 필히 구성 ·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 차량은 이용자의 승차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인승 차량 <p>2. 특화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프로그램 : 이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타악 퍼포먼스, 미술, 노래, 연주 등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 보호자와 안심통화 등 	연 1회 (1박2일)	부가 서비스 (대체 서비스)	<p>1. 당일 또는 2박3일 돌봄여행서비스 : 1박2일이 아닌 당일/2박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p>	연 1회(당일 또는 2박3일)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p>1.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별 맞춤 프로그램(고령/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 전문 차량 및 전문 도우미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서비스 제공 기준 · 이용자중 1등급은 총 사업량의 5% 이상, 2등급은 25% 이상으로 필히 구성 ·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 차량은 이용자의 승차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인승 차량 <p>2. 특화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프로그램 : 이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타악 퍼포먼스, 미술, 노래, 연주 등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 보호자와 안심통화 등 	연 1회 (1박2일)								
부가 서비스 (대체 서비스)	<p>1. 당일 또는 2박3일 돌봄여행서비스 : 1박2일이 아닌 당일/2박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p>	연 1회(당일 또는 2박3일)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여행서비스 프로그램 구성 ○ 2단계 : 여행서비스 이용자 선정 ○ 3단계 : 여행서비스 실시 ○ 4단계 : 여행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 										

⑦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장애아동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 장애아동의 특수 휠체어 구입 및 리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특수장애아동의 정상적 신체발달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 소득기준 없음 (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연령 : 만19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u>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 등</u>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제공인력 : 장애인활동보조, 요양보호사, 기기 리폼 관련 자격자						
④ 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 월 10만원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상이) / 12개월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이하 : 정부지원금 9만원, 본인부담금 1만원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120%이하 : 정부지원금 8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초과 : 정부지원금 6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휠체어 렌탈서비스</td> <td>1. 맞춤형휠체어 및 자세유지도구 렌탈·리폼 서비스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렌탈과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서비스 제공</td> <td>렌탈 12개월 (최대 2회) 리폼 연 3회</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신청된 가구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요구 조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휠체어 렌탈서비스	1. 맞춤형휠체어 및 자세유지도구 렌탈·리폼 서비스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렌탈과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서비스 제공	렌탈 12개월 (최대 2회) 리폼 연 3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휠체어 렌탈서비스	1. 맞춤형휠체어 및 자세유지도구 렌탈·리폼 서비스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렌탈과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서비스 제공	렌탈 12개월 (최대 2회) 리폼 연 3회					

8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연령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선정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개설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에서 안마 업무 수행 가능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개설자 준수사항(특히 제5호, 퇴폐·음란·도박 관련사항) 위반사례 및 우려가 없는 기관에 한정 ▷ 인력 : 안마사 자격을 갖춘 안마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4회 제공) 월 136천원 내외 (정부 124천원, 본인 12천원) / 10개월 ▷ (월2회 제공) 월 68천원 내외(정부 60천원, 본인 8천원) / 10개월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 월 4회(회당 1시간)</p> <p>○ 월 4회(회당 1시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3">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노인</td> <td>· 전신안마 · 발마사지</td> <td>· 마사지 · 운동요법</td> <td>· 지압 · 자극요법</td> <td rowspan="3">주 1회 (회당 1시간)</td> </tr> <tr> <td>장애인</td> <td>· 전신안마 · 발마사지 · 자극요법</td> <td>· 마사지 · 운동요법</td> <td>· 지압 · 체형교정</td> </tr> <tr> <td>기타 질환자 (특화사업)</td> <td>· 전신안마 · 발마사지 · 자극요법</td> <td>· 마사지 · 운동요법</td> <td>· 지압 · 체형교정</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요구 조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노인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자극요법	주 1회 (회당 1시간)	장애인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자극요법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체형교정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자극요법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체형교정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노인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자극요법	주 1회 (회당 1시간)															
장애인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자극요법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체형교정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자극요법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체형교정																
⑥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으로 선정 하고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순 나홀로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 양육취약 가정의 나홀로 아동에 대한 돌봄을 통해 범죄 발생 예방 및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연령 : 만 7세~만12세의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 일정시간 보호자가 없는 나홀로아동 (만7세 미만이지만, 초등학생인 경우 서비스 대상에 포함)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아동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 인력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사회복지사, 독서지도사, 방과후지도사 등 아동 관련 자격증소지자																																
④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 기간	▷ 시간당 3천원~6천원(정부지원금 2천원, 본인부담금 4천원) ※ 시간당 단가를 기준으로 지자체별 일 제공시간 설정(6시간 이내)에 따른 서비스가격 산정 가능, 제공시간에 따른 제공인력 4대 보험 등은 관련법령의 기준내용 준수 (예. A시는 주5일, 일3시간 1:1 돌봄서비스로 설정 : 월60시간 서비스제공으로 서비스가격은 6천원×주5일×일 3시간×4주 = 360천원(정부 120천원, 본인 240천원),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교사와 아동의 비율)</th> <th>구분</th> <th>서비스 가격</th> <th>정부지원금</th> <th>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 : 1</td> <td>시간당 단가</td> <td>시간당 6천원</td> <td>2천원</td> <td>4천원</td> </tr> <tr> <td>(예) 주5일, 일 6시간설정시</td> <td>월 720천원</td> <td>월 240천원</td> <td>월 480천원</td> </tr> <tr> <td rowspan="2">1 : 2</td> <td>시간당 단가</td> <td>시간당 4천원</td> <td>1천5백원</td> <td>2천5백원</td> </tr> <tr> <td>(예) 주5일, 일 6시간설정시</td> <td>월 480천원</td> <td>월 180천원</td> <td>월 300천원</td> </tr> <tr> <td rowspan="2">1 : 3</td> <td>시간당 단가</td> <td>시간당 3천원</td> <td>1천원</td> <td>2천원</td> </tr> <tr> <td>(예) 주5일, 일 6시간설정시</td> <td>월 360천원</td> <td>월 120천원</td> <td>월 240천원</td> </tr> </tbody> </table>	유형(교사와 아동의 비율)	구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 : 1	시간당 단가	시간당 6천원	2천원	4천원	(예) 주5일, 일 6시간설정시	월 720천원	월 240천원	월 480천원	1 : 2	시간당 단가	시간당 4천원	1천5백원	2천5백원	(예) 주5일, 일 6시간설정시	월 480천원	월 180천원	월 300천원	1 : 3	시간당 단가	시간당 3천원	1천원	2천원	(예) 주5일, 일 6시간설정시	월 360천원	월 120천원	월 240천원
	유형(교사와 아동의 비율)	구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 : 1	시간당 단가	시간당 6천원	2천원	4천원																												
		(예) 주5일, 일 6시간설정시	월 720천원	월 240천원	월 480천원																												
1 : 2	시간당 단가	시간당 4천원	1천5백원	2천5백원																													
	(예) 주5일, 일 6시간설정시	월 480천원	월 180천원	월 300천원																													
1 : 3	시간당 단가	시간당 3천원	1천원	2천원																													
	(예) 주5일, 일 6시간설정시	월 360천원	월 120천원	월 240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50% 감면(감면액은 정부지원금에 포함)																																	
1)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교사가 1명~3명 이내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및 교육 * 1:2, 1:3돌봄의 경우, 서비스 대상 아동 간 협의에 따라 서비스 제공장소(가정)를 정해야 함 ▷ 아동 연령에 따른 기초돌봄 서비스, 수준별, 개별 욕구에 따른 교육서비스 제공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본서비스</td> <td>안전등·하교(원) 지원 ▷ 돌봄교사 동행 등하교(원)</td> <td rowspan="3">주 5일, 1일 6시간 - 이용시간 별도 설계 가능 - 월정액은 20일 기준으로 부과</td> </tr> <tr> <td>일상생활지원 ▷ 연령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지도, 식습관지도(간식제공, 식사제공)</td> </tr> <tr> <td>방과후 학습지원 ▷ 학습 및 인지 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숙제지도, 독서지도</td> </tr> <tr> <td rowspan="3">부가서비스</td> <td>부모코칭서비스 ▷ 부모가 가진 고민과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부모 스스로가 찾아가도록 돕는 양육코칭서비스</td> <td rowspan="3">선택적 제공</td> </tr> <tr> <td>엄마랑 나랑 ▷ 신체, 음악, 미술, 놀이를 통한 아동과 부모 상호작용 촉진 프로그램</td> </tr> <tr> <td>Family Book Day ▷ 가족이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아동, 가족 성장 프로그램</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안전등·하교(원) 지원 ▷ 돌봄교사 동행 등하교(원)	주 5일, 1일 6시간 - 이용시간 별도 설계 가능 - 월정액은 20일 기준으로 부과	일상생활지원 ▷ 연령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지도, 식습관지도(간식제공, 식사제공)	방과후 학습지원 ▷ 학습 및 인지 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숙제지도, 독서지도	부가서비스	부모코칭서비스 ▷ 부모가 가진 고민과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부모 스스로가 찾아가도록 돕는 양육코칭서비스	선택적 제공	엄마랑 나랑 ▷ 신체, 음악, 미술, 놀이를 통한 아동과 부모 상호작용 촉진 프로그램	Family Book Day ▷ 가족이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아동, 가족 성장 프로그램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안전등·하교(원) 지원 ▷ 돌봄교사 동행 등하교(원)	주 5일, 1일 6시간 - 이용시간 별도 설계 가능 - 월정액은 20일 기준으로 부과																														
		일상생활지원 ▷ 연령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지도, 식습관지도(간식제공, 식사제공)																															
		방과후 학습지원 ▷ 학습 및 인지 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숙제지도, 독서지도																															
부가서비스	부모코칭서비스 ▷ 부모가 가진 고민과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부모 스스로가 찾아가도록 돕는 양육코칭서비스	선택적 제공																															
	엄마랑 나랑 ▷ 신체, 음악, 미술, 놀이를 통한 아동과 부모 상호작용 촉진 프로그램																																
	Family Book Day ▷ 가족이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아동, 가족 성장 프로그램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신청-상담(사회복지사 상담으로 개별육구 파악), 제공계약서 제공																																	
② 2단계 : 개인육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계획서 수립(교사매칭)																																	
③ 3단계 : 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모니터링-결과피드백, 서비스 재조정 후 지속실시																																	
⑤ 5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조사																																	

10 정신질환자 토달케어 서비스 표준안

항목	내 용									
① 목적	▷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단, 정신장애인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u>정신과 병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제외</u>)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인력 :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례관리자 자격증 보유자 * <u>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이상 채용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월 1회 지도 점검 및 교육</u>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 월 20만원 내외 (정부 18만원 / 본인 2만원~4만원) / 12개월 * 서비스 가격은 월 20만원 내외로 설정하고 본인부담금은 일반 20%, 수급자 10%로 조정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6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기본서비스 (질환의 증상을 고려하여 선택제공)</td> <td> 1. 초기 상담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 사회 자원 등 점검 2.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관리(약물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4.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td> <td>월4회 이상 (회당 60분 내외)</td> </tr> <tr> <td>부가서비스</td> <td>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td> <td>선택적 제공</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질환의 증상을 고려하여 선택제공)	1. 초기 상담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 사회 자원 등 점검 2.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관리(약물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4.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월4회 이상 (회당 60분 내외)	부가서비스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선택적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질환의 증상을 고려하여 선택제공)	1. 초기 상담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 사회 자원 등 점검 2.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관리(약물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4.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월4회 이상 (회당 60분 내외)								
부가서비스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증상, 기능에 대한 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서비스의 구체적 계획 수립 ② 2단계 : 개인별 증상이나 기능의 수준에 따라 1~3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 ③ 3단계 : 이용자의 취업, 사회관계망, 입원일수,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성과를 측정함										
⑥ 정신보건 센터와 연계	▷ 정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정신보건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									

※ 자살 고위험군(노인) 건강증진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 자살 고위험군 노인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초노령연금 수급이용자 또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로써 만65세 이상 ▷ 기준 : 노인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현 정신과 병원 입원자는 제외)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지관 및 민간기관 - 내부 또는 외부에 수퍼바이저를 두어 수행인력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인력 ① 자격요건 - 사정평가요원 :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자살예방상담교육 이수자로서 자살예방사업 수행 3년 이상 경력자) - 사례관리요원 : 사회복지사, 자살예방상담교육 이수자(예: AIR 교육 20시간, QPR 과정 20시간) 단, 사업은 먼저 시작하고 서비스 제공 이전에 교육 이수 가능 ② 인력배치 기준 - 사정평가요원은 상근으로 반드시 1명 이상 배치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 월 16만원 내외 (정부 15만원 / 본인 1만원) / 12개월 * 본인부담금은 필요시 ±50%까지 조정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p>▷ 이용자의 자살위험성의 정도와 기능수준,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월 10회 이상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기본서비스</td> <td> 1.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 이용자의 기능 수준,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2. 사례 관리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월 4회 이상 반드시 대면상담 실시 -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방법 : 대면상담 및 전화관리, 단 대면상담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제외 3.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집단상담 또는 서비스프로그램(건강체크, 무료급식, 운동지도 등) 연계 </td> <td>월10회 이상 (회당 60분 내외)</td> </tr> <tr> <td>부가서비스</td> <td>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능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 활동 제공 </td> <td>선택적 제공</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p>① 1단계 : 등록, 상담, 선별검사 ② 2단계 : 전문상담 ③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④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⑤ 5단계 : 사후관리(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p>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 이용자의 기능 수준,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2. 사례 관리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월 4회 이상 반드시 대면상담 실시 -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방법 : 대면상담 및 전화관리, 단 대면상담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제외 3.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집단상담 또는 서비스프로그램(건강체크, 무료급식, 운동지도 등) 연계	월10회 이상 (회당 60분 내외)	부가서비스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능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 활동 제공	선택적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 이용자의 기능 수준,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2. 사례 관리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월 4회 이상 반드시 대면상담 실시 -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방법 : 대면상담 및 전화관리, 단 대면상담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제외 3.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집단상담 또는 서비스프로그램(건강체크, 무료급식, 운동지도 등) 연계	월10회 이상 (회당 60분 내외)								
부가서비스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능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 활동 제공	선택적 제공								

IV 기타 표준화 모델(10개 유형)



※ 현재 시행중인 사업의 사업내용변경 및 신규사업개발을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향후 모델 수정 후 각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는 반드시 표준안에 따라 실시

① 저소득층 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분야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학습체험의 기회제공을 통해 학습 역량 및 아동의 미래비전 형성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 우선지원 ▷ 연령 : 만8세에서 13세 이하의 자녀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인력 : 인문학, 관광학, 아동청년학, 자연과학, 사회복지전공자 등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월 10만원 내외 (정부 9만원, 본인 1만원) / 8개월 * 회당 결재원칙 적용: 월 지원액 내에서 회당 서비스 가격을 산정하되(지자체가 승인), 서비스 개시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할 것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교과과정에 나오는 주요시설 및 다양한 인물과의 만남을 통한 아동의 학습역량 향상 및 아동의 미래비전 형성 지원 ○ 필요시 월 2~3회 서비스를 월 1회 1박 2일 캠프체험서비스로도 제공 가능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7 혼합 또는 택일)	1. 문화, 예술 체험서비스 : 문화, 예술 영역 관련 교육, 실습, 견학 체험 등 2. 과학체험서비스 : 과학기술에 대한 견학, 모형조립, 제작, 관찰, 과학 실험 체험 등 3. 역사체험서비스 : 역사박물관, 유적지 견학, 체험 등 4. 환경체험서비스 : 환경 체험 갯벌탐사, 답사 체험 등 5. 사회체험서비스 : 사회문제 인식 형성을 위한 견학, 역할극, 캠페인 체험 등 6. 농업체험서비스 : 지역 특정 농산물이나 작업 실습, 실습, 관찰학습 체험 등 7. 맞춤형체험서비스 : 이용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 체험 서비스	월 2~3회 (회당6시간)
부가 서비스 (기본서비스대체서비스)	1. 캠프서비스 : 당일이 아닌 1박 2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	월 1회 (회당12시간)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된 가구의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재육구조사 * 체험활동 참여결과 부모에게 통보			

②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연령 : 만 7세~15세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리더십/자기주도학습/라이프코칭/진로코칭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전형성 기본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사 - 관련학과(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전공자로서 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 코칭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가과정 이수자 ※ 단, 2011년 이전 체험·멘토링 사업 참여자 및 농·어촌 제공인력은 30시간의 준비교육 이수자도 참여 가능 ② 체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 문화체험지도자 양성과정 이수자 또는 관련 학위 소지자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③ 학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관련 전공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이해를 위한 준비교육 이수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140천원 이내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정부 126천원, 본인 14천원 - 차상위 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정부 112천원, 본인 28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정부 98천원, 본인 42천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한정, 단순 학습지도는 초기 3개월만 제한적으로만 실시 ▷ 학습모듈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서비스 내용 및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본서비스</td> <td>아래 ①, ②,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td> </tr> <tr> <td>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 서비스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5~1:12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td> </tr> <tr> <td></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서비스	아래 ①, ②,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 서비스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5~1:12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서비스	아래 ①, ②,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 서비스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5~1:12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항목	내 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16 432 528 488">구분</th> <th data-bbox="528 432 1323 488">서비스 내용 및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16 488 528 1182"></td> <td data-bbox="528 488 1323 1182"> <p>② <u>체험통합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u>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학습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u> ▷ 서비스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형성 기본 유형 2개월 6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초기 3개월은 학습모듈로 실시 가능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 집단규모 1:5~1:12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형성 기본 유형 월 3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체험 월 1회 (회당 480분) - 초기 3개월 학습모듈을 결합해 실시하는 경우(집단규모 1: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모듈 2개월간 12회 (회당 90분, 1주 2회씩 실시)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p>③ <u>학습모듈 (초기 3개월만 실시 가능, 이후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결합한 체험통합형으로 실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u>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u> ▷ 서비스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4~1:6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td> </tr> <tr> <td data-bbox="416 1182 528 1227">부가서비스</td> <td data-bbox="528 1182 1323 1227">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p>② <u>체험통합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u>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학습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u> ▷ 서비스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형성 기본 유형 2개월 6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초기 3개월은 학습모듈로 실시 가능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 집단규모 1:5~1:12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형성 기본 유형 월 3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체험 월 1회 (회당 480분) - 초기 3개월 학습모듈을 결합해 실시하는 경우(집단규모 1: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모듈 2개월간 12회 (회당 90분, 1주 2회씩 실시)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p>③ <u>학습모듈 (초기 3개월만 실시 가능, 이후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결합한 체험통합형으로 실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u>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u> ▷ 서비스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4~1:6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부가서비스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p>② <u>체험통합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u>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학습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u> ▷ 서비스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형성 기본 유형 2개월 6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초기 3개월은 학습모듈로 실시 가능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 집단규모 1:5~1:12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형성 기본 유형 월 3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체험 월 1회 (회당 480분) - 초기 3개월 학습모듈을 결합해 실시하는 경우(집단규모 1: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모듈 2개월간 12회 (회당 90분, 1주 2회씩 실시)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p>③ <u>학습모듈 (초기 3개월만 실시 가능, 이후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결합한 체험통합형으로 실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u>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u> ▷ 서비스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4~1:6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부가서비스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p>2) <u>서비스 제공절차</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u>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u> ② 2단계 : <u>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육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u> ③ 3단계 : <u>육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u> ④ 4단계 : <u>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u> ⑤ 5단계 : <u>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u> ⑥ 6단계 : <u>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u> 						

③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부모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한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통해 언어능력 향상 및 기타 서비스를 통해 자존감 및 사회성 향상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 연령 : 만 3세~12세의 다문화가정의 아동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인력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한국어전공자, 한국어 보조 교사 수료자, 독서지도사 등 아동관련 자격증소지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월 12만원 내외 (정부 11만원, 본인 1만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우리말 배우기, 일상생활 지원, 학습지원, 정서지원 서비스로 구분됨 ○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은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유아기본형(언어중심형), 유아기본형(일상생활중심형) 아동기본형(언어중심형), 아동기본형(일상생활중심형) 아동확대형(토달서비스형)으로 분류되어 제공. ○ 이용자는 이 중 5가지 유형의 서비스 중 1가지를 선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6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우리말 배우기</td> <td>기초 한글교육 그림책을 통한 이야기 학습 지역 공공도서관 방문 책 읽어주기 소그룹 게임을 통한 한글학습 프로그램 등</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주 3회 (회당 50분 (만5세이상), 회당 30분 (만 3세~만 4세))</td> </tr> <tr> <td>일상생활 서비스</td> <td>또래관계 상담, 일상생활 상담 등 기본 생활습관 교육 (청결, 질서, 식사예절, 인사예절, 의복예절 등) 기타 필요 서비스 연계</td> </tr> <tr> <td>학습지원 서비스</td> <td>숙제 관리 학교 수업관리 부모 교육 관련 정보제공</td> </tr> <tr> <td>정서 지원 서비스</td> <td>다양한 나라의 전래놀이 문화 체험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현장방문 악기 또는 미술 학습 (타악기, 난타, 스케치 등)</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신청된 가구의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요구 조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우리말 배우기	기초 한글교육 그림책을 통한 이야기 학습 지역 공공도서관 방문 책 읽어주기 소그룹 게임을 통한 한글학습 프로그램 등	주 3회 (회당 50분 (만5세이상), 회당 30분 (만 3세~만 4세))	일상생활 서비스	또래관계 상담, 일상생활 상담 등 기본 생활습관 교육 (청결, 질서, 식사예절, 인사예절, 의복예절 등) 기타 필요 서비스 연계	학습지원 서비스	숙제 관리 학교 수업관리 부모 교육 관련 정보제공	정서 지원 서비스	다양한 나라의 전래놀이 문화 체험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현장방문 악기 또는 미술 학습 (타악기, 난타, 스케치 등)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우리말 배우기	기초 한글교육 그림책을 통한 이야기 학습 지역 공공도서관 방문 책 읽어주기 소그룹 게임을 통한 한글학습 프로그램 등	주 3회 (회당 50분 (만5세이상), 회당 30분 (만 3세~만 4세))											
일상생활 서비스	또래관계 상담, 일상생활 상담 등 기본 생활습관 교육 (청결, 질서, 식사예절, 인사예절, 의복예절 등) 기타 필요 서비스 연계												
학습지원 서비스	숙제 관리 학교 수업관리 부모 교육 관련 정보제공												
정서 지원 서비스	다양한 나라의 전래놀이 문화 체험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현장방문 악기 또는 미술 학습 (타악기, 난타, 스케치 등)												

④ 저소득층 아동돌봄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가정의 기초돌봄이 취약한 아동들에게 건강, 학습, 정서 등의 일상생활관리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활동 지원 및 아동 정상적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 연령 : 만 5~15세 이하 아동가구의 부모, 자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인력 : 사회복지, 교육, 심리 전공 이수자로 코칭훈련을 받은 30세 이상 또는 전문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월 24만원 내외 (정부 20만원, 본인 4만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돌봄 서비스로 소년소녀가장, 맞벌이,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 등 아이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식사 챙기기 등 기초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 토요일에 출근하여 아동을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을 대신하여 놀토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가정내 돌봄 및 외출 동행 <p>* 유형A : 라이프 코칭 + 기초돌봄 ** 유형B : 라이프 코칭 + 놀토서비스</p>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신청된 가구의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조사

⑤ 부모학교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가족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가족관계 증진 등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 연령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예비부모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인력 : 사회복지 및 가정학 전임강사 이상자 및 가족치료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 해당분야 전문가 						
④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20만원 내외 (정부 17만원, 본인 3만원) / 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및 예비부모의 가족 안에서의 역할정립 및 역할훈련에 중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6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5%;">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서비스</td> <td> 1. 성격유형검사 서비스 : 초기 가족 상담 서비스와 성격유형 검사(MBTI)등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분류된 유형에 따라 자기 및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1회기) 2. 가족역할정립서비스 : 가족구성원간의 역할을 정립을 위해 결혼과 자아상의 치유,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 이해에 대한 교육서비스(3회기) 3. 가족공동체프로그램 : 가족 관계향상을 위해 참여자 가족을 초대하여 전문 레크리에이션 체험프로그램(1회기) 4. 부모역할훈련 : 부모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해 자녀이해, 부모들의 코칭기법, 지역사회에서의 가족역할에 관한 전문 교육서비스(3회기) </td> <td style="text-align: center;"> 월 4회 (총 8회기/ 회당 120분) </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초기상담(서비스 욕구 조사) ○ 2단계 : 성격유형검사(MBTI 검사 등) : 서비스이용자의 성격유형검사 ○ 3단계 : 서비스 제공내용 확정(가족 의사소통, 가족참여 프로그램, 부모 관계향상) ○ 4단계 : 가족과의 통합프로그램 실시, 지속적인 이용만족도 조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성격유형검사 서비스 : 초기 가족 상담 서비스와 성격유형 검사(MBTI)등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분류된 유형에 따라 자기 및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1회기) 2. 가족역할정립서비스 : 가족구성원간의 역할을 정립을 위해 결혼과 자아상의 치유,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 이해에 대한 교육서비스(3회기) 3. 가족공동체프로그램 : 가족 관계향상을 위해 참여자 가족을 초대하여 전문 레크리에이션 체험프로그램(1회기) 4. 부모역할훈련 : 부모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해 자녀이해, 부모들의 코칭기법, 지역사회에서의 가족역할에 관한 전문 교육서비스(3회기)	월 4회 (총 8회기/ 회당 120분)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성격유형검사 서비스 : 초기 가족 상담 서비스와 성격유형 검사(MBTI)등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분류된 유형에 따라 자기 및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1회기) 2. 가족역할정립서비스 : 가족구성원간의 역할을 정립을 위해 결혼과 자아상의 치유,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 이해에 대한 교육서비스(3회기) 3. 가족공동체프로그램 : 가족 관계향상을 위해 참여자 가족을 초대하여 전문 레크리에이션 체험프로그램(1회기) 4. 부모역할훈련 : 부모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해 자녀이해, 부모들의 코칭기법, 지역사회에서의 가족역할에 관한 전문 교육서비스(3회기)	월 4회 (총 8회기/ 회당 120분)					

⑥ 저소득 장애인·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장애인·노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절감, 건강증진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 장애인, 산모(임신 3개월 이상),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연령 : 65세 이상 노인, 기타 장애인 및 산모는 연령기준 없음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인력 : 운동처방사,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소유자 등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월 19만원 내외 (정부 18만원, 본인 1만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본서비스</td> <td> 1. 노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혈액검사 측정결과와 함께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분기 1회) - 유산소 운동 :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볼과 밴드를 이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평형성 및 교차성의 발달 지원 - 댄스스포츠 : 댄스스포츠 및 요가 실시(필라테스) </td> <td rowspan="3">주 3회 (회당 90분)</td> </tr> <tr> <td> 2. 장애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분기 1회), 유산소 운동 - 수중운동 :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수중 워킹, 수중활동 등 물의 부력을 이용한 운동 제공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장애인 대상으로 웃음과 재미로 발달을 도움 </td> </tr> <tr> <td> 3. 산모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 : (분기 1회) - 라미즈 교육 :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극복, 출산에 대한 올바른 준비, 출산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예방 교육 - 임신부 요가 : 출산 시 통증의 감소 및 태교, 태아에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어 건강한 아이 출산에 도움을 주는 교육 실시 </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 2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노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혈액검사 측정결과와 함께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분기 1회) - 유산소 운동 :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볼과 밴드를 이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평형성 및 교차성의 발달 지원 - 댄스스포츠 : 댄스스포츠 및 요가 실시(필라테스)	주 3회 (회당 90분)	2. 장애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분기 1회), 유산소 운동 - 수중운동 :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수중 워킹, 수중활동 등 물의 부력을 이용한 운동 제공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장애인 대상으로 웃음과 재미로 발달을 도움	3. 산모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 : (분기 1회) - 라미즈 교육 :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극복, 출산에 대한 올바른 준비, 출산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예방 교육 - 임신부 요가 : 출산 시 통증의 감소 및 태교, 태아에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어 건강한 아이 출산에 도움을 주는 교육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노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혈액검사 측정결과와 함께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분기 1회) - 유산소 운동 :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볼과 밴드를 이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평형성 및 교차성의 발달 지원 - 댄스스포츠 : 댄스스포츠 및 요가 실시(필라테스)	주 3회 (회당 90분)							
	2. 장애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분기 1회), 유산소 운동 - 수중운동 :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수중 워킹, 수중활동 등 물의 부력을 이용한 운동 제공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장애인 대상으로 웃음과 재미로 발달을 도움								
	3. 산모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 : (분기 1회) - 라미즈 교육 :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극복, 출산에 대한 올바른 준비, 출산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예방 교육 - 임신부 요가 : 출산 시 통증의 감소 및 태교, 태아에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어 건강한 아이 출산에 도움을 주는 교육 실시								

⑦ 저소득가정 렌탈 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대여) 장애아동의 특수 휠체어 구입 및 리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특수장애아동의 정상적 신체 발달 지원 ▶ (장난감 대여) 아동 성장에 적합한 놀이교육 및 장난감 대여를 통해 정상적 발달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대여)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 가정의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 (장난감 대여)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7세 미만의 아동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대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장애인활동보조 및 요양보호사 자격자 ▶ (장난감 대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인력기준 없음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대여) 월 10만원 내외 (정부 8만원, 본인 2만원) / 12개월 ▶ (장난감 대여) 월 3만원 내외 (정부 2만5천원, 본인 5천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휠체어, 장난감 등을 대여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정서적·신체적 성장을 도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휠체어 렌탈서비스</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휠체어 및 자세유지도구 렌탈·리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렌탈과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서비스 제공 장애아동양육코칭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른 양육 및 놀이 방법에 대해 상담 및 코칭 </td> <td> 렌탈 12개월 (최대 2회) 리폼 연 3회 </td> </tr> <tr> <td>장난감 대여서비스</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여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및 일반 아동 대상 서비스 양육코칭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발달과정에 적합한 장난감 선정과 양육 및 놀이 방법에 대한 상담 및 코칭 </td> <td> 월 2회 (월수량 한정) </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신청된 가구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요구 조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휠체어 렌탈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휠체어 및 자세유지도구 렌탈·리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렌탈과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서비스 제공 장애아동양육코칭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른 양육 및 놀이 방법에 대해 상담 및 코칭 	렌탈 12개월 (최대 2회) 리폼 연 3회	장난감 대여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여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및 일반 아동 대상 서비스 양육코칭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발달과정에 적합한 장난감 선정과 양육 및 놀이 방법에 대한 상담 및 코칭 	월 2회 (월수량 한정)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휠체어 렌탈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휠체어 및 자세유지도구 렌탈·리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렌탈과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서비스 제공 장애아동양육코칭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른 양육 및 놀이 방법에 대해 상담 및 코칭 	렌탈 12개월 (최대 2회) 리폼 연 3회								
장난감 대여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여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및 일반 아동 대상 서비스 양육코칭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발달과정에 적합한 장난감 선정과 양육 및 놀이 방법에 대한 상담 및 코칭 	월 2회 (월수량 한정)								

⑧ 고령자 소외예방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고령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노후대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노년기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내 ▷ 연령 : 65세 노인 또는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인력 : 라이프코칭 및 재무설계 관련 자격소지자 혹은 관련교육훈련 이수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월 18만원 내외 (정부 16만원, 본인 2만원) / 6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및 은퇴자에게 삶에 대한 자기성찰과 노후 비전의 성취를 위한 내적 동기 활성화를 꾀하는 개별 라이프 코칭과 균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 재무 설계프로그램으로 구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6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5%;">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라이프코칭</td> <td> 심리적으로 복잡한 감정을 겪을 수 있는 노년기를 감안하여 다양한 전문 서비스 제공 (1:1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아인식과 부정적인 감정처리기술 2. 타인과의 관계 기술 3. 노후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제시 </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 1회 (회당 1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무설계</td> <td> 급변하는 금융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돈을 불리는 재무관리가 아닌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 2. 개별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적합한 재무 제표 분석 등 재무상담 </td> <td></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신청 및 이용자 선정 ○ 2단계 : 이용자별 노후 재무설계 ○ 3단계 : 이용자별 라이프코칭 제공 ○ 4단계 :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사업평가 ○ 5단계 : 사후관리(DB 구축)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라이프코칭	심리적으로 복잡한 감정을 겪을 수 있는 노년기를 감안하여 다양한 전문 서비스 제공 (1:1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아인식과 부정적인 감정처리기술 2. 타인과의 관계 기술 3. 노후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제시 	주 1회 (회당 1시간)	재무설계	급변하는 금융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돈을 불리는 재무관리가 아닌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 2. 개별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적합한 재무 제표 분석 등 재무상담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라이프코칭	심리적으로 복잡한 감정을 겪을 수 있는 노년기를 감안하여 다양한 전문 서비스 제공 (1:1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아인식과 부정적인 감정처리기술 2. 타인과의 관계 기술 3. 노후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제시 	주 1회 (회당 1시간)								
재무설계	급변하는 금융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돈을 불리는 재무관리가 아닌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 2. 개별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적합한 재무 제표 분석 등 재무상담 									

⑨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비만으로 인한 질병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소득기준 없음 (별도설정 가능), ▷ 연령 : 만 5세~12세 이하 ▷ 신체적 특성 : 경도 (* 비만 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도 포함 가능(신규모델) * 비만지수 = [(실측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100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처방, 영양지도, 종합체력 측정, 아동학부모 건강·영양교육실시, 비만캠프 등의 서비스 및 신체측정(매월 후 학부모 통보, 성과평가(분기) 등의 행정역량 구비업체 - 단순 스포츠 시설업체 (스포츠 센터 및 학원, 헬스클럽 등) 제외 ▷ 인력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전공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월 6만원~10만원 내외 (서비스 내용별 상이)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주 1~2회(회당 50~60분) 운동지도, 필요시마다 비만관련 건강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6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5%;">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존 모델</td> <td> 1. 운동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처방 : 대상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도중 처방변경 가능 - 운동지도 :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운동지도를 할 수 있는 공급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실시 2.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필요에 따라 주기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교육(비만 관련) 및 정보제공 - 영양교육 및 정보 제공 : 음식조절, 식단구성 등 - 설문조사 및 상담 : 영양조사, 식사습관, 신체활동, 건강 증진행동 등 3. 기초검사 (서비스 시작 시점 또는 필요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2회 운동지도중심, 체육전문가 중심 집합서비스 </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 2회 (회당 50~60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규 모델 (기존모델을 수정, 2010년 이후 적용)</td> <td> 1. 학교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과후 교실 형태의 운동위주의 서비스 제공/ 학교교사에 의한 바우처 결제관리 2. 가정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회 이상 가정방문, 운동지도 및 생활습관지도 - 체육전문가 중심(20시간 이상 비만관리교육 이수) 3. 영양관리강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회 이상 운동지도(집합 혹은 제가), 월 1회 이상 영양 지도(가정 방문)/영양사에 의한 영양지도 및 맞춤형 식단 제공 4. 지자체 신규개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모델 변형 또는 지자체의 자체개발 서비스 모델 </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 2회 (회당 50~60분)</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자 선정 ○ 2단계 : 제공기관 선택 및 상담 ○ 3단계 : 서비스 이용 효과 모니터링 ○ 4단계 : 사후관리(DB 구축)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존 모델	1. 운동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처방 : 대상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도중 처방변경 가능 - 운동지도 :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운동지도를 할 수 있는 공급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실시 2.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필요에 따라 주기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교육(비만 관련) 및 정보제공 - 영양교육 및 정보 제공 : 음식조절, 식단구성 등 - 설문조사 및 상담 : 영양조사, 식사습관, 신체활동, 건강 증진행동 등 3. 기초검사 (서비스 시작 시점 또는 필요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2회 운동지도중심, 체육전문가 중심 집합서비스 	주 2회 (회당 50~60분)	신규 모델 (기존모델을 수정, 2010년 이후 적용)	1. 학교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과후 교실 형태의 운동위주의 서비스 제공/ 학교교사에 의한 바우처 결제관리 2. 가정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회 이상 가정방문, 운동지도 및 생활습관지도 - 체육전문가 중심(20시간 이상 비만관리교육 이수) 3. 영양관리강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회 이상 운동지도(집합 혹은 제가), 월 1회 이상 영양 지도(가정 방문)/영양사에 의한 영양지도 및 맞춤형 식단 제공 4. 지자체 신규개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모델 변형 또는 지자체의 자체개발 서비스 모델 	주 2회 (회당 50~60분)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존 모델	1. 운동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처방 : 대상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도중 처방변경 가능 - 운동지도 :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운동지도를 할 수 있는 공급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실시 2.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필요에 따라 주기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교육(비만 관련) 및 정보제공 - 영양교육 및 정보 제공 : 음식조절, 식단구성 등 - 설문조사 및 상담 : 영양조사, 식사습관, 신체활동, 건강 증진행동 등 3. 기초검사 (서비스 시작 시점 또는 필요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2회 운동지도중심, 체육전문가 중심 집합서비스 	주 2회 (회당 50~60분)								
신규 모델 (기존모델을 수정, 2010년 이후 적용)	1. 학교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과후 교실 형태의 운동위주의 서비스 제공/ 학교교사에 의한 바우처 결제관리 2. 가정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회 이상 가정방문, 운동지도 및 생활습관지도 - 체육전문가 중심(20시간 이상 비만관리교육 이수) 3. 영양관리강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회 이상 운동지도(집합 혹은 제가), 월 1회 이상 영양 지도(가정 방문)/영양사에 의한 영양지도 및 맞춤형 식단 제공 4. 지자체 신규개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모델 변형 또는 지자체의 자체개발 서비스 모델 	주 2회 (회당 50~60분)								

⑩ 아동 리더쉽 증진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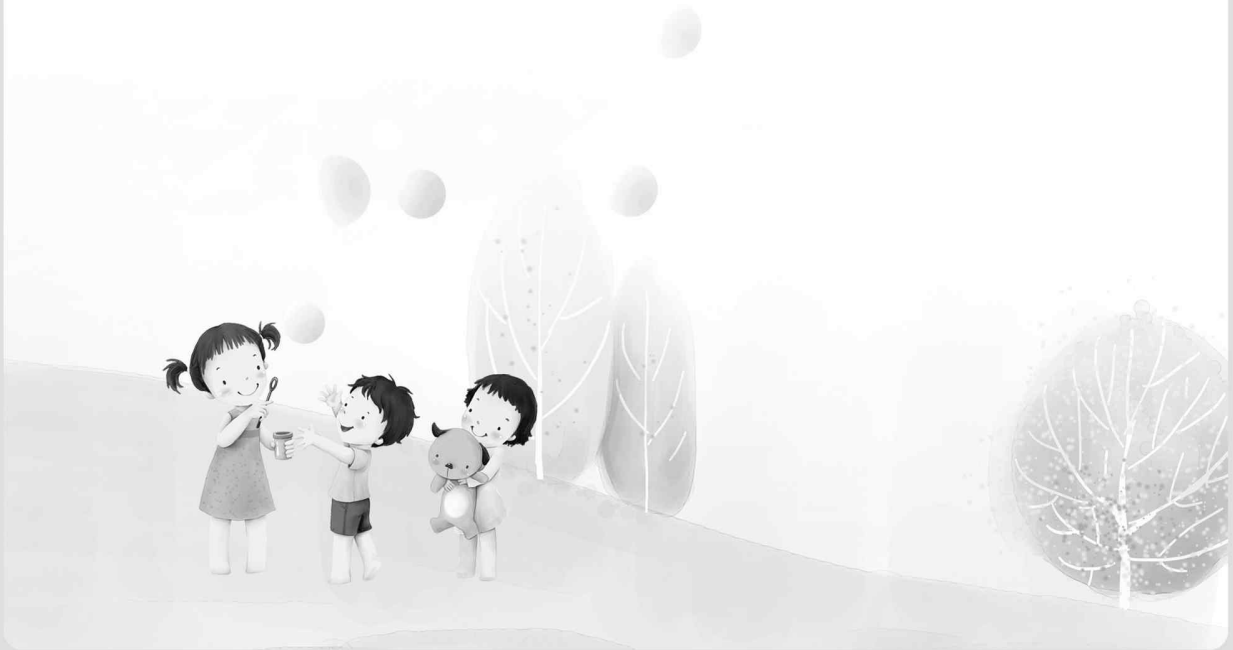
항목	내 용												
① 목적	아동발달검새(심리검사) 및 리더쉽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기 올바른 발달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아동 ▷ 연령 : 만7세~12세 (필요시 연령기준 상향조정 가능) * 교육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심리·정서상 문제를 보이는 아동 추천 받아 이용자 모집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전문기관간 협약에 의해 서비스 제공가능) ▷ 인력 : 심리학, 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등 관련학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월18만원 내외 (정부 16만원, 본인 2만원) / 3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발달검새(심리검사)를 통해 정상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내외적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리버쉽, 사회적 의사결정, 문제해결기술 증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6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5%;">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서비스</td> <td> <p>1. 발달진단 프로그램 (첫째달 실시, 지역에 따라 다른 측정도구 사용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Q(Child Behaviour Questionnaire) :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측정 -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 의사소통, 일상생활 기술, 사회화, 운동기능에 대한 적응행동 측정 - KEDI(Individual Basic Learning skills test) 기초 학습능력 측정 - PEP(Psycho - Educational Profile) 학습에 문제를 가진 아동의 행동과 능력을 평가 등 </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1회 (방문집합)</td> </tr> <tr> <td></td> <td> <p>2. 리더쉽 향상 프로그램(둘째달 및 셋째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조절 기술 : 대인관계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의사결정 전에 자신의 행동을 지연할 수 있는 기술 - 사회적 인식과 집단 참여기술 : 타인들로부터의 신뢰, 도움, 칭찬을 받는 기술, 타인의 생각을 알아차리기, 현명하게 친구 선택하기, 타인의 입장 이해하기 등 </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2회 (회당 2~3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가서비스</td> <td> <p>1. 가족참여프로그램 : 가정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 및 행동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참여프로그램 실시, 아동발달진단 결과 설명등 교육</p> </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 1~2회 (회당 2시간)</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p>1. 발달진단 프로그램 (첫째달 실시, 지역에 따라 다른 측정도구 사용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Q(Child Behaviour Questionnaire) :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측정 -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 의사소통, 일상생활 기술, 사회화, 운동기능에 대한 적응행동 측정 - KEDI(Individual Basic Learning skills test) 기초 학습능력 측정 - PEP(Psycho - Educational Profile) 학습에 문제를 가진 아동의 행동과 능력을 평가 등 	월1회 (방문집합)		<p>2. 리더쉽 향상 프로그램(둘째달 및 셋째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조절 기술 : 대인관계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의사결정 전에 자신의 행동을 지연할 수 있는 기술 - 사회적 인식과 집단 참여기술 : 타인들로부터의 신뢰, 도움, 칭찬을 받는 기술, 타인의 생각을 알아차리기, 현명하게 친구 선택하기, 타인의 입장 이해하기 등 	월 2회 (회당 2~3시간)	부가서비스	<p>1. 가족참여프로그램 : 가정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 및 행동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참여프로그램 실시, 아동발달진단 결과 설명등 교육</p>	총 1~2회 (회당 2시간)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p>1. 발달진단 프로그램 (첫째달 실시, 지역에 따라 다른 측정도구 사용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Q(Child Behaviour Questionnaire) :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측정 -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 의사소통, 일상생활 기술, 사회화, 운동기능에 대한 적응행동 측정 - KEDI(Individual Basic Learning skills test) 기초 학습능력 측정 - PEP(Psycho - Educational Profile) 학습에 문제를 가진 아동의 행동과 능력을 평가 등 	월1회 (방문집합)										
	<p>2. 리더쉽 향상 프로그램(둘째달 및 셋째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조절 기술 : 대인관계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의사결정 전에 자신의 행동을 지연할 수 있는 기술 - 사회적 인식과 집단 참여기술 : 타인들로부터의 신뢰, 도움, 칭찬을 받는 기술, 타인의 생각을 알아차리기, 현명하게 친구 선택하기, 타인의 입장 이해하기 등 	월 2회 (회당 2~3시간)											
부가서비스	<p>1. 가족참여프로그램 : 가정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 및 행동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참여프로그램 실시, 아동발달진단 결과 설명등 교육</p>	총 1~2회 (회당 2시간)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초기상담(추천 받은 자를 중심으로 상담) 실시 ○ 2단계 : 이용자 선발 ○ 3단계 : 프로그램 실시 및 프로그램 성과 측정 ○ 4단계 : 측정결과 보호자에게 통보 및 지속적 사후관리(모니터링) 실시 												



부 록

▣ 공통서식

▣ 일반서식



공 통 서 식

[신청 및 결정 (사회복지통합망 공통서식)]

【별지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제1호의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

【별지제3호】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별지제6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중지·정지·상식) 통지서
(별지 제6호)

【별지제12호】 이의신청서(별지제12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input type="checkbox"/> 신규(제공)신청 <input type="checkbox"/> 변경신청 <input type="checkbox"/> 연장신청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직업 작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¹⁾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부양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 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원금 ³⁾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안내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친족 ⁴⁾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타 관계인	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							
		영유아보육 · 유아학비	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1) 해당지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1.1.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신 청 서 비 스	□ 보육료 지원 (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지원 (아이즐거웁카드)	지원대상자	출생 순위	신청구분			
				□ 영유아(0~4세), 유아학비(3~4세)		□ 만5세아보육·교육 □ 다문화보육	
				□ 장애아보육료		□ 방과후보육료	
				□ 영유아(0~4세), 유아학비(3~4세)		□ 만5세아보육·교육 □ 다문화보육	
			□ 장애아보육료		□ 방과후보육료		
			□ 영유아(0~4세), 유아학비(3~4세)		□ 만5세아보육·교육 □ 다문화보육		
			□ 장애아보육료		□ 방과후보육료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 시간(일)	□ 월27시간 (9일) □ 월36시간 (12일)	서비스 유 형	□ 방 문 □ 주간보호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대상자 구 분			□ 가사지원 □ 간호간병 □ 활동보조		
		신청요건 (1개 선택)	□ 조손가정(차상위 이하) □ 장애인(차상위 이하 장애등급 1~3등급) □ 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 장애인활동보조특례(독거) □ 중증질환자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실제 독거 □ 주민등록상 독거)				
□ 장애인활동보 조 지원	지원대상자		특례신청여부	□ 장애인활동보조특례(독거) (□ 실제 독거 □ 주민등록상 독거)			
	장애인연금 (장애인동수급) 수급 여부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미수급					
	장애유형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안면 □ 신장 □ 심장 □ 호흡기 □ 간 □ 장루·요루 □ 간질 □ 지적 □ 발달 □ 정신					
	변경사유	□ 가구유형(독거여부) 변화 □ 연령 변화(아동→성인) □ 기능상태 변화(의사 소견서 첨부)					
장 애 아 동 가 족 지 원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지원대상자		장애 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시 모두 체크)	□ 언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 기타 ()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부모 정보	부	성 명	성 명
필요서비스 (중복 시 모두 체크)		□ 언어발달진단 □ 언어치료 □ 청능치료 □ 기타 ()					
산 모 신 생 아 도 우 미	지원대상자		자동차	배기량 (□ 2,500cc 이상, □ 2,500cc 미만) 평가액 (□ 3,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출산 예정일	년 월 일		서비스 개시일	년 월 일		
	신생아/ 산모	□ 단태아 □ 쌍생아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 다자녀가구					
	건강관리 필요자 (해당자만)	□ 장애아 □ 회귀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족 □ 여성장애인 산모 □ 결혼이민자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기타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 지역 사회 서 비스 투자 사업	지원대상자		□ 지역선택형 (□ 아동인지향상서비스, □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 지역개발형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 「유아교육법」 26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신청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업별 서식3호)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카드 신청인	성명	한글		이용자와의관계		
		영문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집전화	
				휴대전화		
신청카드	<input type="checkbox"/> 보육료지원(아이사랑카드)		카드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input type="checkbox"/> 체크카드 <input type="checkbox"/> 바우처 전용카드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발급사유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유효기간만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방문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보조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재활치료					
	<input type="checkbox"/> 언어발달지원					
	<input type="checkbox"/> 산모신생아도우미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직장정보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청인(본인) <input type="checkbox"/> 보호자(배우자) ※ 보호자(배우자) 선택 및 직장 기재시 보호자(배우자) 성명과 주민번호 기재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청구서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이메일		문 자 알 림 ^㉔ 서 비 스(SMS) ※ 아이사랑카드(유료)	① 신청 ② 미신청		
카드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이메일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현금카드기능 (※아이사랑카드는 제외)	① 신청 ② 미신청		
	(※발급동의서 작성시만 징구 선택)			(※KB국민은행 계좌만 신청 가능)		
바우처 사용내역 e-mail 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체크카드명세서 e-mail 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결제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대금결제일			
환급계좌 (※아이사랑 카드는 제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번호			
1) 예금주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함 2) 전용카드일 경우 결제계좌 기입 불필요 3) 미성년자는(만18세미만) 별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함 4) 아이사랑카드의 카드비밀번호는 개통시 본인이 등록해야함 5) 아이사랑카드의 신청자중 신한카드 소지자는 기 발급카드의 결제정보(계좌, 결제일, 대금청구 주소지 등)로 발급됨 6) 아이사랑카드의 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우체국, 제일은행, 우리은행만 가능함 ※ 대금결제일은 바우처카드(1~22일, 체크카드 신규시 5일만 선택), 아이사랑카드(해당없음)로 기입						
카드발급신청, 약관승인 등						
본인은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며 카드발급을 신청합니다. ①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이며, 심사기준에 따라 체크카드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발급 이용자 중 희망하는 경우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합니다. ③ 아이사랑카드를 제외한 서비스의 경우 KB 체크카드 개인회원약관, 바우처카드발급용 추가동의서 문자알림 ^㉔ 서비스(SMS)이용약관을 수령하고 동 약관을 승인 및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④ 아이사랑카드의 경우 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 승인 및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신한카드(주) <input type="checkbox"/> KB국민은행카드 귀하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아이사랑카드 : 신한카드(주)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신한비씨 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주) 포함. 이하 같음)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사의 영업목적으로 사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등에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귀사의 금융상품소개 등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이용할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E-mail 주소 등), 신용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승인/매입 정보, 사용처,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 현황, 연체정보, 신용카드 한도 정보 등),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정보, 신용능력정보(소득, 주거, 재산, 직장정보,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
- 정보제공 활용 목적 : 제휴서비스(무이자, 할인, 무료입장, 자동이체 서비스, 부가세 환급 지원 등) 및 각종 포인트(항공, 자동차, 정유 등)의 제공 정산, 카드배출, 우편물(e-mail/SMS 발송업무, 전화상담업무, 채권추심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 업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업무목적(대출표 접수, 반송업무, 회원과 기맹점간의 분쟁해결, 가맹점대금 정산업무) 등 귀사의 카드 관련 업무, 카드회원유치, 카드상품소개, 카드가입 및 이용권유, 금융상품소개, 통신관련 서비스 소개, 보험대리점 업무(보험TM포함) 등 귀사의 영업목적 업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규정에 따른 개인 해외 출입국 정보 확인 및 활용
-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 빅플러스GS칼텍스카드(GS칼텍스, AIG생명보험), 레이디카드(LIG생명보험, 인터파크, 신한생명) 등 관련 제휴기관
- ※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 귀사가 신청하신 카드(대출)를 정산 접수/발급(승인) 가능합니다.
- ※ 카드가 재발급되거나 회원의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유효합니다.
- ※ 채무불이행 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및 신용조회정보(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는 본 동의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정보업자(주)한국신용정보,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주)한국개인신용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에게 제공됩니다.
- ※ 본인은 본 동의서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동의합니다.

□ 바우처서비스 : KB국민은행 귀중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행(KB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주)포함. 이하 같습니다.)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행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내용

- 조회대상정보: 신용거래정보(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채무보증, 신용(체크)카드, (가계)당좌예금 등), 신용등급, 채무불이행정보, 타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조회목적: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실적업무, 본 계약본 계약 이전에 발생한 신용거래정보 포함의 계약유지 및 사후관리 등
- 조회동의의 효력기간: 본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까지(단, 신청한 계약이 당행 또는 본인 의사에 의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하여, 본 계약 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 시까지 유효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용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제공
 - 제공대상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신용조회회사: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이용목적: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제공
 - 제공대상기관: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등
 - 이용목적: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본계약 및 본계약 이전 계약의 유지 및 사후관리 목적
-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등(본인이 거래하는 비씨카드 회원사간 식별정보의 교환 포함)
 - 신용거래정보: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카드발급 및 해지, 개인대출 및 채무보증, 카드한도, 사용금액(현금서비스 포함) 등
 - 신용능력정보: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유효기간: 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 까지 유효)
 - ※ 당행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등) 및 체납정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공공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2조1항에 의하여 동의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릴 예정이며,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 귀행(KB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주)포함. 이하 같습니다.)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34조에 따라 영업목적으로 이용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행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영업목적으로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추 가 동 의 서 (바우처카드 발급용)

KB국민은행 귀중

본인은 귀 은행으로부터 바우처카드(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회원가입신청서(이하 '회원신청서')에 의거 바우처카드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약하며 이에 추가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본인이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귀 행이 정하는 결제능력심사기준 및 개인회원자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하나를 귀 행이 임의로 지정하여 발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귀 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불기능을 중지하여 발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3. 본인이 기재한 자동이체 계좌번호에도 불구하고 귀 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인 명의의 기존 KB카드 결제계좌나 신청서상 기재계좌 또는 결제계좌 미등록으로 임의 지정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4.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별로 지정된 가상계좌에 수납기간내 1회납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납입대상금액에 미달 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귀 행이 이의 수납을 거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5. 이용취소는 카드사용당일에 한하며 당행에서 해당 매출전표를 매입하기 이전인 경우만 허용됨에 동의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1>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input type="checkbox"/> 결정 <input type="checkbox"/>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신청인 /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신청구분	급여 · 서비스내용																																					
조사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신청결과																																						
		보 장 구 분	급여 · 서비스내용																																				
		보호대상자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보장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월 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안 내 및 유 의 사 항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 보장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	1. 귀하는 위와 같이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 보장,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복지,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특별지원 청소년	1. 귀하는 위와 같이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r> <td rowspan="2">보호자</td> <td>이름</td> <td></td> <td>관계</td> <td></td> <td>생년월일</td> <td></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td> <td>연락처</td> <td></td> </tr> <tr> <td rowspan="2">지원기관</td> <td>기관명</td> <td colspan="3"></td> <td>대표자</td> <td></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td> <td>담당자</td> <td></td> </tr> <tr> <td>지원내용</td> <td colspan="5"></td> <td>연락처</td> <td></td> </tr> </table>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	이름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지원내용						연락처
보호자	이름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지원내용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일 반 서 식

[서비스 이용 및 제공기관]

- 【서식 6】 본인부담금 영수증
- 【서식 7】 초기상담 기록지
- 【서식 8】 서비스제공계획서
- 【서식 9】 사업 사업계획(기준정보) 관리(양식)
- 【서식 10】 지역개발형마우처 사업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1)
- 【서식 11】 지역개발형마우처 사업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2)
- 【서식 1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 【서식 13】 사회복지서비스(마우처카드) 신청 안내문
- 【서식 14】 사회복지서비스 연장(종료)통보서
- 【서식 15】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예시)
- 【서식 16】 서비스 제공 기록지(예시)
- 【서식 17】 지정 공고문(예시)
- 【서식 1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서식 19】 사업제안서(예시)
- 【서식 20】 제안요약서
- 【서식 21】 서비스 내용 요약서
- 【서식 22】 제공기관 지정서
- 【서식 23】 KB가맹점 신청을 위한 안내문
- 【서식 24】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시도/시군구용)
- 【서식 25】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제공기관용)
- 【서식 26】 제공기관 지정 결과 보고
- 【서식 27】 모니터링 양식
- 【서식 2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지역개발형) 사업 신청서
- 【서식 2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지역개발형) 사업계획 요약서
- 【서식 3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지역개발형) 사업계획서
 - ※ 붙임 1, 2 :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 매뉴얼
 - 붙임 3 :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
- 【서식 31】 제공기관운영계획보고서
- 【서식 32】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서식 6]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공기관 보관)		
거래번호 :		
서비스명 :		
이용자명 :	(서명)	
금 액 :	서비스 가격	원
	정부 지원금	원
	본인 부담금	원
위 본인부담금(₩ 원)을 2011년 ○월 일 수령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대표 (인)		

본인부담금 영수증 (이용자 보관)		
거래번호 :		
서비스명 :		
이용자명 :	(서명)	
금 액 :	서비스 가격	원
	정부 지원금	원
	본인 부담금	원
위 본인부담금(₩ 원)을 2011년 ○월 일 수령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대표 (인)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이용자 서명은 보호자 서명으로 대체 할 수 있음

[서식 7]

초기 상담 기록지

관 리 번호		성 명		상담일시	. . . (:)
생 년 월 일		상 담 장 소	<input type="checkbox"/> 가정방문 <input type="checkbox"/> 기관내방 <input type="checkbox"/>	전 화 번호	(집) (H.P)
주 소				보 호 자 연 락 처	
보 호 자	관계()				
대 상 구 분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 비 스 가 격	본인부담금 : 원 정부지원금 : 원
상 담 내 용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 담 결 과 및 조 치 사 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내사항>					
제공기관 :		상담자 :		(서명)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서식 8]

서비스 제공계획서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
			(휴)☎
서비스명		제공 방법	재가방문 : 1/1 지도 기관방문 : 10명 단위 집합교육
서비스 목적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제공 : 월 회(주 회)/회당 분 <input type="checkbox"/> 제공 일정 : 매주 요일(시 분에서 ~ 시 분까지)		
서비스 가격	<input type="checkbox"/> 서비스가격 : 원 - 정부지원금 : 원(바우처 지원) , - 본인부담금 : 원		
	<input type="checkbox"/> 납부방법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개시전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사전납부(계좌납부) ▶ 납부계좌 : 000-0000-000-00, 00은행 (예금주 : 0000제공기관) -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 ▶ 서비스 제공비율에 따라 결제(해당 월 서비스의 50%이하 제공시 지원액의 50%결제, 50%초과 제공시 지원액의 100% 결제 가능)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서비스 제공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	(서명)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바우처) 종료(예정)안내문(예시 1)

1. 현재 귀하께서 이용하고 계신 사회복지서비스의 바우처 지원기간이 20 년 월 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2. 귀하께서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최대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 다만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월부터 계속해서 이용하고 계신 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지원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경우 20 년 월 일까지 첨부 서류를 지참하셔서 읍·면·동사무소에 서비스를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신청은 가능하나, 매월 ○○일 이전에 재신청하신 경우 다음달부터, 매월 ○○일 이후에 재신청·전송한 경우 다다음달부터 바우처 지원기간이 연장됩니다.
 - 또한 지원 이용자 선정은 예산 여건이나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지므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경우에도 지원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함께 예산 조정이나 정책변경이 있는 경우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에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이용하고 계신 서비스는 제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 결제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 귀하께서 소지하고 계신 바우처 카드의 정부 지원 금액은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사용하지할 수가 없으니, 결제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시)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예정일이 20 년 월 일인 경우 20 년 월 일까지는 바우처 카드를 통한 정부 지원액 결제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정부 지원금이 자동 소멸되어 결제가 불가합니다.
 - 다만 향후 다른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시 현재 가지고 계신 바우처 카드는 지속 사용이 가능하오니 바우처 카드를 잘 보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위 내용 중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사무소 또는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서식 1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바우처) 종료(예정)안내문(예시 2)

1. 현재 귀하께서 이용하고 계신 사회복지서비스의 바우처 지원기간이 20 년 월 일부터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 바우처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연장신청이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다만 귀하께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일부 기관 제외)
2. 귀하께서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 결제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 귀하께서 소지하고 계신 바우처 카드의 정부 지원 금액은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예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사용하지 수가 없으니, 결제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시)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예정일이 20 년 월 일인 경우 20 년 월 일까지는 바우처 카드를 통한 정부 지원액 결제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정부 지원금이 자동 소멸되어 결제가 불가합니다.
 - 다만 향후 다른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시 현재 가지고 계신 바우처 카드는 재활용이 가능하오니 바우처 카드를 잘 보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끊임없는 사업 개발과 보다 더 나은 서비스로 여러분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 위 내용 중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사무소 또는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안내사항】

1. 서비스이용자는 상기의 서비스종류(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통보서에 표기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뒷면)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해당 서비스제공기관과 상담한 후,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3. 서비스이용자는 제공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5. 지역사회서비스는 1인당 연간 2개 까지만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으며, 1개월 미이용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예산조정, 정책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변경 또는 조기에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서비스내용	▶ 해당 사업 서비스 내용 명시
바우처가격	<u>서비스 총 가격 : 월 000만원</u> <u>바우처 지원액 : 월 00만원(정부지원)</u> <u>본인 부담금 : 월 00,000원</u>
본인부담금	<u>정부에서 지원하는 월00만원을 제외한 추가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u> <u>귀하가 납부할 금액은 월 00만원(본인부담금)입니다.</u> <u>납부는 서비스가 시작되기전(매월 00일)까지 납부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u> <u>* 부득이 현금 납부시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u>

♣ 위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문의사항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검색, 바우처 잔량 등 확인 가능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카드) 신청 안내문

(읍·면·동 비치용)

1. 전자바우처 카드로 시행되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는 반드시 KB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가 수령지로 직접 배송되므로 수령을 거부하시거나 폐기하시면 서비스를 받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2. 바우처카드는 신용, 체크카드로 구분되며 본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신청시 요청한 카드 유형과 달리 발급될 수 있습니다.
 -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중 바우처전용카드로 발급되어지며, 이 경우 법정 대리인이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제휴 카드로 부가서비스제공기관에 개인정보는 일체 제공되어지지 않습니다.
3. 바우처카드 중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카드는 사업별 별도 카드를 사용하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CSI)의 경우 처음 발급된 카드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CSI사업의 경우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에도 또 다른 서비스 신청 시 재사용 가능함에 주의하여 카드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타시군구로 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자격이 자동 중지되며,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실 때에는 전입 시군구에서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 단, 매월 21일 마감 이후 재신청시에는 익월 서비스부터 적용가능합니다.
5.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서식 14]

사회복지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연장 <input type="checkbox"/> 종료	통보서		
서비스 (보호) 이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주요문제 및 욕구		필요서비스	
신청인	성 명		보호이용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재 판 정 결 과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 결과				
	<input type="checkbox"/> 연 장	서비스 유형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참조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참조		
		바우처 제공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서비스(보호) 안내	- 귀하께서 이용하신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이 위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기 변동사유이외에 예산 조정이나 정책변경이 있는 경우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바우처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종 료	종료 사유			
바우처 종료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료 안내		- 귀하의 바우처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될 예정이며, 귀하께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이미 지원된 바우처 카드 정부 지원금액은 종료 다음월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결제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현재 가지고 계신 바우처 카드는 추후에 사용가능하오니 잘 보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재판정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며 통보된 결과에 대하여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직 성명		년 월 일		(연락처 :)	
시장·군수·구청장 (인)					

[서식 15]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예시)

○ 서비스 이용자(갑)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연락처 :

○ 대리인(보호자)

성 명 : (인) (“갑”과의 관계 :)

주 소 :

연락처 : (E-mail :)

○ 서비스 제공기관(을)

시설명 : (대표자 : 인)

주 소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서비스 종류, 내용 및 금액은 “사회복지서비스제공계획서”와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다 음 -

제1조(서비스 제공) ① “을”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 ② “을”은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서비스 제공자를 배치한다.
- ③ “을”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청(이하 “시·군·구청”이라 한다)에서 통보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결과 통보서”를 참고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기입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이 계약은 “갑”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 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을”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 ④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조(사회복지서비스 비용) ①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은 사회복지서비스 가격기준(가칭)에 의한다.

- ②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제4조(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갑”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5조(통지사항) ① “을”은 “갑”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 ② “갑”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갑”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갑”이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을”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갑”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실시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계약 취소 등) 서비스 실시 중에 “갑”과 “을” 쌍방간 법령에 위반한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갑”과 “을” 쌍방은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다.

제9조(분쟁해결방법)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2011. . .

[서식 16]

서비스제공 기록지(월)

제공기관명 :

2012. 1. 1. ~ 2012. 1. 30

○ 이용자 성명	○ 생년월일	○ 제공자	
제공횟수 (월/일) (시작/종료)	서비스 내용		이용자 (서명)
1회차 (/) (:) (:)	1. - 2. -	3. - -	
2회차 (/) (:) (:)	1. - 2. - 3. -		
3회차 (/) (:) (:)	1. - 2. -	3. - 4. -	
4회차 (/) (:) (:)	1. - 2. -	3. - 4. -	
5회차 (/) (:) (:)	1. - 2. -	3. - 4. -	
비 고 (종합의견)			제공인력 (서명)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 제공기관 지정 공모(예시)

정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고용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부터 새로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군·구)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 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

■ 지정 대상 : 아래 사업별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1) ○○○ 사업
- 2) △△△ 사업

※ 사업계획서 별첨

■ 지정 주체 : ○○○ 시장(군수, 구청장)

■ 지정 기간 : '20.1.31까지

- 사업 실적, 차년도 사업 계획 등을 고려, 지정기간 연장 가능

■ 총 사업비 : ○○○억원

- ○○○ 사업 : ○○○ 억원
- △△△ 사업 : ○○○ 억원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지부·지회·가맹점(franchise) 등을 통해 해당 지역내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기관이나 기업간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가능

- 관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충족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기존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 . . . ~ 20 . . . (○주)
- 제출서류 :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사업 운영을 위해 전담금융기관에 바우처가맹점 등록 및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결제용 단말기를 구입하여야 하며, 단말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지정 기간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사업 참여 제외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 조치 가능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선정결과 공고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등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사 업 기 관 명		※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기관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관련	법인명 :	
					등록일	
전담관리자	(전화)	확보된 서비스 제공인력	명		법인 성격	<input type="checkbox"/> 공공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input type="checkbox"/> 민간
지급계좌	예금주(사업기관 대표)		은행명	계좌번호		
<p>상기와 같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1부 						

[서식 1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사업 제안서(예시)

I. 제안개요

- * 사업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기대효과, 전제 조건 등을 요약 기술
 - 제안요약서로 대체 가능

II. 제안기관 일반

- * 제안 기관 일반 현황, 조직 및 인원, 사업현황, 재무 현황,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사회공헌활동 현황 등

III. '09년 사업 실적(기존사업자만 작성)

- * 당초 제안 내용 준수 실적, 사업관리체계 및 인프라 확충실적, 품질관리 실적, 홍보 등 사업 수행 노력도 등

IV. 세부 사업계획

- * 서비스 공급 지역 범위, 서비스 공급 방안, 서비스 공급 인력 확보현황 및 확보 계획, 서비스 공급인력 교육 계획, 서비스 관련 장비 및 시설 운영 현황,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서비스 성과 관리 방안, 보안관리 방안

V. 기타

- * 사업 특화 방안, 기타 서비스 관련 추가 사항 등

[서식 20]

제안 요약서	
사 업 명	
기 관 명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참여기관)' 형태로 기술
대응투자규모	총천원(현물천원, 현금천원, 기타천원) ※ 대응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재,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
사업계획 요약	
*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기대효과, 전제 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사업 관리방안 등 주요 사항 요약 서술	

[서식 21]

서비스 내용 요약서

1. 서비스 공급내용 요약서(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서비스 구분	세부 서비스 공급내역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2.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서비스 구분	단가	산출근거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 단가는 VAT 포함가격으로 제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 제공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기관명 :

소재지 :

사업기관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지정기간 : 20 년 월 일 ~ 2012년 1월 31일

위 기관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직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 제공기관 주의사항

1. 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업 제안서 등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사업 참여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서비스 제공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 등 관계 도우미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정 기간내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참여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포기일로부터 3개월 전에 그 뜻을 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는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에서 예외적 조치를 취한 경우를 제외하고 바우처 결제를 위하여 지정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서비스 제공기관은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가 제공기관을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한 경우 제공기관은 배상한 금액의 상당액을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9.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공표와 함께 성고가 현저히 낮은 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법령의 개폐, 정책 변경, 예산액 변경, 기타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언제든지 사업을 폐지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 사업 내용이나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11. 서비스 제공기관은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인력의 쾌적한 근무 조건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2. 서비스 제공기관은 상기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경우 지정권자는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등으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위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KB가맹점 신청을 위한 안내문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시 본 문서를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십시오!

■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 여러분께(가맹점 신청시)

- 바우처 가맹점은 기존 KB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와 동일하며 가입시 접수서류를 확인하신 후 가입 절차에 준하여 가입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EDC 특약이 등록되므로 반드시 바우처 전용가맹점 및 신용판매대금 자동청구(EDC) 신청동의서를 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가맹점 가입등록시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여부는 주무부서에서 사후검증(향후 자동 검증)을 하며, 가입자격 적격시에 즉시 가입등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거래 방법

구 분	전산 거래	비 고
가입등록거래	2001거래	- 업종코드 (바우처:9007 신설)

- 바우처 전용가맹점 및 신용판매대금 자동청구(EDC) 신청동의서 : K-Portal > 전자매뉴얼 > 카드 > 장표/서식 > 가맹점
- 가맹점가입신청서와 기타 서류는 입력점에서 보관

■ 기타 관련 문의 사항

- 국민은행 카드 콜센터 1588-1688/1599-7900, 02)2073-4973~4

[서식 24]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시도/시군구 용)

시도명	시군구명	서비스 코드	사업명	변경항목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 ※ 추가 자료 : 별첨
- ※ 예산액 등 조정이 있는 경우 증감 내역 별도 명시
- ※ 반드시 엑셀로 작성
- ※ 변경항목 : (서식 1호)의 사업사업계획(기준정보) 항목(서비스내용, 이용자선정기준, 우선순위 등)

[서식 25]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제공기관용)

서비스 코드	사업명	기관명	변경 항목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담당자	연락처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 ※ 추가 자료 : 별첨
- ※ 서비스 가격 변경의 경우 원가 분석 자료 별도 제시

3.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다. 서비스 적정성

1. 서비스 제공자가 약속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까?

- ① 항상 잘 지킨다 ② 대체로 잘 지킨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잘 지키지 않는다 ⑤ 항상 잘 지키지 않는다

2.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이후 귀하의 삶이 질이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라. 기타 사항

1. 앞으로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지역사회서비스를 1회 더 제공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이용하시는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 동일서비스를 자부담으로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면접 후 기록(이용자 설문 없이 제공기관에서 자체입력)

1. 이용자 소득등급()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차상위계층 이상

2. 서비스 이용 기간

- ① 3개월 미만 ②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④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⑤ 12개월 이상

- * **최초 1회 설문** : 이용자에 대한 분기별 설문 시 최초 1회(연1회)만 설문
- * **모든 문항은 필수응답 문항입니다.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28]

2011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지역개발형) 사업 신청서				
사업유형	① 개발주체 (■ 시/군/구, □시/도, □시·군·구 공동개발) ② 사업성격 (■ 일반사업, □ 패키지형 사업)			
사업명	00 프로그램			
주관부서 (협조부서)			주소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직위		핸드폰	
	성명		E-mail	
			Fax	
사업예산	총사업비	000천원	국고	000천원
			지방비	00천원
			기타	천원
총사업기간	20 . 02. ~ 20 . 01. (개월간)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2011 년 월 일				

[서식 2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지역개발형)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시군구							
사업유형		① 개발 주체: <input type="checkbox"/> 시도개발 <input type="checkbox"/> 시도공동개발 <input type="checkbox"/> 시군구공동개발 <input type="checkbox"/> 시군구개발 ② 사업성격: <input type="checkbox"/> 일반사업 <input type="checkbox"/> 패키지형 사업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비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사업목적						
서비스유형 ※보건복지부 작성	<input type="checkbox"/>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input type="checkbox"/> 아동정서발달 <input type="checkbox"/> 아동체험학습 <input type="checkbox"/> 렌탈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아동발달 <input type="checkbox"/> 아동돌봄 <input type="checkbox"/> 부모학교 <input type="checkbox"/> 맞춤형 운동처방 <input type="checkbox"/> 아동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고령자 소외예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기간	2011. . ~ 2012. 1.(개월간)			사업개시 (예정)월	2011. 월		
시도개발 및 시군구공동사업 대상시군구	시도명	시군구명	총사업비 (A+B+C)	국고(A)	지방비(B)	기타(C)	이용자 수 (예산인원)
2. 서비스내역	서비스 제공내용	번호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량		
					제공주기	제공횟수	1회당 제공시간
		1.			월 회	주 회	시간
		2.			월 회	주 회	시간
		3.			분기	회	
서비스 제공(가능) 기관	1		운영주체별 기관수	<input type="checkbox"/> 공공()개소, <input type="checkbox"/> 영리()개소,			
	2			<input type="checkbox"/> 비영리()개소, <input type="checkbox"/> 대학()개소, <input type="checkbox"/> 기타()개소			
	3		공급인력의 자격필요 여부	<input type="checkbox"/> 필요 (자격명:),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4						
3. 지원기준	이용자 선정기준	개요					
		연령	소득	재산			
		장애	가구특성	※ 예상이용자수(월)		○○명	
	이용자 우선순위	기타육구					
		우선순위	우선순위 내용				
1.							
	2.						
	3.						
4. 바우처내역	바우처 지원액(월별)	공급가격(계) (A=B+C)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액) (B)		본인부담금 (C)		
		천원	천원		천원		
	이용자 지원기간	개월	총 생성횟수	회			
생성주기	<input type="checkbox"/> 1회(없음) <input type="checkbox"/> 1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2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3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4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6개월마다						
5. 성과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지역개발형) 사업계획서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 서비스 대상
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5. 서비스 제공
6. 성과 목표 및 지표
7. 소요 예산

II. 사업 타당성 검토

1. 사업아이템발굴의 타당성
2.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3. 사업계획 내용의 타당성
4.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III. 기타 특이사항

<별첨 1> 서비스 원가 및 유사가격 현황표

<별첨 2> 현금·현물 추가투자확약서

<별첨 3> 사업 총괄 계획서(패키지형 사업)

사 업 명

I.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1.2 서비스 대상

- 1) 서비스 수요 추계
 - 잠재 서비스 대상 등
- 2) 선정 기준
- 3) 선정 우선순위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2) 서비스 제공절차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 1) 서비스 가격
- 2)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3) 바우처 관리(전자 바우처)
 - 이용자 지원기간
 - 바우처 형태 및 생성 주기
 - 바우처 생성 기간(특정기간에 한정되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총 생성 횟수

1.5 서비스 제공

1) 제공 가능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공급인력 수	비고
영리				
비영리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청년사업단 필수 기재 사항] 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목표 인원

채용 목표인원(명)	채용인원 중 청년(20~30대) 채용 목표인원 (명, %)	비고
명	명(%)	

- 제공인력 자격 요건

- 서비스 공급 가능인력현황 및 수급 방안(청년사업단은 20~30대 채용 가능인력 현황 및 수급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 지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②		
③		
④		

2) 성과지표 측정방법

지표명	측정방법	성과 측정 계획
①		
②		
③		
④		

1.7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대응투자 등
			※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액		

- 산출내역 :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신활력지역 80%

II. 사업 타당성 검토

1. 사업 아이템 발굴의 타당성
2.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3. 사업 계획내용의 타당성
4.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III. 기타 특이사항

【참고】 사업계획서(서식 30) 작성요령

① 사업명

- 서비스 이용자가 사업 내용을 쉽게 알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 사용
- 15자 내외로 간략히 작성
- 단편적인 서비스 내용을 사업 제목으로 하거나, 중복 논란 소지 또는 소위 “사치재”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제목 등은 지양
 -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효과 등을 고려, 작성

<< 예시 >>

- ▶ 아동 클래식 교육 서비스(x)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 노인장애인여행서비스(x) →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②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략히 제시
- 단순 나열식 기술은 지양
 - 사업 취지, 사회투자효과 등과 연계하여 기술

<< 예시 >>

-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 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 수 추계
 - 추계시 사용한 자료의 출처 명시

<< 예시 >>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 소득 이하 만 18세 이하 아동 중 인터넷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잠재 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 1단계 : 6,675명(57,837가구/1.3명×24.2%×62%)

☞ 00지역 3-14세 아동 수 : 57,837명, ☞ 가구당 아동수 : 1.3명(05년 통계청)

☞ 인터넷 중독 치유를 위한 해당 가구의 서비스 요구도 : 24.2%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비율 : 62%

· 2단계 : 827명(6,675가구×12.4%)

☞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률 : 12.4%(10년, 행정안전부)

2) 선정 기준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이용자의 연령, 건강상태, 장애유형, 서비스 욕구 및 가구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 모호한 표현은 지양

<< 예시 >>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전국평균가구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0~6세 미만의 영유아로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기타 본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 유아교육기관장,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3) 선정 우선 순위

- 서비스 초과 수요 등에 대비,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 순위 기재(선착순 등은 지양)

<< 예시 >>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1순위 : ADHD, 정서불안, 학교부적응, 은둔형 외톨이

- 2순위 : 한부모 가정 아동, 조손부모 가정 아동, 북한이탈주민

- 3순위 : 기초수급자, 차상위 가정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기본적인 서비스 종류, 정의, 범위, 서비스제공시간, 서비스제공횟수 및 제공절차 등 기재(필요시 그림, 도식 등을 활용)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기본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가능
- 결정통지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장애아동 휠체어 대여서비스 → 장애아동 휠체어 대여 서비스(×))
- 사업 취지와 무관하거나, 필요성·투자 효율성이 낮은 서비스 제공 사양
 - ☞ (예시)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심리상담(EAP)서비스 → 단순 관광·여행서비스(×)

<< 작성 예시 >>

▶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 서비스 제공 주기 : 주1회, 1회당 50분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및 놀이·언어·인지·미술프로그램 중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 이상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 제공방법 : 아동이 직접 제공기관을 방문(이동의 편의를 위해 별도 차량 지원)
- 제공 절차
 - (1단계) 아동의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선정
 - (2단계)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조사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 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시장가격, 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 적정 가격 산정
 - 지역내 시장질서를 교란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해당 사업·기업이 유지될 수 없거나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제공, 손해·배상보험, 사회보험가입 등이 준수되도록 유도
- 산정 근거 자료 반드시 제출

- ※ 시장 미성숙, 유사 서비스 부재 등으로 원가 분석, 유사서비스 가격 산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미제출 허용
- 다만 이 경우에는 목표임금 수준, 적정 이윤율 등을 활용한 가격 산출 근거 제시
 - ☞ (예시) 서비스 가격 : 11천원(**【월평균 예상 매출액(7천만원/7개월) ÷ 필요인력 수(100명/10명) ÷ 100만원】** × 적정이윤율(1.1))

2)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정부 지원액

- 월 단위 “정액”으로, 월 최대 20만원이 넘지 않도록 설계
 - 다만 사업 성격,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전제로 정부 지원액 상향 조정 가능
 - ☞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사유 명시
- 1 사업 1 지원단가 원칙
- 한번 설정된 정부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는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부과하여야 함
 - 사업 여건 변화, 제공기관간 경쟁 등으로 서비스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본인 부담금이 0이 된 경우 정부 지원액 인하
- 본인부담금 비율
 -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 가격의 20% 내외로 지자체에서 자율 설정하되, 기초수급자, 차상위(최저 생계비 120% 이내) 등 10% 내외 설정 가능,
 - 이용자 특성, 서비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본인부담금 비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을 전제로 본인부담 비율 인하 가능(☞ 사업 계획서에 해당 사유 명시)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소득 수준·서비스 욕구 등을 감안한 본인부담금 차등화 가능
 - * 정부 지원액 차등 지원은 불가

3) 바우처 관리

□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월(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이용자별 지원 기간까지임
 - 서비스 개시월 : 바우처 신청전송 익월
 - ※ 바우처가 최초로 생성되어 서비스 이용 가능월을 의미하며,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 등과는 무관
 - ☞ (예시) 2011.2.10일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3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개시월은 2011.3월임
 -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9개월간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별 판정유효기간은 9개월임
- 1인당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가능
 -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업에 한해 1회(12개월+12개월)에 한하여 재판정 가능

□ 바우처 형태 및 생성주기

- 바우처 형태 : 전자 바우처
- 바우처 성격
 - 바우처 생성 주기 : 해당 이용자별 서비스 개시월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주기 (1회, 1개월마다, 2개월마다 등)
 - 총 생성횟수 : 이용자 지원기간 ÷ 생성 주기
- 서비스 제공이 특정 기간(예 :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에 한정되는 경우 사업 기간 반드시 명시(예 : 7~8월, 11~12월)

1.5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

- 기관성격(공공, 비영리, 민간), 기관명, 소재지, 제공인력 수 등
- 인근 지역 제공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명시
- 참여 민간기업의 대응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교”란에 예상대응 투자 규모, 방법 등을 기재하고, “현금·현물 추가투자확약서” 제출

- 복지관, 복지 법인외에 대학, 민간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참여 적극 유도
-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2개 이상 제공기관 지정 원칙
 - 다만 서비스 성격, 지역적 특수성 등으로 2개 이상 제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1개 기관 지정 허용(반드시 사유서 제출)
 - ☞ 수시 공모 등으로 제공기관 지정 지속 확대 노력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요건 및 수급 방안 명시

-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 설정
 -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시간 교육이수자를 제공인력으로 인정
- 서비스 제공 필요 인력
 - 월 평균 이용자 수 ÷ 제공 인력 1인당 월 최대 제공 가능 인원
-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자활 근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불가
 - ☞ 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산정시 해당 근로자는 제외
 - ☞ 다만 바우처 사업 참여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가능
 - ☞ 단,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은 제공기관으로 참여 가능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 사업단 구성 및 회계 등 관리 분리 운영 원칙
- 제공인력 수급 계획 수립
 - 제공 가능인력 충분한 경우 전환배치 등 제공인력 활용 계획 수립
 - 제공인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훈련 등 확보 방안 마련
 - ☞ 사업시행초기의 경우 공급인력의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으며, 先 현장투입-後 보수교육 가능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설정

- 창출된 일자리 수, 서비스 만족도 등은 반드시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 지표 1~2개 추가 제시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시 감점 조치

<< 예시 >>

▶ 아동 정서순화 프로그램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아동의 정서순화 촉진	아동 정서순화 정도	10%
② 고용 창출	신규 고용인력수	100명
③ 시장화 촉진	추가 서비스 구매액	총 매출액의 10%
④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만족이상 80%

2)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예시 >>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측정 계획
① 아동 정서순화 촉진	(12개월 이용아동 점수-서비스 제공전 점수)/서비스 제공전 점수	서비스 계약일 당시 1차 측정, 12개월 종료전 2차 측정 실시
② 신규 고용인력수	사업 기간 중 새로이 고용된 인력 수	제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 임금 지급 현황 등 조사
③ 추가 서비스 구매액	(제공기관 총매출액-바우처 지원 이용자 구매액)/제공기관 총매출액	제공기관 매출정보 확인
④ 서비스 만족도	조사기관에 의뢰, 서비스 만족도 조사	2개월마다 조사 실시, 1년후 평균값으로 확인

1.7. 소요 예산

- 지방비 매칭 비율 등을 고려, 2010년 소요예산 산출
- 지자체 추가 부담, 민간 대응 투자 등이 있는 경우 별도 명시(선정시 우대)
 -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협약서, 기타 확인 가능 서류 별도 제시

③ 사업 타당성 검토

2.1 사업 아이템의 타당성

- 기본 방향(☞ “Why” 추진해야 하는가?)
 - 사회적 욕구·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성, 정부 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작성
- 고려사항
 - 국가·사회적 심각성 또는 지역여건·주민 수요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성
 - 정부 투자 효율성·높은 우선 순위
 -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인적 자본 투자 등을 통한 국가 전체 생산성 향상 등에의 기여 가능성
 - 서비스 시장·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통한 기존 시스템 효율화 가능성 등
 - 국내외 사례, 각종 통계자료 등 객관화된 자료 최대한 제시

2.2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 현재 추진 중인 지역내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내용, 대상, 범위 등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
 - 중복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선정에서 후순위 또는 배제될 예정이므로 최대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명기

2.3 사업 내용의 타당성

- 기본 방향

- 이용자 선정 기준, 서비스 가격 및 내용 등 사업 계획의 각 내용들이 수요자의 욕구나 사업 취지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고려사항

-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욕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용자 선정 기준·우선순위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 자격 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 서비스 내용, 제공량, 제공 절차 등이 이용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 절차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질적수준확보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서비스 모니터단 운영 계획, 서비스 질 평가 계획) 등
- 시장 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원가 등을 감안, 서비스 제공 가격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정부 지원액, 본인부담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 ☞ 특히 본인부담비율이 20%미만인 경우 필요성 등 명시
- 성과 목표나 지표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

2.4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기본 방향

- 사업 성격,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시 예상 가능한 장애요인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 제시

□ 고려 사항

- 이용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시 대책
 - 서비스 홍보 강화, 공급기관 등을 활용한 이용자 발굴 확대, 선정기준 완화, 신청 기한 연장, 본인부담을 인하 등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시 대책

- 분기별·반기별 이용자 모집, 이용자 선정시 우선 순위 설정, 본인부담율 인상 등을 통한 신청 및 이용억제 등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공급기관 지정시 추가 인력 확보 의무 부과, 경력자나 유급봉사원 활용 등 공급인력 모집 및 교육 방안, 임시 투입인력 확보 방안 등
- 덤핑 또는 담합의 가능성 및 대책
 - 공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서비스의 질 담보 방안, 덤핑 또는 담합시 규제 방안(경고, 지정 취소 등) 등 대책 명시
- 기타 지역별, 서비스별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제시

④ 기타 특이사항

- 사업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특이사항 등 기재
 - 민관협력체계 구축, 별도 조직 구성이나 전담인력 확보 등
- * 사업선정기준(안) : 붙임 1)

사업 계획 작성 CHECK LIST

점검 항목	세부 내용	점검 여부
사업계획 일반	① 사업 계획서가 전반적으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인용자료 및 데이터가 정확하고 출처가 명기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사업 계획서 각 항목들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④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사업 아이템 발굴	① 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하는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 얻을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정부 투자 이외에 민간 주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국가, 공동모금회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 등과 사업아이템·이용자 중복 가능성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④ 지역의 특성, 주민 수요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⑤ 사업 추진시 장애 요인은 없는가? 극복가능한 장애요인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⑥ 단편적·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서비스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⑦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가?(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이용자 선정기준 설정	① 지역내 잠재 수요자는 얼마나 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가? 서비스 욕구가 가장 높은 계층은 누구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서비스 욕구, 예산확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 규모는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④ 선정 기준의 형평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서비스 내용 및 제공	① 서비스 제공 목적·욕구, 서비스 제공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및 시간 등은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욕구 사정, 서비스 연계 등 제공 절차가 적절하며, 공정한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④ 서비스 질은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⑤ 이용자 규모에 대응해 제공인력은 충분히 확보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⑥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인력에 대해 별도 자격 구비, 교육 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할 필요는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서비스 가격	① 서비스 원가 등을 반영한 서비스 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서비스 시장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덤핑 판매, 독점 등 공정 경쟁 저해 요소는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④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성과 지표 및 측정방법	① 성과 목표가 사업 취지나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각 성과 지표별 측정방법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측정 주기, 시기, 방법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④ 객관적이고 공정한 측정이 가능한가?(가급적 계량화된 지표 활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서식30-1]

붙임 1) 신규사업 선정 기준(안)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 아이템		10	- 지역 특성, 주민 수요 반영 여부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또는 독창성 - 해당 서비스의 절실성·긴급성 - 사회투자 측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의 부합여부 등
계획 내용의 충실성		15	-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구체성 - 근거 자료의 신뢰성·객관성 - 계획 내용의 사업 성격에의 부합성 - 성과 지표의 타당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서비스 대상(수요)	15	- 서비스 대상과 사업내용과의 부합성 - 수요 추계의 객관성·합리성(근거자료 제시 등) - 선정 기준의 적정성 - 수요자 확보 전략의 타당성 - 조사·선정절차의 실현가능성 등
	서비스 공급	15	- 공급 가능 기관 및 공급 인력의 적정성 - 지역내 서비스 공급 능력 및 공급인력 확보 정도 - 공급인력 및 기관 확보 전략의 타당성 - 공급기관 모니터링 및 품질 확보 방안 등
	바우처 지원단가 산정의 적절성	10	- 서비스 가격 산정의 타당성 - 바우처 지원 단가 및 본인 부담 산정의 적절성 등
	장애요인 극복 방안	5	- 사업 추진시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의 타당성 등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10	- 민간기업 및 제3자의 대응투자 여부 및 규모 등 - 지자체 전담조직 정비 및 업무조정 여부(지역사회서비스혁신 협의체 등) - 지자체의 사업 수행 의지 등(광역 또는 초광역 사업 여부, 지자체 자체부담 여부)
민간 참여		5	- 지역내 민·관·산·학 입체적 참여여부 사업 개발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등 민간 참여 여부 등
기대효과		15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질 개선정도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규모(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 가입 등) - 사업 실시에 따라 기대되는 부가적 효과 등
총점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당해연도(차수) 신규사업 선정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서비스 원가 및 유사 서비스 가격 현황표

1. 개요

- 1) 서비스 명 :
- 2) 서비스 가격(=정부지원액 + 본인부담금) :
- 3) 목표인원 : 000명
- 4)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수 : 00명

2. 서비스 원가구조

구분	원가 항목	세부 항목	총액(천원)	1인당(천원)	비율	비고	
예상매출액 (a) (총투입예산 + 예상 추가구매액)	-	-			100%		
	합계	-					
서비스 원가(b)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소계)					
		홍보비					
		감가상각비					
		000비					
:							
영업이익(c=a-b)	-						

※ 원가 구조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적시

3. 타사 또는 기존 자사 유사 서비스와의 가격비교

기관명	지역	전화번호	서비스 가격	비고

현금·현물 추가투자 협약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선정시 우대 요건)

사 업 명			
지자체명 (또는 민간 기관명)		담당자	

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 추가 투자 금액 : 천원

○ 현금 : 천원

○ 현물 : 천원

나. 투자 예정일 : 년 월 일

다. 현물출연 상세 내역

구분		금 액 (천원)	
총액			
세부 내용	장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토지·시설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기타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 붙임 : 현물출연내역 증빙

년 월 일

(지자체장, 민간기관 장) (대 표) 직인

(붙임 1)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 매뉴얼 [제공기관용]

2011년도



목 차

1. 설문 응답

[1] 응답 목록 조회

[2] 설문 응답 입력

[2]-1. 개별 등록

[2]-2. 일괄 등록

2. 설문결과확인(분석)

[1] 설문결과 확인

[2] 설문분석

[2]-1. 기본분석

[2]-2. 빈도분석

[2]-3. 교차분석

[2]-4. 기타 분석(만족도, 응답자 분석)

[3] 만족도 추이 및 현황 분석

1. 설문 응답

[1] 응답 목록 조회


▶ 화면경로 : 홈 > 로그인 > 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 > 설문관리 > 응답관리




▶ 업무화면(사업구분, 설문유형 등의 조건을 선택하여 검색 가능합니다.)



▶ 화면 설명

- 진행상태 : “설문진행”은 응답 가능하나, “설문완료”은 데이터 조회만 가능합니다.
- 설문받기의  을 클릭하면, 해당 설문지를 한글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설문 응답 입력

- ▶ 「설문응답관리」 화면에서 해당 설문 제목을 클릭하면 「등록자 정보확인」 창이 나타납니다. 등록자 정보 입력 후,  을 클릭하면 설문응답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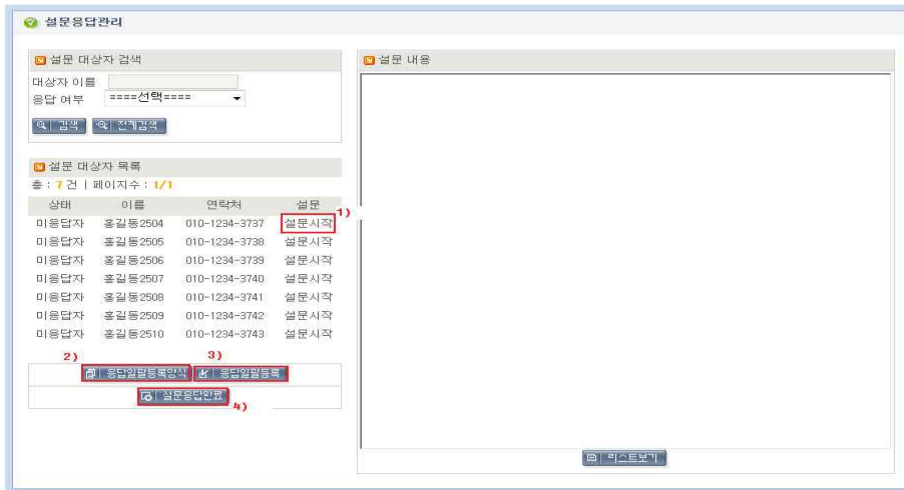


등록자 정보확인

제공기관명	빛과소금복지재단
등록자이름	김길동
전화번호	
등록자이름(메모)	한소라 *
전화번호(메모)	010-4462-421 *
휴대전화	

▶ 업무화면



설문응답관리

설문 대상자 검색



대상자 이름:


응답 여부:


설문 대상자 목록

총: 7 건 | 페이지수: 1/1

상태	이름	연락처	설문
미응답자	홍길동2504	010-1234-3737	설문시작 ¹⁾
미응답자	홍길동2505	010-1234-3738	설문시작
미응답자	홍길동2506	010-1234-3739	설문시작
미응답자	홍길동2507	010-1234-3740	설문시작
미응답자	홍길동2508	010-1234-3741	설문시작
미응답자	홍길동2509	010-1234-3742	설문시작
미응답자	홍길동2510	010-1234-3743	설문시작

2)  

3) 

4) 

[2]-1. 개별 등록

▶ 입력방법

이용자 조회 ⇒ 이용자 상세정보 확인 ⇒ 메모, 접촉이력 등록/수정 ⇒ 답변 등록 ⇒ 임시저장 또는 설문완료 ⇒ (모든 이용자 완료 후) 제공기관 설문응답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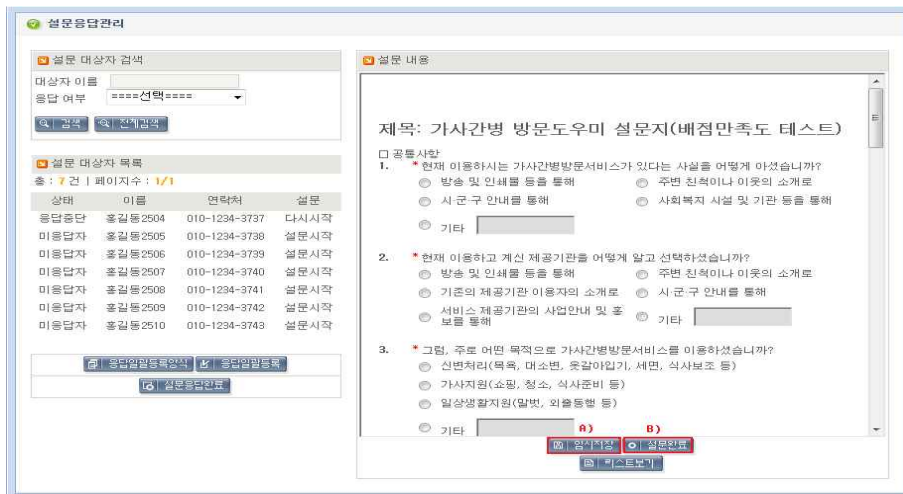
- 이용자는 이용자 이름, 응답 여부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좌측) 「설문 이용자 목록」에서 “설문 시작”을 클릭하여 「이용자 상세정보」창이 나타나면, **설문시작** 을 클릭하여 설문 입력을 시작합니다.

★ 「이용자 상세정보」 : 설문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메모’ 및 ‘접속시도’ 정보 저장 가능

- 오른쪽 「설문 내용」 창의 설문 화면에 응답을 입력합니다. (*표시는 필수응답)
- 설문을 A) “임시저장” 또는 B) “설문완료”할 수 있습니다. (최종 완료 전까지 수정 가능)

★ 설문 수정 : 이용자 선택 후, 우측 하단의 “설문수정”을 클릭하여 수정/수정 후 “설문완료”

- 모든 이용자 설문 완료 후 좌측창의 **설문응답완료** 를 클릭하면 제공기관 설문을 종료합니다. (* 주의 : “설문응답 완료” 후에는 설문응답 입력 및 수정 불가능함)



▶ 화면 설명

- “설문완료”를 클릭한 이용자는 좌측 설문 이용자 목록에서 “응답자”로 변경됩니다.
- 좌측 설문 완료 이용자의 “답변보기”를 클릭하면 응답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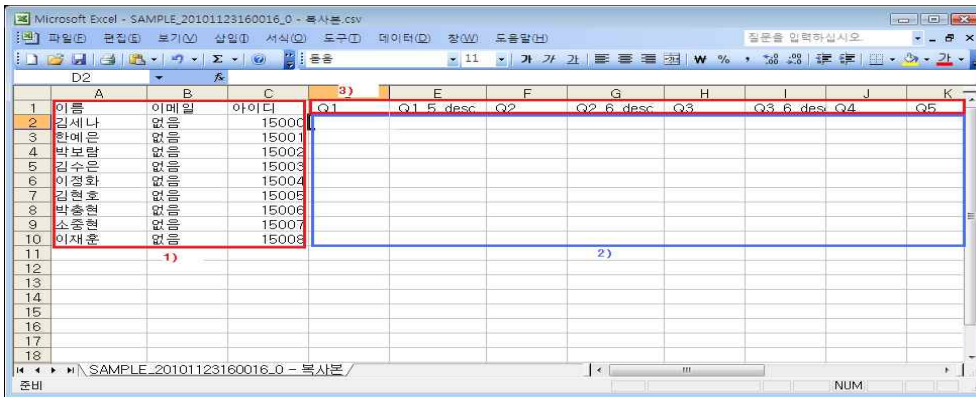
[2]-2. 일괄 등록

▶ 입력방법

이용자 조회 ⇒ 일괄등록양식 다운로드 ⇒ 파일 작성/저장 ⇒ 파일 등록 ⇒ 일괄 등록 결과 확인 ⇒ 제공기관 설문응답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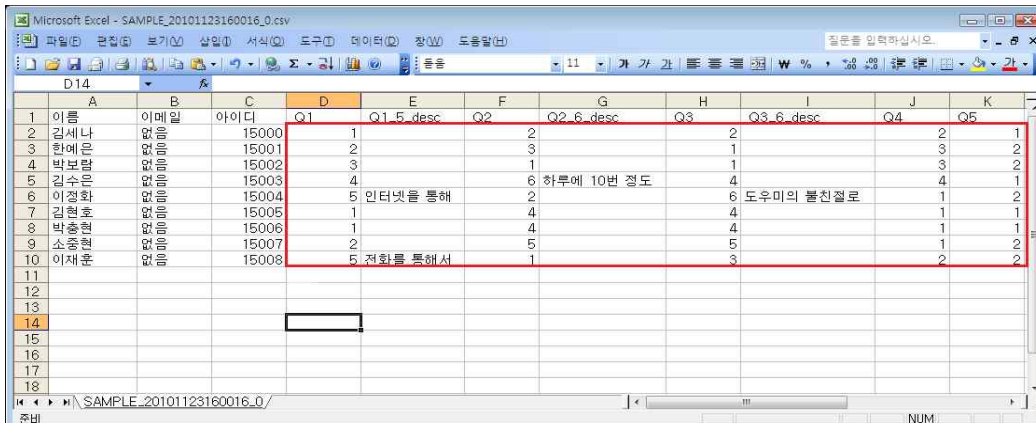
- **답** 응답입력등록양식 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저장한 zip파일은 압축을 풀어 설문응답을 작성하여 다시 저장합니다.

[작성방법] 파일을 열어 Q로 시작하는 부분 아래의 빈칸에 응답 값을 입력합니다.(하단 그림 2)
 * 기본정보(이름, 이메일, 아이디)는 작성되어 있으며(하단 그림 1), 모든 문항을 필수응답이므로 모든 값을 기입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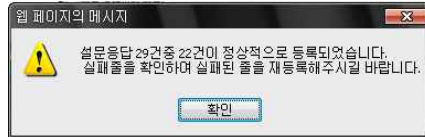


- Q옆의 숫자는 문항의 순서를 의미합니다.(기본적으로 숫자만 입력 가능)
 예) Q1 : 첫 번째 문항, Q3 : 세 번째 문항
- Q문항순서_보기번호_desc : 숫자, 문자 응답이 가능합니다.(추가 응답 항목)
 (* 첨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Q12_5_desc : 설문의 5번째 보기가 '기타 ()'로 되어 있는 문항으로, 추가응답 기입 가능

※ 일괄응답 엑셀파일 작성 예



- 설문응답관리 창의 **답** 응답입력등록 을 클릭하여 작성한 엑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설문 응답파일 업로드 창에서 **저장** 을 클릭하면 결과 알림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문응답 일괄등록 결과보기」 창에서 상세결과 목록(실패리스트)을 확인합니다.



- 재등록 : (성공한 응답자 행은 응답엑셀파일에서 삭제하고) 실패한 응답자의 응답 파일을 수정한 후, 다시 일괄 등록합니다.
-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설문을 완료하였을 때 좌측창의 **설문응답완료**를 클릭하면 해당 설문을 완료합니다.
- ※ 주의 : “설문응답완료”를 한 후에는 설문응답 및 응답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설문결과확인(분석)

[1] 설문결과 확인

- ▶ 화면경로 : 홈 > 로그인 > 온라인모니터링 시스템 > 분석 > 설문분석
- ▶ 업무화면



▶ 조회처리방법

- 등록자, 설문제목 등을 입력·선택하여 설문분석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설문제목”을 클릭하여 설문분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기존 분석결과 확인방법([2]-2~4의 분석 수행결과 확인)

- **결과목록**을 클릭하면 기존에 저장해놓은「설문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단의 리스트에서 분석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2] 설문분석

기본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만족도 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빈도분석, 교차분석은 분석대상을 선택 후 “분석 실행”, “결과 저장”이 가능합니다.)

[2]-1. 기본분석

- ▶ 기능 : 설문의 기본정보, 설문지표, 설문 집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측 상단의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Excel저장, 설문 RowData저장, 설문지보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설문 RowData 저장** : 설문 결과 전체가 압축된 ****.zip 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 업무화면

기본정보

설문제목	1만명 설문 테스트		
목표응답 수	없음	설문조사 기간	2010-10-27 ~ 2010-10-30
설문유형	제공기관만족도조사	설문상태	설문완료
등록자	admin	등록일	2010-10-27 13:38:33
수정자		수정일	

설문지표

총 설문 참여자 수	4명	설문 완료 응답자 수	4명
포기률	0.00%	응답률	100%
전체문항개수	6 문항	완료자 평균응답시간	6 초

[2]-2. 빈도분석

▶ 기능 : 문항별로 선택한 조합의 응답 간의 빈도를 볼 수 있습니다.

- 분석 대상 문항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후 **분석실행** 을 클릭합니다. (복수 선택 가능)

▶ 업무화면

기본정보

설문제목	1만명 설문 테스트		
등록자	admin	등록일	2010-10-27 13:38:33
설문조사경로	이메일	설문상태	설문완료
총 설문 참여자 수	4명	설문 완료 응답자 수	4명

* 아래 문항 목록에서 분석할 문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의 선택 가능 합니다.)
 -주관식, 다답형, 개인정보 문항은 분석대상 문항에서 제외 됩니다.

문항목록

1. 현재 이용하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2. 현재 사용하고 계신 제공기관을 어떻게 알고 선택하셨는지
3. 그림, 주로 어떤 목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십니까?
4. 노인돌봄서비스 불모지의 친절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5. 노인돌봄서비스 불모지가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십니까?
6.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제때 제공되었는지

문항목록

분석실행 뒤로

- 결과 저장 : 「분석리포트」 화면의 **결과저장** 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분석결과 저장」화면에 제목, 설명, 결과설명 등을 입력한 뒤 **결과저장** 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 저장 결과는 분석 첫 화면에서 **결과목록** 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5p 참조)

[2]-3. 교차분석

▶ 기능 :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응답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 분석 대상 문항을 오른쪽 해당칸으로 이동 후 **분석실행** 을 클릭합니다.
(독립변수는 1개, 종속변수는 2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주관식 문항 등은 제외)

▶ 업무화면

기본분석 | 빈도분석 | **교차분석** | 만족도분석 | 응답자분석

기분정보

설문제목	1만명 설문 테스트	설문조사 기간	2010-10-27 ~ 2010-10-30
등록자	admin	등록일	2010-10-27 13:38:33
설문조사경로	이메일	설문상태	설문완료
총 설문 참여자 수	4명	설문 완료 응답자 수	4명

* 아래 문항 목록에서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독립 변수 문항은 1개, 종속 변수 문항은 2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관식, 다답형, 개인정보 문항은 분석대상 문항에서 제외 됩니다.

문항목록

- 1. 현재 이용하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 2. 현재 이용하고 계신 제공기관을 어떻게 알고 선택하셨
- 3. 그럼, 주로 어떤 목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
- 4. 노인돌봄서비스 불보미의 질적성에 대해 만족하십니
- 5. 노인돌봄서비스 불보미가 얼마나 능숙하게 처리하는가
- 6.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제때 제공되었

독립변수

1. 현재 이용하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종속변수

2. 현재 이용하고 계신 제공기관을 어떻게 알고 선택하셨

- 결과 저장 : 저장 및 결과 확인 방법이 상단의 '[2]-2. 빈도분석'과 동일함

[2]-4. 기타 분석(만족도, 응답자 분석)

▶ 만족도 분석

- 문항 중요도를 점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행,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결과 확인 : 5p 참조)

▶ 응답자 분석

- 개별 응답자 현황을 분석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에서 이용자를 선택한 후 “응답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선택된 이용자의 설문응답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만족도 추이 및 현황 분석

▶ 화면경로 : 온라인모니터링 시스템 > 분석 > 만족도 추이분석 또는 만족도 현황

▶ 조회처리방법

- 만족도 추이분석 : 사업구분, 설문유형 등을 선택하여 추이를 분석합니다.
- 만족도 현황 : 사업구분, 설문유형 등을 선택하여 개인별 현황을 분석합니다.

[서식 31]

제공기관 운영계획 보고서

1. 사업개요

사업명		최초 사업년도	
제공기관명		대표자명	
일반현황	○ 기관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 사회공헌 실적 및 조직 현황		

2. 제공인력 운영 계획

- 착수현황(채용인력에 대한 자격현황 첨부)

	계획인원			채용인원			
	소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소계			
전임제				전임제			
시간제				시간제			
일용직				일용직			

- * 전임제 : 월 80시간 이상
- * 시간제 : 월 40시간 이상 80시간
- * 일 용 : 월 40시간 미만

- 추가인력 확보계획

3. 제공인력 교육 계획

- 교육계획

월	교육프로그램 내용	교육시기	교육방법
소양교육	-		
직무교육	-		
보수교육	-		

4. 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 시설현황

- 장비현황

5. 서비스 프로그램 현황(연간 제공 계획)

구분	주제	내용	서비스기간

- 서비스 가격(원)
 - 본인 부담금 : 원
 - 정부 지원금 : 원

6. 사업성과 관리 계획

- 자체 성과 지표(예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아동의 정서순화 촉진	아동 정서순화 정도	20%
② 고용 창출	신규 고용인력 수	5명(컨소시엄 기관 당)
③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지침에 근거 한 점검표	서비스 제공기관의 80%
④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만족이상 70%

- 성과지표 측정방법(예시)

① 서비스수혜자수		
양적 평가	성과지표	서비스 수혜자수
	측정방법	사업기간 중 바우처 지원자수 측정
	측정산식	월간 바우처 지원자수 합산
	자료수집방법	바우처 발급 실적 및 사용실적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없음
② 정서 및 인지능력 향상		
질적 평가	성과지표	자아개념, 자기통제력의 유의미한 향상
	측정방법	사업기간 중 표준화된 검사 실시
	측정산식	서비스 전, 중간, 사후의 사회성 및 인지발달 비교
	자료수집방법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개별 면접조사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없음

③ 바우처 추가구매 액		
바우처 평가	성과지표	서비스 수혜자수
	측정방법	사업기간 중 바우처 지원자수 측정
	측정산식	월간 바우처 지원자수 합산
	자료수집방법	바우처 발급 실적 및 사용실적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없음
④ 신규 일자리 수		
사회서비스 고용확대 평가	성과지표	신규 일자리수
	측정방법	사업기간 중 신규 고용자수
	측정산식	서비스제공조직의 전문자격 보유수
	자료수집방법	자격증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없음

- 측정시기(예시) : 10월, 사업종류 후

7. 컨소시엄 현황

- 기관별 역할

구 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요기능		
공급범위		
인력확보 현황		

- 사업수행체제(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작성)
- 이익 배분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 협약서 별첨

8. 기타 사업운영 방안

- 사업 특화 방안, 기타 서비스 관련 추가 사항 등

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 제공기관 지정 결과 보고(☞ 서식 26)

[서식 32]

사업추진 실적(현황) 보고서

1. 사업개요

사업명		최초 사업년도	
제공기관		대표자	
주요사업 내용요약	○ ○		

2. 추진내용

월	추진 내용	비고
2월		
3월		
4월		
5월		

※ 내부적인 사업진행 이력, 사업 변경(내용, 예산 등) 이력, 외부기관 점검 및 지원 내역 및 대응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사업추진 실적

- 이용자 및 수익관리(월별 전산 실적으로 대체)

구분	목표		실적			
	인원	예산 (국비+지방비)	인원	실적	바우처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일반이용자						
계						

○ 일자리실적(월별 전산 실적으로 대체)

	계	정규직	계약직	평균 근로시간	평균보수	4대보험 가입여부	평균 교육시간
계							
전임제							
시간제							
일용직							

- * 전임제 : 월 80시간 이상
- * 시간제 : 월 40시간 이상 80시간
- * 일용 : 월 40시간 미만

○ 수익집행 현황

(단위 : 원)

구분	총계	보조금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대응투자금
수익					
지출					
인건비			* 월급, 상여금 등 인건비 성격 지출 작성		
재료비			* 서비스제공을 위해 집행된 제반 경비 작성		
시설투자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차료 등에 투자 경비		
교육홍보비					
사회보험료					
이익금					

4. 사업효과 평가 보고

○ 사업효과성 평가

구분	목표	실적	목표달성율	비고
행동변화 등				
개선율.. 등				

○ 문제점 및 개선사항(정성적 작성)

작성일자	yyyy.mm.dd	작성자 (사업담당자)	
확인일자	yyyy.mm.dd	확인자 (사업책임자)	



참고자료

[참고자료 1] 가구별·소득 수준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고자료 2] 단말기 가입 및 사용 관리

[참고자료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참고자료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 1]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25천원	22,115	4,319	23,089
		23,564	4,602	24,601
2인	1,314천원	38,136	23,550	38,730
		40,634	25,093	41,267
3인	1,903천원	55,318	49,541	56,013
		58,941	52,786	59,682
4인	2,194천원	63,724	63,488	63,993
		67,898	67,646	68,185
5인	2,351천원	68,530	71,124	69,408
		73,019	75,783	73,954

※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157천원씩증가(157천원=5인-4인=2,351-2,194)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450천원	42,467	28,901	43,109
		45,249	30,794	45,933
2인	2,629천원	76,899	82,987	77,814
		81,936	88,243	82,911
3인	3,806천원	110,591	129,317	112,134
		117,835	137,787	119,479
4인	4,387천원	128,582	149,223	130,621
		137,004	158,997	139,177
5인	4,702천원	137,050	158,411	139,380
		146,027	168,787	148,509

※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315천원씩증가(315천원=5인-4인=4,702-4,387)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40천원	50,796	42,151	51,424
		54,123	44,912	54,792
2인	3,155천원	92,191	105,179	93,236
		98,230	112,068	99,343
3인	4,567천원	132,739	153,722	134,956
		141,433	163,791	143,796
4인	5,265천원	153,968	177,010	156,758
		164,053	188,604	167,026
5인	5,642천원	166,076	190,158	169,524
		176,954	202,613	180,628

※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377천원씩증가(377천원=5인-4인=5,642-5,26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 장	지 역	혼 합		직 장	지 역	혼 합
346,144	10,038	2,205	13,837	2,000,000	58,000	53,968	58,137
477,144	13,837	2,375	15,800	2,004,709	58,137	55,061	58,879
544,843	15,800	2,592	17,601	2,030,325	58,879	56,050	59,636
606,941	17,601	2,743	19,212	2,056,413	59,636	57,041	60,353
662,469	19,212	3,335	20,296	2,081,155	60,353	57,910	60,898
699,855	20,296	3,392	21,015	2,099,943	60,898	59,040	61,483
724,639	21,015	3,469	22,115	2,120,113	61,483	60,066	62,288
762,587	22,115	4,319	23,089	2,147,863	62,288	61,170	63,026
796,172	23,089	4,912	23,200	2,173,310	63,026	62,301	63,724
800,000	23,200	5,882	23,493	2,197,390	63,724	63,488	63,993
810,113	23,493	6,435	24,407	2,206,643	63,993	64,534	64,799
841,628	24,407	6,677	24,858	2,234,451	64,799	65,476	65,563
857,175	24,858	7,431	25,509	2,260,792	65,563	66,704	66,444
879,605	25,509	7,474	26,083	2,291,165	66,444	67,813	66,893
899,418	26,083	7,875	26,100	2,306,657	66,893	68,987	67,692
900,000	26,100	8,519	26,100	2,334,194	67,692	69,789	68,530
900,000	26,100	9,085	26,168	2,363,094	68,530	71,124	69,408
2,349	26,168	9,506	26,380	2,393,387	69,408	72,056	69,839
909,638	26,380	9,519	26,792	2,408,243	69,839	73,294	70,714
923,847	26,792	9,519	27,098	2,438,409	70,714	74,024	71,622
934,397	27,098	9,815	27,525	2,469,721	71,622	74,918	72,420
949,132	27,525	10,683	27,769	2,497,230	72,420	75,976	72,578
957,537	27,769	11,272	28,257	2,502,680	72,578	77,194	73,352
974,367	28,257	11,555	28,421	2,529,372	352	78,281	74,268
980,039	28,421	11,555	768	2,560,956	74,268	79,494	75,168
991,991	28,768	11,739	29,000	2,592,017	75,168	80,575	75,941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 장	지 역	혼 합		직 장	지 역	혼 합
1,000,000	29,000	11,920	29,000	2,618,638	75,941	81,799	899
1,000,000	29,000	12,467	29,000	2,651,705	76,899	82,987	77,814
1,000,000	29,000	13,261	29,000	2,683,237	77,814	84,176	78,444
1,000,000	29,000	13,399	29,000	2,704,957	78,444	85,453	79,360
1,000,000	29,000	13,662	29,035	2,736,536	79,360	86,654	80,327
1,001,223	29,035	13,732	29,520	2,769,884	80,327	88,033	81,243
1,017,944	29,520	14,707	30,143	2,801,476	81,243	89,318	82,144
1,039,430	30,143	15,297	30,518	2,832,551	82,144	90,699	83,197
1,052,336	30,518	15,297	31,067	2,868,850	83,197	92,108	84,144
1,071,291	31,067	15,372	31,664	2,901,518	84,144	93,491	85,073
1,091,862	31,664	15,929	31,900	2,933,554	85,073	94,851	86,195
1,100,000	31,900	16,694	31,900	2,972,235	86,195	96,268	86,986
1,100,000	31,900	17,446	32,084	2,999,529	86,986	97,708	87,584
1,106,339	32,084	17,507	32,679	3,020,124	87,584	99,130	88,753
1,126,873	32,679	17,507	33,218	60,433	88,753	100,590	89,857
1,145,458	33,218	17,507	33,663	3,098,534	89,857	102,140	91,003
1,160,783	33,663	507	34,276	38,030	91,003	103,665	92,191
1,181,914	34,276	17,549	34,773	3,178,984	92,191	105,179	93,236
1,199,074	34,773	17,881	34,800	3,215,047	93,236	106,778	94,443
1,200,000	34,800	18,621	34,800	3,256,654	94,443	108,372	95,677
1,200,000	34,800	19,483	34,800	3,299,217	95,677	109,956	96,872
1,200,000	34,800	19,964	34,906	3,340,408	96,872	111,616	98,147
1,203,665	34,906	20,812	35,479	3,384,374	98,147	113,237	99,389
1,223,429	35,479	21,255	36,062	3,427,197	99,389	115,006	100,749
1,243,526	36,062	21,678	36,433	3,474,119	100,749	116,649	101,825
1,256,325	36,433	22,174	37,068	3,511,219	101,825	118,427	103,207
1,278,215	37,068	23,038	37,617	3,558,868	103,207	120,177	104,624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 장	지 역	혼 합		직 장	지 역	혼 합
1,297,124	37,617	23,284	37,700	3,607,721	104,624	121,957	106,120
1,300,000	37,700	23,284	37,712	3,659,294	106,120	123,811	107,526
1,300,428	37,712	23,284	38,136	3,707,803	107,526	125,592	109,017
1,315,033	38,136	23,550	38,730	3,759,206	109,017	127,471	110,591
1,335,507	38,730	24,284	39,203	3,813,497	110,591	129,317	112,134
1,351,839	39,203	25,048	39,740	3,866,701	112,134	131,138	113,802
1,370,345	39,740	25,330	40,320	3,924,219	113,802	133,077	115,502
1,390,336	40,320	25,330	40,600	3,982,811	115,502	134,944	117,021
1,400,000	40,600	25,366	40,600	4,035,216	117,021	136,896	118,845
1,400,000	40,600	25,743	40,798	4,098,113	118,845	138,888	120,704
1,406,843	40,798	26,611	41,390	4,162,190	120,704	140,834	122,484
1,427,250	41,390	27,519	41,937	4,223,575	122,484	142,948	124,510
1,446,095	41,937	28,068	42,467	4,293,465	124,510	144,933	126,519
1,464,369	42,467	28,901	43,109	4,362,736	126,519	147,118	128,582
1,486,511	43,109	29,240	43,498	4,433,849	128,582	149,223	130,621
1,499,938	43,498	29,750	43,500	4,504,156	130,621	151,492	132,739
1,500,000	43,500	30,616	43,500	4,577,222	132,739	153,722	134,956
1,500,000	43,500	31,107	43,509	4,653,669	134,956	156,055	137,050
1,500,299	43,509	31,321	43,956	4,725,858	137,050	158,411	139,380
1,515,731	43,956	31,896	44,561	4,806,197	139,380	160,843	141,744
1,536,596	44,561	32,856	45,078	4,887,739	141,744	163,273	144,116
1,554,405	45,078	33,541	45,636	4,969,513	144,116	165,788	146,112
1,573,661	45,636	34,180	46,249	5,038,344	146,112	168,442	148,662
1,594,792	46,249	35,118	46,400	5,126,292	148,662	171,179	151,259
1,600,001	46,400	35,583	46,779	5,215,833	151,259	173,998	153,968
1,613,065	46,779	36,092	47,430	5,309,241	153,968	177,010	156,758
1,635,504	47,430	36,847	47,957	5,405,450	156,758	180,025	159,645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1,653,681	47,957	37,712	48,521	5,504,985	159,645	183,270	162,773
1,673,155	48,521	38,333	49,159	5,612,852	162,773	186,642	166,076
1,695,154	49,159	39,193	49,300	5,726,758	166,076	190,158	169,524
1,700,000	49,300	39,925	49,538	5,845,667	169,524	193,975	173,147
1,708,200	49,538	40,730	50,240	5,970,603	173,147	197,984	177,059
1,732,415	50,240	41,568	50,796	6,105,468	177,059	202,291	181,478
1,751,602	50,796	42,151	51,424	6,257,866	181,478	206,862	186,350
1,773,232	51,424	43,009	52,087	6,425,865	186,350	211,842	191,627
1,796,097	52,087	43,747	52,200	6,607,839	191,627	217,308	197,214
1,800,000	52,200	44,512	52,584	6,800,477	197,214	223,388	203,495
1,813,257	52,584	45,394	53,252	17,072	,495	230,130	210,580
1,836,277	53,252	46,185	53,856	7,261,386	210,580	237,721	218,655
1,857,101	53,856	47,065	54,571	7,539,813	218,655	246,354	228,117
1,881,761	54,571	47,888	55,092	7,866,103	228,117	256,287	239,272
1,899,708	55,092	48,769	5,318	250,765	239,272	267,928	254,166
1,907,517	55,318	49,541	56,013	8,764,359	254,166	282,186	274,657
1,931,493	56,013	50,412	56,741	9,470,915	274,657	300,135	305,051
1,956,582	56,741	51,272	57,500	10,518,996	305,051	324,642	371,813
1,982,768	57,500	52,198	57,994	12,821,141	371,813	363,058	816,519
1,999,801	57,994	53,045	58,000	28,155,828	816,519	527,620	

[참고자료 2]

단말기 가입 및 사용 관리

① 단말기 신청 및 관리

1) 기존 단말기 활용

- 기존에 보급되어 사용하던 단말기(모바일 포함)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일부 기종(MPOS-7700, MPOS-3500, MPOS-7500IC)을 제외하고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
- 기존 단말기 기종은 추가 공급되지 않으며 파손·고장·내구연한 경과 시에는 신규단말기로 신청
 - * 내구연한이 경과한 단말기 3종(MPOS-7700, MPOS-3500, MPOS-7500IC)은 '12. 6. 30까지만 사용가능함에 따라, 해당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제공기관은 대체 신규단말기를 '12년 6월 전에 신청필요
- 모바일 단말기(동글이)는 추가로 공급되지 않으며, 고장 등 교체 필요 시 신규 단말기를 신청

【기존 단말기 사용가능 여부 및 교체시기】

기종	사용가능 시기	교체 시기
MPOS-7700M	~ '12. 6. 30 까지	○ '12년 1월 ~
MPOS-3500M	~ '12. 6. 30 까지	○ '12년 1월 ~
MPOS-7500IC	~ '12. 6. 30 까지	○ '12년 1월 ~
MPOS-8700M	계속사용 가능	○ 파손·고장·내구연한 경과 시 교체
EVT-1000	계속사용 가능	○ 파손·고장·내구연한 경과 시 교체
동글이(결제휴대폰)	계속사용 가능	○ 파손·고장·내구연한 경과 시 교체

- 내구연한 경과전 또는 파손·고장이 아닌 경우에도 제공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가 가능하나, 약정기간 미도래시 위약금은 제공기관에서 부담

2) 결제 단말기 신규 보급

- 단말기 보급 및 A/S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개발원 주도로 단말기를 보급·관리

- 단말기 제작 및 보급 업무를 SK텔레콤에 위탁하고, 정보개발원은 단말기 신청, 등록, 활용 등 현황을 관리

* 단말기 신청, 보급, A/S를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

○ 신규 단말기 보급

- 신규 단말기는 무상으로 공급되며, 제공기관은 월별 통신료만 부담

【현행단말기 및 신규단말기 비교】

구 분		기존단말기	신규 단말기 (현재 공급중)
전용 단말기	통신비	11,000원	7,700원
	약정기간	24개월	24개월
	가입비	24,000원	무상
	편의성	버튼조작방식	터치조작방식, 크기·무게 축소

- 신규 전용단말기는 월 통신료를 낮추고, 무게 및 크기를 휴대폰과 유사하게 축소하여 편의성을 향상

3) 단말기 보유기준

- (이용자 가정 방문형 사업, 서비스) 제공인력 1인당 1대가 원칙이나, 단말기 고장, 제공인력 입·퇴사 등을 고려 제공인력 대비 10% 추가보유 가능

- 제공기관별로 단말기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신규단말기 신청필요

* 예시) A제공기관에 제공인력이 20명일 경우, 사용단말기 20대 및 추가보유 단말기 2대 등 최고 22대까지 보유가능

- (시설집합형 사업,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서비스)의 경우 사업특성에 따라 단말기 결제가 가능한 수량만큼 보유

* 서비스 유형이 가정방문형과 시설집합형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말기 신청

② 신규 단말기 보급

【단말기 신청 및 보급 절차】

단계	업무 내용	업무주체
단말기 신청화면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접속 ①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② 접속화면 좌측 상단에 “차세대 신규 단말기 신청” 클릭 	제공기관
↓		
단말기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단말기 종류(전용, 모바일)별 별도로 구분하여 단말기를 신청 * 개인명의로 단말기를 신청하더라도 제공기관만 신청가능 * (제공기관) 시스템에 신규신청으로 표시 	제공기관
↓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별 단말기 신청 내역을 단말기 재고 수량 확인 후 접수 * (제공기관) 시스템에 접수완료로 표시 	개발원 (SKT)
↓		
서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말기 개통 관련 서류 제출 * 제공기관의 성격 및 단말기 종류에 따라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예시를 참고하여 제출 	제공기관
↓		
서류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별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정확하게 제출된 제공기관에 한해 서류접수를 완료 * (제공기관) 시스템에 개통준비로 표시 	개발원 (SKT)
↓		
단말기 개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된 단말기를 보급우선 순위에 따라 개통하고 해당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 * (제공기관) 시스템에 개통완료로 표시 	개발원 (SKT)
↓		
단말기 배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통완료된 단말기를 제공기관으로 일괄배송하고 시스템에 송장번호를 입력 * (제공기관) 시스템에 배송중으로 표시 	개발원 (SKT)
↓		
배송상태 조회 및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을 통해 단말기 배송상태를 조회 ○ 단말기 수령 후 단말기 사용 * (제공기관) 시스템에 배송완료로 표시 	제공기관

① 전용단말기 신청 : 제공기관 → 정보개발원

- (신청 원칙) 법인명의 신청 및 개통 원칙

- * 법인 명의로만 가입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에 한해 대표자 명의로 개별가입이 가능 (법인 명의 신청 시 개통 가능대수 제한 없음)

- (신청가능 대수) 법인명의 신청 시 개통 가능 대수에 제한은 없으나, 바우처 비용수령계좌를 단말기 통신비 지출계좌로 자동이체 설정필요
- (보급사 및 기종) SKT, 무선 전용단말기
- (신청방법)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접속화면 좌측 상단에 “차세대 신규 단말기 신청”메뉴에서 신청
 - 신청화면에 필요수량을 입력하고, FAX 및 E-mail을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전송
 - FAX : 070) 7469-3011 ▪ E-mail : vmobile@khwis.or.kr
 - 신청 및 개통문의 : 1599-3813 (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 개통시 필요서류(필수) : 가입신청서, 자동이체 계좌사본 (KB 국민은행 가맹점 계약 시 제출한 서비스제공 비용 입금계좌)

구분	구비서류 (가입유형별로 확인 후 제출)	
법인 (①, ② 중 선택)	① 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사원증) ② 위임공문서(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사원증)	
개인 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위임 시 : 위임장(대표자 인감날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개인	◦ 일반	·신분증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감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일반과 동일)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 인·허가증 사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도지사 발행)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국가보훈처장 발행)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② 전용단말기 개통 및 배송 : SK텔레콤 → 제공기관

- (개통방법) 단말기 보급사에서 개통 관련 서류 접수 후 제공기관과 개통 일정한 협의 후 개통
 - * 단말기 신청 시 입력된 제공기관 연락처로 개통 확인이 진행

- (배송방법) 단말기 보급사에서 개통 후 제공기관으로 택배로 발송하며, 개통일로부터 2~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단말기 수령가능

③ 전용단말기 유지비용

- (공급가격) 무상
- (유지비용) 통신요금 월 7,700원(VAT 포함)
- (가입비 등) 단말기 개통관련 가입비 등 일체 추가비용 없음
- (약정기간) 24개월 (*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함에 유의)
- (비용청구) 사용(개통일부터 과금) 후 익월부터 청구되며, 단말기 개통서류 제출 시 신청한 자동이체 계좌를 통하여 비용청구
 - 자동이체 계좌는 KB 국민은행 가맹점 계약 시 제출한 서비스제공 비용 입금 계좌를 사용해야하며, 사업 수행 중 변경 불가(입금계좌 변경 시 자동이체 계좌도 변경)

③ 기존 단말기 사용

1) 전용단말기 관리

- 기존 단말기 기종은 추가 공급되지 않으며 파손·고장·내구연한 경과 시에는 신규단말기로 신청
 - 단 MPOS-7700M, MPOS-3500, MPOS-7500IC는 '12.7.1일 부터 사용 불가
- 전용단말기 유지비용
 - (월 유지료) 11,000원

2) 모바일 단말기(동글이) 관리

- 기존 모바일 단말기(동글이)는 추가 공급되지 않으며 파손·고장·내구연한 경과 시에는 신규단말기로 신청
- 모바일 단말기(동글이) 등록 : 제공기관
 - (단말기 등록) 동글이를 사용하는 제공인력 및 휴대폰 번호, 기종 등을 전자 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 후 사용

* 전자바우처시스템 메뉴 : (제공인력 >> 결제폰 등록관리 >> 결제폰 신규 등록)

○ 모바일 단말기 사용

- 모바일 단말기에 서비스 결제에 필요한 동글이(리더기)를 결합하여 결제

○ 모바일 단말기 유지비용

- (월 유지료) 2,200원

* 제공인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단말기(휴대폰) 통화료는 단말기별 요금제에 따라 제공인력이 별도 부담

4 단말기 A/S

1) 신규 전용단말기 A/S

○ (A/S 원칙) 개통 후 16개월 이내의 고장은 무상수리가 원칙이나, 사용자 과실, 천재지변 또는 무상 A/S 기간 종료 시 유상처리

○ (신청방법)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내 단말기 A/S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고 제조사로 택배 발송하거나, A/S직영점을 방문하여 수리 가능

- (단말기 관리 >> 단말기 유지보수 관리 >> 단말기 A/S 신청)

* 택배 A/S : 제조사에서 택배 수령 후 10일 이내 수리완료 후 배송

- 택배발송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9번지 안양K센터 404호
엠투엠넷

- 택배비 : 무상수리 기간 내(개통 후 16개월 이내)에는 제조사 부담

* 유상 A/S 시(무상기간 내 포함)에는 제공기관과 제조사가 택배비를 상호(발송처) 부담

- A/S 문의 : 1599-3813 (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A/S상태를 전자바우처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방문 A/S : 전국 34개 A/S 직영점을 방문하는 경우, 수리 완료 시까지 사용 가능한 대체 단말기를 지급하며 대체 단말기는 A/S 완료 후 반납

- 제공기관은 A/S센터 방문 전, 방문할 A/S센터에 유선으로 상담하여 방문 전 고장상태에 따른 수리기간 및 대체 단말기 재고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

- 수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대체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단말기 사용이 중지되어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음에 유의

【AS 직영점 현황】

순번	명칭	주 소	연락처
1	강남AS센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13 강남센터빌딩 5층	070-8767-7241
2	신천AS센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175-14 두성빌딩 3층	070-7863-0601
3	이수AS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438-24 동주빌딩 5층	070-7863-0585
4	미아AS센터	서울 성북구 길음동 25-7 삼주빌딩 4층	070-4465-6640
5	종로AS센터	서울 중구 관철동 19-4 세종빌딩 2층	070-8895-4700
6	구로AS센터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중앙유통상가 1258 SK텔레콤 고객센터 1층 구로AS센터	02-6343-9127
7	강북AS센터	서울 중구 서소문동 21-1 연호빌딩 6층	070-7829-4052
8	보라매AS센터	서울 관악구 봉천1동 729-1 SK텔레콤 보라매지점 내	02-836-8792
9	안양AS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트로타워 B동2층 202호	031-478-7829
10	인천AS센터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459 SK텔레콤 인천지점 내	032-450-0051
11	수원AS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9번지 인계 샤르망오피스텔 2층 202호	031-232-8139
12	의정부AS센터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 17-3 흥국생명빌딩 2층 SK텔레콤 의정부지점	031-847-3495
13	명동AS센터	서울 중구 명동 2가 32-5번지 지하 1층	02-6403-9840
14	부산AS센터	부산 진구 부암동 52-6	051-811-8275
15	동래AS센터	부산 동래구 안락2동 607번지 SK텔레콤 동래사옥 1층	051-526-8534
16	울산AS센터	울산 남구 삼산동 1612-8 성미빌딩 2층	052-274-0152
17	진주AS센터	경남 진주시 신안동 14-1 LG화재해상빌딩 1층	055-748-8021
18	창원AS센터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1-2 대흥인터빌 106호	055-277-0542
19	대구AS센터	대구 중구 삼덕2가 187-1 SK텔레콤 1층	053-426-8572
20	서대구AS센터	대구 달성구 본리동 154-4번지 SK텔레콤 서대구 지점 내 AS센터	053-756-6011

순번	명칭	주 소	연락처
21	포항AS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207-2번지 성원메디컬 1층	054-278-4011
22	구미AS센터	경북 구미시 신평동 150-60 2층	054-442-1061
23	광주AS센터	광주 서구 농성동 460-33 다나메디컬센터 2층	070-8859-8110
24	순천AS센터	전남 순천시 연향동 1433-3 석천빌딩 1층 SK텔레콤 순천지점 내	061-741-8572
25	익산AS센터	전북 익산시 영등동 824-4 천지빌딩 1층	063-857-8542
26	목포AS센터	전남 목포시 상동 835번지 동신한방병원 옆 미르치과 건물 1층	061-282-2183
27	전주AS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578-5 SK텔레콤 1층 AS센터	063-230-0373
28	대전AS센터	대전 서구 탄방동 595번지 1층	042-330-5814
29	천안AS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494-20 금정빌딩 1층 SK텔레콤 천안지점 내	041-522-1011
30	청주AS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96-1	043-270-1012
31	원주AS센터	강원 원주시 단계동 875	033-730-1310
32	춘천AS센터	강원 춘천시 온의동 513번지 한국교원공제빌딩 1층	033-244-0372
33	강릉AS센터	강원 강릉시 교2동 136-5 SK텔레콤 강릉지점 3층	033-645-0782
34	제주AS센터	제주 연동 2331-5 SK텔레콤 제주사옥 1층 AS센터	064-741-4655

2) 기존 단말기 A/S

- EVT-1000 : SCT(☎ 3446-2211)에서 A/S
- 동글이 및 MPOS-8700 : 고장시 신규 단말기로 교체
 - 바우처 단말기 구매
 -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 결제를 위하여 전용단말기를 제공기관에서 구비
 - * 제공기관에서 유상구매 원칙 단말기는 SKT에서 무상보급(단, 약정기간 24개월)

수 단말기 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

□ 단말기 신청 시스템 접속

○ 접속방법

-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에 로그인 후 “차세대 전자바우처 신규 단말기 신청” 배너 클릭

* 인터넷 주소창에 news.socialservice.or.kr 입력 후 접속도 가능

- 최초 접속 시, 시스템 사용을 위한 추가 기능 설치 필수

* 설치되는 추가기능 : Mplatform, UbiReport

** 추가 기능 설치 이후부터는 바탕화면에 생성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통해서도 접속 가능

○ 로그인 방법

-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Login’ 버튼 클릭

*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기존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의 아이디, 비밀번호와 동일하며, 공인인증서는 불필요

□ 단말기 신청 (신규신청 방법)

○ 화면 아래의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

- [신규] 버튼 클릭 시 기본정보*를 제외한 신청정보** 및 배송정보*** 항목 입력이 가능

* 기본정보 : 제공기관 지정 시 등록된 정보로 자동생성되어 수정 불가

** 신청정보 : 단말기 신청과 관련된 정보로 ‘*’ 항목은 작성 필수

*** 배송정보 : 단말기 수령과 관련된 정보로 제공기관 주소가 자동생성됨. 별도의 주소지로 단말기를 배송받고 싶은 경우에는 ‘직접입력’을 표시하고 주소를 작성

○ 신청정보 화면에서 신청사업과 단말기 종류를 선택

- 1회 신청시 1개 사업의 1종류의 단말기만 신청 가능

【단말기 신청 화면(예시)】

- 단말기 종류를 통화가능단말기(모바일 단말기)로 선택한 경우, 원하는 단말기 기종을 선택
 - * 단말기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단말기가 조기에 공급 중단 될 수 있음에 유의
- 각 항목에 대해 입력을 완료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내용이 저장 되고 신청이 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상단 목록에 해당 내용이 표시
- 신청을 취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신청목록을 선택 후 하단의 [신청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신청 내역이 취소
 - * 단말기신청 등록 후 취소는 진행상태가 '신규신청' 단계에서만 가능
- [개통서류] 버튼 클릭시 단말기 개통에 필요한 서류 확인 가능

[참고자료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연계(안)」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연계(안) > —

1. 추진 방향

- (기본방향) 주요 공공 전달체계를 통한 대상자 연계·우선 선발로 실수요자에 서비스 지원 및 창구 일원화로 국민 편의성 증진
- (연계내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자 선정시 연계대상 사업에서 발굴하여 추천 하는 대상자를 일정 비율 내에서 우선 선발하여 지원
- (연계대상) 드림스타트(아동),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 의료급여(노인건강)
 - o 드림스타트센터 : 아동대상 서비스 중 실무자간 협의하여 결정
 - * 주요 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인터넷게임중독치료 등
 - o 정신보건센터 :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
 - o 의료급여 사례관리 : 노인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연계비율 및 대상지역) 사업별로 상이

연계대상 기관	연계사업	연계비율	대상지역	절차
드림스타트 센터	아동대상 서비스 중 지자체 담당자간 협의하여 결정	사업별 예산의 10% 내	드림스타트 센터설치지역	분기별 공문 추천
정신보건 센터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서비스	30%	서비스 시행지역	정신보건센터 추천서 발급
의료급여	맞춤형 운동처방, 시각장애인 안마	10%	서비스 시행지역	월별 공문 추천

- (시행시기) '12.1월~12월
 - * 사업별 신규 대상자 연계 종료시기는 상이

3. 대상 사업별 연계 지침

- 드림스타트센터 - 아동대상서비스
 - o (개요) 시군구청장은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 대상 아동 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서비스를 우선 연계

- * 드림스타트 : 빈곤 아동에 대한 사전예방적 통합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빈곤아동 발굴·통합사례관리 서비스
- (연계대상 서비스) 각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아동 대상 서비스
- (연계 지역)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시군구('11.12월 현재 전국 131개 시군구)
 - * '11년도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시군구 현황 : 첨부 1
- (연계 인원) 사업별 수혜 인원(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부서간 협의
- (연계 절차)
 - 드림스타트 소관부서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소관부서는 협의를 거쳐 1월 10일 까지 우선 배정 필요 서비스와 사업별 연계인원(비율)을 확정
 - 드림스타트 소관부서는 확정된 비율 내에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에 근거하여 1분기(1월 16일까지), 2분기(4월 16일까지)에 대상자를 발굴하여 공문으로 추천하고 개인별 신청양식을 구비하여 해당일까지 신청
 - * 1·2분기 마다 매 분기 초(1, 4월)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월별 신청 여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예산 집행 계획을 고려, 부서간 협의하여 결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추천 명단 및 신청에 근거하여 서비스 대상을 선정한 후 선정 결과를 드림스타트 담당부서와 신청자에게 통보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은 선정 후 익월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되 서비스 개시 전까지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
 - * 드림스타트센터 담당자의 대납 불가
- (연계 기간) 2분기(4월) 신청 완료 후 협의된 연계 인원(비율) 중 집행 잔액 예정액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부서가 일반 대상 추가 신청·집행
- 의료급여 사례관리 -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개요)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일환으로, 의료급여를 과다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노인 건강 관련 서비스를 연계
 - * 의료급여 사례관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기여
- (연계대상 서비스)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예산에서 지원
- (연계 지역) 노인맞춤형운동처방 및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수행 시군구
- (연계 인원) 사업별 수혜 인원(예산)의 10% 범위 내
- (추천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범위 내에서 추천하되, 질환 및 연령, 개선 여부 등을 고려

- 근골격계, 고혈압·당뇨, 뇌졸중 등 질환자 중 60세 이상 수급권자

* 기타 질환자인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 이용을 통해 의료이용행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추천 가능

** 사회서비스 담당부서와 협의 하에 연령 조정 가능

o (연계 절차)

- (의료급여관리사) 연계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매월 16일까지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부서에 선정 요청

* '12. 9월말 이후에는 신규 연계는 물론 지원중단자 발생으로 인한 결원발생시에도 대체하여 요청 하지 않음(성과분석을 위하여 최소 이용기간 확보 필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부서) 서비스대상을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의료급여 담당부서 및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매월 21일 18시까지 행복e음을 통해 전송

- (의료급여관리사) 선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 적합한 서비스제공기관 및 서비스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필요시 서비스 이용신청 접수 대행

* 서비스이용 신청시 의료급여 연계대상임을 반드시 밝히도록 안내 필요

-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 후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 1인 1개 서비스 이용신청 원칙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관리사가 서비스 제공기관별 납부액 및 납부계좌를 확인한 후 시도 의료급여관리사를 거쳐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에 25일까지 납부 요청

* 서비스 연계된 수급자 및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신청 접수결과 및 본인부담액을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통지하여 납부 기초자료가 원활히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사례관리사업지원단은 서비스개시일(익월 1일)전까지 입금 처리

o (사후관리)

- 의료급여관리사는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의료이용 변화를 수시 점검하여야 함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월별로 지원하되, 의료이용행태 개선 정도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3개월 간 이용 후 의료이용행태에 긍정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서비스 지원 중지

o (연계 기간) '12년 9월말 이후 협의된 연계 인원(비율) 중 집행 잔액 예정액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부서가 일반 대상 추가 신청·집행

□ 정신보건센터 -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o (개요) 정신보건센터에 의뢰되거나 등록관리 중인 대상자 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필요한 자를 연계

- 정신보건센터에 의뢰된 아동 중 학교 또는 정신보건센터 선별검사 결과 임상적 치료** 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서·행동장애 아동에 대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연계

- 각 정신보건센터의 등록관리자 중 그 질환의 정도가 심하여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정신보건센터장이 판단한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연계

* 정신보건센터 :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지도모

** 임상적 치료 : 정신의료기관의 개입치료 및 약물치료 등

o (연계대상 서비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

o (연계 지역)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를 수행중인 시군구

o (연계 인원) 사업별 수혜 인원(예산)의 30% 범위 내 우선지원

o (연계 절차)

- 지역 정신보건센터는 서비스 연계대상 아동에게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대상자 추천서』, 정신질환자에게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 대상자 추천서』를 작성·발급하고 서비스 신청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안내

* 관할 읍면동은 서비스 신청·접수시 전문가 추천서류로 정신보건센터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대상자 욕구판정 서류로 인정하여접수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시 정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정신보건센터 담당부서와 신청자에게 통보

4. 행정사항

(시군구) 연계대상 사업 소관부서와 우선 연계 비율 협의(아동분야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시각장애인안마) 및 대상자 선정 시 해당 연계 대상 사업 소관부서에서 연계된 인원이 비율 내 우선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읍면동)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 대상자 신청 접수 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의뢰된 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우선순위 입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의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에 정신보건센터 추천자를 1순위로 조정하여 행복e음 시스템 변경 반영

[의료급여 사례관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계 사업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사업총괄, 업무처리지침 수립
	사회서비스사업과	○ 국고보조금 교부 ○ 시·도, 시·군·구 협조 요청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지원단	지역사회 연계 담당팀	○ 시·도, 시·군·구 업무 지도·관리 ○ 본인부담금 지원 ○ 연계실적 통계관리 및 성과분석
시·도	의료급여 담당부서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 서비스제공기관별 본인부담금 납부자료 취합 사례관리지원단 제출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별 담당부서	○ 시도개발사업 시군구 업무 지도·관리 ○ 시·군·구 협조 요청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연계대상 선정 ○ 서비스제공기관 상담 및 이용신청 안내 ○ 본인부담금 납부 기초자료 시도 송부 ○ 연계수급자 사후관리(사례관리)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별 담당부서	○ 의료급여수급자 서비스연계 절차별 세부사항 협조 ○ 연계수급자 결정·통보·전송 등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 담당자	○ 연계수급자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이용신청 수급자 현황 관리사 통보
사회서비스 연계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수급자	○ 사회서비스 이용

[참고자료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2. 5] [법률 제10998호, 2011. 8. 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6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제7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본인의 욕구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게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신속·공정한 구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발급대상자
2. 발급대상자의 친족
3.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발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발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상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급대상자가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재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이라 한다)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에 제1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다시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발급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이름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
4.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5.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①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제공자 등록 등

제16조(제공자 등록)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⑥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공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8.5] 제16조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③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공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할 때에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공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을 정지된 경우
- ⑦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거나 서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비용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비용을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된 비용에 과부족(過不足)이 있거나 그 비용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자로부터 돌려받거나 제공자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예탁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① 제공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사실을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9조(제19조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제공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과징금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2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공자(상속으로 지위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

제27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표준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제공자의 현황
2. 제공자의 사회서비스의 제공 실적 및 품질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방법·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교육과 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제공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에 필요한 경우

2. 제30조에 따라 제공자를 평가하거나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제공자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2.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사람
3.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발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익의 징수에 관한 사항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19조제7항제1호·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

제37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0998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어 사용 중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은 제9조에 따라 발급 신청을 하여 발급된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본다.

제3조(보호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받고 보호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선정·공고된 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제공자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공자로 등록하여야 하되,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보호실시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부칙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보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포함한다)을 제시받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을 삭제한다.